

제391회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11월24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62)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65)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16)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90)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97)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50)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1)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04)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0)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61)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549)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59)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00)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74)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59)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20)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10)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51)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64)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61)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77)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27)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03)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0)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8)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62)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00)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7)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29)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01)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32)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2)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38)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62)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02)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36)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77)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45)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07)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53)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19)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71)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88)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75)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90)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68)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48)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1)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93)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14)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3)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31)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2)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31)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1)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29)
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87)
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90)
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96)
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89)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63)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83)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69)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08)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6)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30)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6)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06)
6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72)
7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17)
7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39)
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42)
7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78)
7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4)
7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19)
7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85)
7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8)

7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94)
7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70)
8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10)
8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62)
8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5)
8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36)
8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86)
8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5)
8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74)
8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4)
8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71)
8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8)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73)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91)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197)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60)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85)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8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11)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25)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69)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69)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57)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37)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77)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27)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26)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25)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52)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31)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00)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52)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00)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3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1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28)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48)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50)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93)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43)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27)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37)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44)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52)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94)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99)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53)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81)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92)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23)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71)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67)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45)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0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62)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05)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49)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68)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3)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5)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9)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84)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37)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52)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75)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25)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94)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41)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60)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36)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84)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11)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33)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41)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74)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78)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19)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93)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0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3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87)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83)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50)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97)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1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73)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77)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39)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6)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8)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46)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65)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00)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2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72)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5)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7)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9)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82)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01)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05)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30)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31)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01)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24)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45)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81)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39)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85)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6)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17)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3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38)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61)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98)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99)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05)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36)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48)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94)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15)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29)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55)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59)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66)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73)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76)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09)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21)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47)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50)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55)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4)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79)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87)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95)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32)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44)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4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65)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60)
2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49)
2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24)
2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44)
2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77)
2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52)
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35)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56)
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9)
2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6)
22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71)
22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9)
23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2)
23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43)
23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4)
23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83)
23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24)
235. 청년세법안(의안번호 2108287)
236. 탄소세법안(의안번호 2108732)
23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11)

상정된 안건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2) 12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5) 12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6) 12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0) 12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7) 12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0) 12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1) 12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4) 12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0) 12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연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1) 12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49) 12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9) 12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0) 12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4) 12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9)	12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	12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	12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1)	12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4)	12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1)	12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7)	12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7)	12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3)	12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0)	12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8)	12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2)	12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	12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7)	12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9)	12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1)	12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2)	13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2)	13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8)	13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2)	13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2)	13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6)	13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7)	13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45)	13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7)	13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3)	13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9)	13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1)	13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8)	13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5)	13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0)	13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8)	13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8)	13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1)	13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3)	13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4)	13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3)	13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1)	13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2)	13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1)	13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1)	13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9)	13
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87)	13
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90)	13

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6)	13
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9)	13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3)	13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3)	13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9)	13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8)	13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6)	13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0)	13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6)	13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6)	13
6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2)	13
7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7)	13
7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9)	13
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2)	13
7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8)	13
7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4)	13
7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19)	13
7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5)	14
7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8)	14
7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4)	14
7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0)	14
8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0)	14
8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2)	14
8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5)	14
8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6)	14
8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6)	14
8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5)	14
8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4)	14
8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4)	14
8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1)	14
8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8)	14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3)	14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1)	14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14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60)	14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5)	14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80)	14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11)	14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14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9)	14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69)	14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57)	14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7)	14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7)	14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7)	14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26)	14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5)	14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2)	14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1)	14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0)	14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2)	14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0)	14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7)	14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1)	14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8)	14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8)	14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0)	14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3)	14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3)	14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27)	14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7)	14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4)	14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2)	15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4)	15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9)	15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3)	15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81)	15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2)	15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3)	15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71)	15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7)	15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5)	15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1)	15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2)	15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5)	15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9)	15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68)	15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3)	15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5)	15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9)	15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4)	15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7)	15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52)	15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5)	15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5)	15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4)	15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1)	15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0)	15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6)	15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4)	15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1)	15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3)	15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1)	15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4)	15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8)	15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9)	15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3)	15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9)	15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35)	1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87)	15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3)	15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0)	15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7)	1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0)	15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3)	15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7)	15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9)	15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6)	16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8)	16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6)	16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5)	16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00)	16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9)	16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2)	16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5)	16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7)	16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9)	16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2)	1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	16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5)	16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0)	16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1)	16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1)	16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4)	16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5)	16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1)	16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9)	16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5)	16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6)	16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7)	16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2)	16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8)	16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1)	16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8)	16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9)	16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05)	16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6)	16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8)	16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4)	16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5)	16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9)	16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5)	16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9)	16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6)	16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3)	16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6)	16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9)	16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1)	1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7)	16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0)	16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	16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4)	16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	17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7)	17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5)	17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2)	17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4)	17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6)	17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5)	1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0)	17
2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9)	17
2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4)	17
2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4)	17
2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7)	17
2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2)	17
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35)	17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6)	17
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9)	17
2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6)	17
22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1)	17
22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9) ..	17
23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2)	17
23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3)	17
23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4)	17
23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3)	17

23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4)	17
235. 청년세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87)	17
236.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2)	17
23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1)	17

(10시40분 개의)

○소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조세소위 운영 관련해서 남겨진 법률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밤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밤 일정도 조정해 주셔서 우리 조세소위 논의가 즉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일정 조정 좀 부탁드립니다. 부처에서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하셔서.....

전체적으로 한 번은 다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오늘, 그다음에 금요일에 해야 돼서요,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양향자 위원 (손을 들)

○소위원장 김영진 상정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지요.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2)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5)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6)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0)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7)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0)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1)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4)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0)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661)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49)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9)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0)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4)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9)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1)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4)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1)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7)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7)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3)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0)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8)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2)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7)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9)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

- 발의)(의안번호 2112701)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832)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2)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038)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2)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2)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6)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7)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45)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7)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3)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9)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1)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8)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5)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0)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8)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8)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1)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3)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4)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3)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1)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2)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1)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1)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9)
 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87)
 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90)
 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6)
 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9)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3)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3)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9)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8)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6)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0)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6)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6)
 6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2)
 7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7)
 7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9)
 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2)
 7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8)
 7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4)
 7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19)
7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5)
7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8)
7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4)
7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0)
8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0)
8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2)
8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5)
8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6)
8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6)
8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5)
86. 국제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4)
87. 국제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4)
8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1)
8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8)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3)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1)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60)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5)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8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11)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9)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69)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57)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7)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7)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7)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26)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5)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2)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1)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0)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2)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0)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8)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8)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0)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3)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3)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27)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7)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

-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4)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2)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4)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9)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3)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81)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2)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3)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71)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7)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5)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2)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5)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9)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68)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3)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5)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9)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4)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7)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52)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5)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5)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4)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1)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0)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6)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4)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1)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3)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1)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4)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8)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9)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3)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3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87)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3)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0)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7)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3)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7)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9)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6)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8)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6)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5)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00)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2)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5)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7)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9)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2)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5)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0)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1)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1)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4)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5)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1)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9)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5)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6)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7)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8)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1)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8)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9)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05)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6)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8)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4)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5)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9)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5)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9)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6)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3)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6)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9)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1)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7)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0)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4)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7)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5)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2)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4)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5)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0)
2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9)
2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4)
2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4)
2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7)
2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2)
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35)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6)
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9)
2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6)
22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1)
22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9)
23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2)
23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3)

23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4)

23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3)

23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4)

235. 청년세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87)

236.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2)

23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1)

○소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7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37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5권 22번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설명하시기 전에 양향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사전에 신청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양향자 위원 그제 논의되었던 5권의 12번,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가 핵심전략기술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 주는 취지가 국가안보와 관계 있는 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백신 산업에 대해서 글로벌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미래산업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세액공제를 통해서 투자 여력을 최대화시켜서 미래를 위한 투자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다 공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치 대기업 지원이라는 해석으로 해서 취지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핵심산업을 지속시켜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미래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정부도 이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었고 그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의 세액공제 기준이 핵심전략기술 전용 설비에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나노짜리하고 7나노를 같이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3나노 전용에

다만 해 주게 되면, 3나노·7나노 같이 전용으로 해야 되는 설비에 랙(lack)이 되면 결국은 이게 세액공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류성걸 위원님께서 투자촉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당장 투자 촉진 효과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굉장히 빠르게 해 줘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주장하시는 바가, 그러면 국가 핵심전략산업에 왜 이차전지가 들어가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여쭙 봐야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국가 핵심전략기술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30년 반도체를 했지만 이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선정은 굉장히 시비어(severe)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게 세제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것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많이 걷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김수홍 위원님께서 지방을 얘기하셨는데 이것과 지방은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은 산업 생태계를 다시 구축할 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이고, 지방 때문에 지금 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막는 상황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도 또 미국도 그렇고 국가 핵심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미적거리고 있을 때는 절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12번의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제 지원 강화는 정부안, 홍정민 의원안 함께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고맙습니다.

○류성걸 위원 저도……

○소위원장 김영진 아니, 순서대로 하시지요. 이의 제기는 그냥 의사진행발언만 하시지요. 간사님, 그것은 나중에 추후 논의 때 하세요.

○류성걸 위원 이것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배준영 위원 차관님께 잠깐……

○소위원장 김영진 말씀 주시지요.

○배준영 위원 차관님, 제가 월요일 날도 질의를 드렸는데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방안에 관해서 현금지원은 안 한다고 그랬는데.

글쎄, 제가 보니까 어제 관계부처 종합으로 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보도에 나온 걸 보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전체 규모가 9.4조 원인데 금융지원이 8.9조 원이고 그다음에 부담 경감한다는 게 0.4조 원, 매출회복·수요보강이 0.1조 원, 그러니까 전체 9.4조 원 중에 8.9조 원이 대출이거든요.

오늘 언론 보도 보셨겠지만 빚내서 빚을 갚으라는 건지, 빚 위에 빚이 쌓인단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 증가 우려로 대출을 줄이고 있는 게 전체적인 건데 이런 추세에 맞는 건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부세 관련된 건데 중부세 관련해서 딱 2%만 국민이 부담한다고 그러는데 보시지만 이것은 집이 있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중부세 납부 인원은 5.9%고, 서울은 더군다나 한 24.9%, 한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에 입각한, 팩트에 입각한 그런 것을 근거로 정책을 해야지 단순히 이렇게 2% 정도만 해 갖고 그것은 별것 아니더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데 글쎄요, 좋은 기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영진 간사님 말씀하세요.

○류성걸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양향자 위원님께서, 저는 처음에 발언하실 때에 의사진행발언인 줄 알았더니만 이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심사 내용에 관련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논박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 중에 제 이름을 두 번이나 실명으로 거론하셨어요. 첫 번째는 투자 관련해서, 효과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과 관련된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지방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이……

○양향자 위원 아니요, 김수홍 위원님이 얘기했

습니다.

○**류성걸 위원** 아, 그러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이 소위에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을 표명하고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이지 누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는 상호 토론이 되는 겁니다. 양향자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으면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또 반박을 드릴 수 있어요.

○**정일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류성걸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내부에서 충분히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서로 상호 토론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회의에 관련해서 논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하고 의사진행 관련되는 사항을 엄격하게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일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저녁까지 하자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시작해서 의사진행발언하고 또 다른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조세소위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안건에 충실해서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 잘 해서 소위원장으로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제22번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5권 설명드리겠습니다.

5권 40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채권포기 시 과세특례 보완 및 적용기한 연장인데요. 우측에 보시면 적용대상 변경이 있고 적용기한 연장이 있는데, 적용대상 변경 관련해서는 하단에 보시면 2017년에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시에 인용조문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고요. 그다음에 적용기한 관련되는 연장이 있습니다.

인용조문이 잘못됨으로 인한 부분, 소급구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습

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제기하신 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22번 관련해서 본래의 취지와 달라진 것을 기재부와 또 국세청이 언제 알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부칙이 바뀌면서 타 법 개정으로 저희가 자동으로 바뀌는 건데요.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 아셨느냐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금년에 파악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19대 때 이런 특례를 처음에 도입을 해서 뉴타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했던데 그러면 엉뚱한 분이, 엉뚱한 대상이 이제까지 특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알았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국세청이나 기재부가 뭐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마지막에 41쪽에 전문위원은 이것을 소급해 가지고 안 해 줬던 것을 오히려 해 주자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으니까 참 황당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되는 사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고 새로 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예요. 뒤에 41페이지 표가 그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법이……

법 개정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은 국회에서도 논의하는 과정 속에 해야 되고,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제까지…… 이게 언제 됐지요? 2018년 2월 9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했다는데, 언제 아셨다고요? 그러면 몇 년간을 그대로 이 특례를 받지 않아도 될 대상에 대해서 특례를 지급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이야 법대로 해 가지고 특례를 받은 거고 그리고 또 이제까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례가 있다가 특례를 안 받은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것은 더 이상 해 줄 필요가 없는 사항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뉴타운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 이런 문제가 있어 갖고 이렇게 했는데, 2018년 2월 9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알 때까지 또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조합은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경우에 특례를 주지 않았는데도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특례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저희가 이것을 늦게 인지하게 된 이유가 아마 이것에 대한 야구(argument)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야구가 필요 없으면 뭇 때문에 이걸 법을 가져오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정정훈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인용조문의 타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원 판례나 심판청구나 이런 경우에도 보면 종전의 규정이 타당하다, 이것은 인용조문의 잘못이다 하는 경우에는 지금 구체받아야 되는 원래 그 대상에 대해서 적용해 주는 경우도 사례에 따라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류성걸 위원** 해석하지 마시고요. 지금 해석하려면 한이 없어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만 드리면요……

○**류성걸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좀 전에 세제실장님 말씀은 그래요. 별로 이제까지 문제를 제기 안 했기 때문에 몰랐다 이런 이야기는, 이런 형태의 제도가 잘못됐다면 가져오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이 표에 보면 특례를 2018년 2월 8일까지 했다가 그 중간에 다시 없다가, 그런 이야기라면 이것 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답변 좀 들어 보지요. 개인 토론이 아니니까요.

○**류성걸 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실제로 19년, 20년에도 실적이 10건 내외로 나오고 있고요. 그 10건 내외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류성걸 위원** 국장님, 그 10건이라는 게 이 법에 의해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안 해 준 것이 10건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법을 적용했다면 법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법위반이에요. 국장님, 법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엄격하게 문리적 해석을 하면……

○**류성걸 위원** 문리적 해석이 아니고 지금 그렇다면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그래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나면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류성걸 위원** 인지하고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잠시만요.

○**류성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되는 사항을,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후에 AS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 답변을 들어 보면, 이 법을 이렇게 안 해 줘도 이제까지 해 줬다 하는 것 관련되는 사항을 정리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2018년 2월 8일까지 해 줬던 그 관성에 의해서, 그것 아니면 그냥 했으니까 했던 그 사항을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으나 없으나 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법을 개정하고 새로 고치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되지요.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다음 김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홍 위원** 이게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도입

된 과세특례인데 지금 류성걸 위원님 지적이 있으니까 또 전문위원 지적도 권리 구제 차원에서 소급 입법이 필요하다 하니까 정부가 정리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제가 보기에선 물론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을 늦춰서 이제 인지해서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과거의 귀책사유나 이런 문제는 사실 인정이 되는 거지만 인정한 시점부터는 정비를 해서 법조항을 좀 조정하고 이후에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게끔 정비하는 법적 개정의 타당성이 제가 보기에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이러저러한 문제에 관한 이 법조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지했고 그에 따라서 정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저는 정비를 해 줘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해서 정리하고 다음번에 최종 정리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정일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23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4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를, 42페이지 좌측에 보시면 121조의26부터 121조의31까지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전체에 대해서 적용기한을 연장하자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44페이지 보시면 그중에 사업재편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해서 대상을 그간에 금융채무 상환계획만 되어 있었는데도 투자계획도 포함하고,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금융채무 상환이 자산 양도 후 3년인데 공동 사업재편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하자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현행 과세특례를 단순히 2년 연장하는 거고요. 그중에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내용을 좀 추가해서 사업재편 이 부분을 원활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류성걸 위원 사업재편 실적이 어느 정도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현재까지 한 217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심의 승인받았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게 5년 동안 했던 실적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류성걸 위원 그 실적 나중에 저한테 한번 주세요.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안대로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나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나항까지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다 처리했지요?

○전문위원 정명호 예.

○소위원장 김영진 나항까지 다 처리했습니다.

다음 24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 삭제인데요. 표 좌측에 보시면 현행 제도입니다. 이 현행 제도에 대해서 적용기한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이 제도의 일몰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성걸 위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한 부분들이 결국은 반영돼서 한시적으로 됐다가 앞으로 항구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이제 원칙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지금 현재 유흥·단란주점만 하는데 매입자 납부제도가 원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의 없으면 24항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25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급 한도액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한도액을 상향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정부는 현행 제도를 처럼 단순 2년 연장안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추경호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진 추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적용기한 관련해서는 정부 판단을 일응 존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안을 고집할 이유는 없는데.

그다음에 지금 여기 또 추가로 더 나와 있는 의원님들 안을 보면 지금 환급 한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행령에 2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추경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또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조금 더 높여 주라 하는 게 동료 의원님들, 민주당, 저희들 할 것 없이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민주당에서도 같은 문제 인식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광주 모터스 거기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경차를 지금 생산하지 않습니다. 경차 보급이 조금 더 확대되고 촉진하기 위해서 거기서 굉장히 절실하게 건의를 했던 사항이다, 그래서 여야 의원님들이 아마 대표적으로 문제 인식을 갖고 이것을 제안했는데 우선 한도 상향을 굳이 시행령으로 위임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한테 그 한도를 좀 더 올려 줘서 그나마 경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좀 더 보강하자 이런 문제 인식에서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하면서, 아마 여야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거기 다녀오고 했을 텐데 그 문제 인식하에서 나오게 된 입법안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차제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의견을 같이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환급 한도액 상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영세자영업자의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고려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양향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향자 위원 대부분 적용기한 연장을 2년씩 쭉 해 오고 있는데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

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은 좀 다르게 봐 주십시오.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 부분은 영세자영업자 관련해서도 좀 고려 부탁드립니다.

○정일영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진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관련해서 아까 정부 측에서 적용기한은 2년을 얘기하신 것 같고, 한도액 상향은 정부 입장 얘기하셨던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현행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 현행대로, 이것 안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추경호 위원님이랑 양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합리적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지요? 저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경형자동차 보급 촉진이라든지 영세사업자 이런 걸 감안하면 현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한도액을 올리면서 법률에 넣자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적용기한 연장을, 이쪽의 2023년 그걸 더 늘려야 되는가 보지요?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니까 적용기한을 좀 늘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2024년, 2026년 2개 안이 있는데,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앞이 2023년이라면 적용기한 연장은 2024년 정도로 해 가지고,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 봐서……

그러니까 20만 원 안이 있고 30만 원, 그렇지요? 영세자영업자는 50만 원, 20만 원, 30만 원 2개 안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것은 법률로 상향, 올려 가지고 적용기한을 2024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박형수 위원 정부 측에 하나 더 물어보고 합시다.

○소위원장 김영진 예.

○박형수 위원 수소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 감면도 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것은 연료에 대한 감면이 아니고 개별소비세입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내는 겁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것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 말에 일몰이 도래합니다.

○**박형수 위원** 내년 말에 일몰이 도래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소위원장 김영진** 지금 나와 있는 전주혜 의원안, 이병훈 의원안이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안인데요 거기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저희가 이것을 단순 일몰 연장, 연간 한도 20만 원을 현행 유지하고자 한 취지는 이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40km를 주행한다고 치고 300일 주행했을 때 평균 연비 15km/ℓ로 하면 이것 제도 만들 때 연간 2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했고 그 상황이 지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20만 원만 해도 하루에 40km씩 300일 타면 이 정도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해 줘도 될 것 같은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소형 화물트럭 이런 것을 쓰는 영세자영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일몰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정부안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말씀해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거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여쭙볼게요.

이런 형태로 시행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만약에 다른 의원님들 안처럼 법률로 올렸을 때 다른 것하고의 관계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이 비슷한 다른 것을 저희들이 많이 심사를 했고 한데,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체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성걸 위원** 예, 체계를.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장 조용래**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대답하겠습니다.

통상은 한도를 정해 주고 대통령령으로 한도 내에서 얼마를 정해 주는 위임 형태가 많고요. 또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조특법의 39조와 106조의2 정도에 송금 한도라든지 한도량을 비슷한 형태로 위임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해서 한 30만 원 정도 하고 그러면, 지금 경차에 관련

되는 것은 사실 우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유고 아까 실장님께서 1일 40km, 또 지금 더 많이 활동을 해야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면서 거리도 좀 해서 한 30만 원 하고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이런 형태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과장이 한 번 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장 조용래** 한 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세자영업자를 제외한 이유는 이것은 1세대 1경차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물 영세자영업자들이……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영세자영업자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장 조용래** 예,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포함해서 30만 원 하면 영세자영업자가 포함되지 않겠느냐, 제가 중간에……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장 조용래** 한도만 30만 원 말씀하신……

○**류성걸 위원** 그렇지요, 한도를. 그렇게 하면 어려운 코로나19 관련되는 그런 사항과 영세자영업자도 포함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괄호 안에 있는 영세자영업자 50만 원을 빼고 그냥 30만 원으로 단일화해서 한도액을 조정하자 그런 의견입니다.

○**류성걸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진**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추경호 위원** 조정 방안과 관련해서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제안했을 때는 첫째는 일반 경차에 관해서 우선 계속 20만 원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것 하나, 그다음에 특히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대폭, 일반보다는 좀 더 올려 주자 하는 거고. 아까 며칠 얼마를 쓴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한도를 높여 놓으면 소위 말해서 쓸 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쓸 수가 없다, 환급을 받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영세자영업자는 정말 치열하게 그것을 운행하면서 하루 하루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면에

서 일반보다는 훨씬 폭을 올려야 되고, 최소한 2배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야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그러면……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면 어떤 것은 법에서 바로 정해 주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위임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체계는 지금 우리 조세법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이라고 하기 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여야가 공히 정책의지 또 우리 영세자영업자를 위한다 이런 의지를 밝히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법에 명시를 하고 그 한도는 조금 전향적으로 가면서 지금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런 조치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박형수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그다음에 정일영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저도 지금 한도를 기왕에 하려고 그러면 영세자영업자를 좀 구분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만큼 가든지 간에 구분해서 한도를 좀 높여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길게 하면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수소자동차·전기자동차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게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수소자동차·전기자동차로 바뀔지 우리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차 역시 마찬가지로 휘발유나 경유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 감면을 해주는 이유는 하나가 환경보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 환경보호 측면인데 이게 수소차나 전기차로 빨리 바뀌었을 때 그렇게 되면 경차 할인해주는 것이 환경오염 부분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이것을 길게 하는 것, 2026년까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짧게 해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배준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초과세수 19조 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차 떼고 포 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

하셨다시피 이번에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려고 그러면 환급 한도액 이런 것을 법률에 상향해서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탄소제로에 대한 로드맵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환급 한도액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기재부에서 미루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순서대로 정일영 위원님 하시고 유경준 위원님 하시고.

○정일영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정부 측 답변이 이렇게 계산해서 그 정도 가지고 한도가 충분하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계산을 서로 해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올리더라도 또 문제가 없잖아요. 한도가 현재 충분한 것 같은데 30만 원으로, 50만 원으로 올린다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답변은 좀 부족한 답변인 것 같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운데, 특히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가 제일 심하게 타격을 받고 어려운데 국회에서 여야 간에 어쨌든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정부 측에서도 이로 인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현재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런 논리 가지고는 논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병훈 의원안처럼 연간 30만 원으로 바꾸고 영세자영업자 50만 원 이렇게 하면서 적용기한은 전주혜 의원안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것이 제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다음 유경준 위원님 그다음 류성걸 위원님.

○유경준 위원 이 의견들은 굉장히 논쟁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기후기금도 심사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고 앞으로 탄소중립이나 각 예산에……

지금 일단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대통령령에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게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옳지 경유 이것 지원을 하면 저는 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가면 경차 만드는 것까지 지원해 주자고 할 것 같아서 저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아까 제가 30만 원 제안을 했는데 이제 제가 여쭙볼게요, 실장님.

지금 적용 요건이 경형자동차 소유자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영세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금 저희 법에는 없고 의원 입법안에도 그런 데피니션(definition)이 없습니다.

○류성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보는 것은 실제로 집행을 할 때에 경형자동차라고 돼 있으면 cc로 구분하겠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면 일괄적으로 나오는데 그분들을 영세자영업자인지 소상공인인지 뭐를 하시는지 이것도 전부 다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한지를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금 현재로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이 코로나 19로 굉장히 어려운데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 관련된 우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 관련되는 것은 또 환경 관련대로 보더라도……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한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드렸듯이 올려 드리면 18만 원 쓰는 사람은 18만 원 되는 거고 그런데 과거에는 20만 원 캡이 씌어져 있었기 때문에 35만 원 되는 사람 30만 원까지 될 거고, 28만 원 되는 분은 30만 원까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의 의견은 그러니까 집행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는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자는 말씀이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이것 소상공인하고 영세자영업자를 분리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결론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토론이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무리 좀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안 이루어지면 나중에 별도로 조정 과정을 거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한쪽에는 경차, 경형자동차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일종의 이용을 좀 늘리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광주형 일자리 만드는 현장, 경형자동차 생산 현장에 가서 거기서 만드는 이런 라인들이 조금 더 생산이 활발히 되고 보급을 많이 늘리자 그래서 그런 모델도 성공하게 하자 하는 쪽에서 하나의 보급 확대 차원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들고 나온 것이고.

그것은 관계없이 경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상대적으로 서민이 많기는 많지요—그런 쪽에 인센티브를 좀 보강하자. 그래서 20만 원 있는 그것을 일단 법으로 최소한 상향을, 올려 놓고 그것은 보편적으로 경차 이용과 관련된 거고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시라고요. 그런 것 많잖아요. 그 범위를 정부에서 일정 부분 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그 한도를 높여 줌으로써 우리가 입법 정책적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 마음을 여기에 투영을 시키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자꾸 뭐가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법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중에 최종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위원들의 이 방향성은 대개 그런 식으로 잡혀 있으니 위원장님이 중심이 돼서 조율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생각이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한도를 상향시키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30만 원 안, 20만 원에 자영업자 50만 원 안, 30만 원에 자영업자 50만 원 안 이렇게 전체적인 취지가 상향하고 자영업자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지원하는 한도를 정해 주자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다시 논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우려 의견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우려 의견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우려 의견에 관해서는 추경호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두 가지인데요,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년 연장하자는 내용이고요. 제주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적용기한을 종료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던 제도인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적용기한은 종료하고요. 다만 다른 위기지역은 위기지역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계속 단순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영 위원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이것을 연장하는 게 제주도는 어쨌든 종료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위기지역은 어디입니까?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위기지역은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는데요……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아니,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이렇게 계속 연장을 해 줘야 돼요, 위기지역이 어디길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실제 적용되고 있는 지역 골프장은 경남 창원, 경남 거제, 경남 고성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정일영 위원 세 군데예요? 전부 경남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정일영 위원 거기가 왜 위기지역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위기지역을 전반적으로 지정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그때 조선산업 때문에 산업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정일영 위원 조선산업이 어려우니까, 골프장도 어렵고 하니까 특별히 거기만 좀 연장시켜 주자, 2년? 조선산업이 2년 정도면 살아난다고 보고, 2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김주영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김주영 위원 위기지역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1만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이렇게 75%를 감면해 준다고 해서 실제 위기지역에 도움이 되나요? 여기 회원제라고 돼 있는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이게 정말 위기지역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이게 골프장…… 다른 지역에서 이쪽 골프장에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으면 올 수도 있고 거기서 밥도 먹을 수 있고……

○김주영 위원 그러니까 9000원 할인해 준다고 해서 여기로 가는 게 지금 통계로 잡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위기지역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산업위기지역 지정할 때 다양한 지원 방안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그중의 하나로 들어갔던 겁니다.

○김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 골프장이 굉장히 호황이잖아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2년 더 연장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2년을 연기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당시에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지금도 여전히 관광객 급감, 상가 공실률 증가, 실업급여자 증가 등 이런 것들로 이들 지역이 어렵다고 합니다. 통영·고성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30%가 19년 대비 20년에 줄었고, 상가 공실률이 20% 증가했고……

○김주영 위원 지역에 대한 위기는 알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위기는 알겠는데 골프장이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위기지역에 소재한 골프장이 예를 들어서 입장객이 급감을 했든지 그런 통계가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기본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김주영 위원 그렇다면 굳이 연장을 하는 정부 개정안이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저희는 이게 엄청난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부의 어떤 시그널적인 효과가 있는데 만약 위원들께서 이것 폐지해야 한다고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저는 폐기하기를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박형수 위원님, 류성걸 위원님.

○박형수 위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못 감으로 인해 가지고 골프장이 전체적으로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연장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이상하고 또 하나는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인하하면 이게 과연 이용객들한테 다른 데 비해서 이만큼이라도 빠지는지, 솔직히 싸게 해 주는지 그것 실태부터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태를 조사하고 안 하고 간에 이 제도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연장해 주는 것이 의미가 없다. 활황인데, 골프장 매출이 다 엄청 올랐는데 차라리 이것을 폐지하고…… 폐지하고 코로나 풀리고 난 다음에 또 해외로 가고 이래서 위기지역이 또 어렵더라, 그때 다시 발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상황이 변화됐음에도 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저도 같은 취지인데 지금 제가 꾸준히 행정부의 관련된 자료라든지 설명의 감성적 또는 일반적 근거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위기지역이었을 때 골프장의…… 지금 현재 부킹률 한번 알아보셨어요? 위기지역에 몇 개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기지역에 골프장이 3개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킹률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부킹률보다는 저희가 내장객……

○류성걸 위원 내장객이 문제가 아니라, 캐파가 있으면 그 캐파를 넘어서면 내장객은 더 이상 늘 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킹률이…… 뭐 부킹이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전체 예약률이 100%가 되고 실제로 들어오는 분이 100%가 된다면 이것을 해 줘 봐야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위기지역에 관련된 골프장이 몇 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내장객 또는 관련되는, 실제로 캐파 대비해서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한다는 이야기고, 결국 추가적인 효과가 없다면 더 이상 일몰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고.

또 두 번째는 제주도의 경우입니다. 제주도를 처음에 여기에 포함시켰던 것은 똑같은 취지로 제주도의 내장객이 적고 또 더 많이 오시도록 해

서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제주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제주도만 따로 배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 분석을 해 갖고 ‘이렇게이렇게 해 봤더니만 이렇게 하면 아직도 위기지역에 더 추가적인 분들이 오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형태로, 좀 분석적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것가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수홍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김영진 예, 김수홍 위원님.

○김수홍 위원 실장님, 위기지역은 산업이나 관광이 활성화됐다가 잠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침체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김수홍 위원 그런 데는 소생할 기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기지역을 넣으려면 인구소멸 지역도 넣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구소멸지역은 산업이나 관광이 없다가 꾸준히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데, 저는 위기지역 빼고 인구소멸지역을 대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지금 그러면 제주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부분들은 적용기한 종료 전체 동의, 그다음에……

○류성걸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것 아니에요?

○류성걸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제주도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해 줘 봐야 효과도 없고 관련되는 사항이……

○김수홍 위원 종료하는 건데?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종료를 왜, 다른 데는 그대로 하고 왜 여기만 종료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정일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위기지역까지 포함해서 다 종료시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시지요, 다 종료.

○소위원장 김영진 현재는 뭐냐 하면 위기지역과 제주도까지 다 포함해서 종료가 다수 의견입니다.

○정일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류성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기지역

에 관련해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영진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장 조용래 환경에너지세제과장입니다.

류성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킹률 이런 것은 경영상 비밀자료라서 저희가 구하기 힘들고요. 증감률은, 내장객이 결국은 증가했다는 얘기는……

○류성걸 위원 그러면 종료합시다, 많은 분들 의견……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동의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위원님들 의견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전체를 종료하고, 아까 박형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시기, 작년 올해가 골프장 관련하여 활황이기 때문에 이후 여러 가지 상황 조건 변화에 따라서 필요할 시 재발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첨부 의견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동의하셨고 다 동의했습니다.

○추경호 위원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정부에서 이것 올렸을 때는 올린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업위기지역하고 고용위기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골프장 개소세 감면으로 정말 여기에 대한 위기에서 벗어나고 하기는 어렵지만, 내장객도 많이 늘어나고 하지만, 뭔가 위기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버리지 않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유지하려고 했는데 여야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면 저희가 따르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추경호 위원 정부는 감면 줄이고 세금 더 들어와서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정책의지가 있었으면 그 정책의지가 지금 사라지는데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의사결정을 해도 되는지 부분하고…… 뭐, 저는 전체 의사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한 두 해 전에 이것을 의사결정 했다가, 우리가 1차 의사결정을 했는데 저와당을 달리하는 모 의원님들께 이런저런 현지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 이것을 다시 반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난처한 상황들이 막 발생하더라……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 취지, 지적하는 것도 일응 공감을 하는데 이게 세수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 정책 취지를 갖고 그래도 사람들에게 힘을 보태 주자고 하는 의지를 갖고 했으면 정부도 그런 면에서 판단은 최종적으로는 좀 신중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주영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세제실장님, 지금 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입장료가 얼마였고 현재 입장료가 얼마인지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류성걸 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자료를 한번 내 주세요.

조금 전에, 뒤에 계신 분이 과장님이세요?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장 조용래 예, 환경에너지세제과장입니다.

○류성걸 위원 그런 자료가 없는데 위기지역에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장 조용래 부킹률로……

○류성걸 위원 관련 자료를 보자고 했을 때 ‘이것 영업비밀이다. 내부적인 자료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눈감고 그냥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도 지원해 줄 데가 진짜 많은데 ‘우리가 어려워우니까 지원해 주면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관련되는 걸 분석하자고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 낼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못 드린다는 말씀이 아니었고요.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골프장에서 말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것은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의견을 좀 듣고요.

아까 정부 측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사실은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책의 여러 가지 중 한 가지가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 인하지 않습니까. 다른 많은 지원 중에 그것 하나인데, 이것이 그 지역 위기의 돌파구냐 아니냐에 있어서 현재 골프장이 활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종료하고 다른 부

분에 관한 지원으로 더 전환하고 높이는 게 유효하다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자료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자료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영진** 27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명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분할 등에 대한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해서 여덟 분의 의원님은 적용기한을 연장하자는 의견이고요 정부안은 전산조직 분리가 완료됐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정부는 당초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이것을 일몰 종료하는 게 낫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많으십니다. 또 우리 소위 위원들이 많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 차관님, 취지를 좀 더…… 이게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공급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농업의 전산용역 공급?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전에 농업이 구조개편되기 전에는 농업중앙회, 농업은행이 다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굳이 그 거래에 대해서 부가세 부과가 안 되는 건데요, 그런데 신경분리를 해서 분리가 되니까 농업중앙회랑 농업은행 간 전산 같은 게 서로 간에 거래가 일어나니까 사실 부가세가 붙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방향에 의해서 된 거니까 그 과도기까지는 원래 한 몸이었을 때처럼 부가세를 내지 말게 해 다오 그런 거였는데 사실상 이게 다 정리가 됐으니 정상적으로, 다른 은행들이나 그런 거래들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이것은 제대로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차관님,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면제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금액?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태주** 연간 40억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연간 40억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태주** 예.

○**소위원장 김영진** 이게 농협조합이 신경분리할 때 그것을 지원하는 형태의 하나로써 하고 정부 측 입장은 그런데, 의원님들 입장은 아직 조금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 제가 발의한 사람으로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분리 이후에 농협 부채가 20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부에서 해 주기로 해 놓고 해주지도 않고 지금 계속 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산 분리가 완료됐다고 해서 목적이 달성됐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사실 상당수가 농민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도 영향이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좀 더 연장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경분리 할 때 그때의 정신들이 지켜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김수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홍 위원** 이게 수협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수협중앙회도?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태주** 예, 똑같습니다.

○**김수홍 위원** 저도 연장안을 내기는 했고 또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중앙회에 대한 불만은 사실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중앙회 직원이 한 1만 6000명 되는데 연봉이나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게 다른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산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됐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고 있어서 지금쯤은 한 40억 정도 농업중앙회가 부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상징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농민들은 괜히 농업중앙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약해지면 그게 회원조합이나 농민들의 어떤 인권이나 소득향상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하는 약간의 우려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농업중앙회가 이 정도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연장하고 다음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일영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적용기한이 2021년,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네요. 그런데 원래가 이랬던 거예요, 이게 몇 차례 연장됐던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한 세 차례 정도 연장되어 왔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세 차례 연장됐지요?

정부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용역 관련된 사업이 이제 완전히 다 끝났다 이것 아닙니까? 더 이상 연장이 필요없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이 개편 작업이 끝난 게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연장, 연장되기 전에 끝났을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2017년에 끝났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2017년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연장을 해 줬네요. 그 논리면 끝났으면 그때 그냥 끝을 내 버렸어야지,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저희는 그때 일몰 종료안을 여러 번 냈었는데 여야 합의로 계속 연장되어 왔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도 여야 합의로 연장이…… 이게 사업이 금년에 끝났든 지금 끝났든, 작년에 끝났으면 끝난 것과 동시에 ‘금년 연말까지 끝’ 해 버리면 되는데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을, 세 차례 했다 그랬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때마다 정부는 반대했는데 국회에서 연장한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저희가 정부안을, 일몰 종료하는 안을 냈고 조세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연장이 되어 왔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종료의 명분이 좁약한 것 같고요.

다른 예에도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사업체나 다른 산업에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농협과 수협이 아닌 일반 금융지주회사하고 다른 금융계열사 간 주고받는 전산용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약간 부담스러운 게 왜 농·수협만 해 주냐, 우리도 해 주라는 법안이 아마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농협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다른 산업보다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거지요. 저는 계속 연장해 준 것이면 연장해도 문제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지금 다수 위원님들이 연장해야 된다, 그리고 또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다음에 ‘이번 한 번만 하자’ 또는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것 반드시 연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늘 우리 여야가, 이 저변에는 결국 농민·어민들이 계시고, 농협중앙회가 경영을 잘해야 된다, 회원사하고 잘해야 된다 이런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이런 제도는 유지가 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연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유경준 위원님.

○유경준 위원 반대로 질문을 하나 해 볼게요.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간에 전산용역이 분리돼서 자회사와 모회사 간에는 전산용역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는 것인데, 그런데 일단은 민간에 있는 다른 일반 금융기관들 지주회사와 모회사 간에는 부가가치세를 받고 있잖아요.

반대로 얘기해서 일반 금융지주회사 것도 똑같은 식으로 면제를 해 주면 어떤 논리에 의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회사와 모회사 간에 거래관계가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이 기준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렇습니다.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게 일부 예외를 빼고는 대원칙이거든요.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그것은 법안이 발의됐으니깐 그때 한번 말씀……

○유경준 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민간기관과는 달리 여기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다양한 좋은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약 400억인가 제가 기억하는

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실 신경분리를 정부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위원 연장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전체적인 위원님들 생각이 정부 측은 일몰 종료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농업·농민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에 대한 상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하는데 단순 연장이니까 2년 연장으로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주영 위원 여기 4명 위원님들이 발의한 것이니까 저는 2024년까지 그렇게 연장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여야 위원님들의 결정 사항을 저희가 안 따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하고 농협은행간에 농협중앙회가 제공하는 용역도 있고요 은행이 중앙회에다가 제공하는 용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금융지주회사도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너희들 때문에 면제를 해 달라고 하니 이것은 과세를 하는 게 어떠냐 그랬는데 농협 측에서 중앙회가 금융계열사에다가 제공하는 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어도 무방하다라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수효과는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한 10억 조금 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제가 보기에 이 법률안 그대로 준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만 여기에서 세부적인 안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기한은 2년이 맞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소위원장 김영진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정부의 의견을 들어 주셔서…… 왜냐하면 단순 기간 연장이라서 원칙에 따라서 2년으로 하겠습니다.

합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분리해서 적용하는 안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연기를

하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제가 정부에 한 말씀……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되면 아까 밑에도 나왔지만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그랬을 때 법률이 과연 형평에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농민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얘기하다 보면 모든 세금 다 감면해 줘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 해 줘야 됩니다.

여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을 분리하게 된 것은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분리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든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정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금융기관은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자회사도 만들고 모회사도 만들고 하는데 농협의 경우에는 강제 통합합 경우도 있고 법률로 분리하라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외하는 그런 근본적인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28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한을 연장하자는 것이고, 하단은 지금 논의하신 부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삭제 또는 적용기한 연장 관련입니다.

○추경호 위원 같은 취지니까 같이 갑시다.

○소위원장 김영진 같은 취지니까 이것은 전항 27항에 따라서 같이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한은 2년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9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인지세 면제기준 상향에 따른 개별 인지세 면제특례 정비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금전소비대차증서 인지세 비과세 대상인 기재금액을 상향 조정 또는 상호금융기관 조합원이 상호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비과세 대상 용자금에 대한 기준 상향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의 대비표는 하단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지금 인지세법에 의하면 금전소비대차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면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논의해 주신 것 그중에서 상호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그것을 1억 원으로 더 높여서 면세를 해 주고요. 다만 그것을 그때 단순 연장해서 일몰로 2년 연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일반적으로 5000만 원 해 주고 있는 것을 조승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예 대상을 2억 원으로 올리자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기본이 5000만 원인 현행 제도를 그냥 유지했으면 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김수홍 의원님 같은 경우는 상호금융, 저희들이 합의해서 1억 원 이내로 한정된 것을 그것을 2억 5000까지 더 늘리자, 그러면서 연장을 3년 더 하자 이런 건데 이것은 당초 이미 합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1억에 2년 연장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정부 입장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해서 2년 연장에 1억 이렇게 하고……

○김수홍 위원 제가 제출했는데요.

○소위원장 김영진 김수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홍 위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재위원님께서 가점 10점입니다.

다음 30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서 2024년까지 인지세를 면제하자는 안과 그다음에 일몰이 도래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인지세 면제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2024년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된 것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고요. 이것 말고도 다른 것에 부가가치세라든지 다른 게 또 2건이 더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영진 동의합니다.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31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 시 증권거래세 면제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그냥 따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몰은 단순 2년 연장이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영진 동의합니다. 31항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32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그 대회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자는 것이고요. 개최가 종료된 시설 제작·경기 운영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 규정을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아까 유사 건과 동일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영진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33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두 가지 내용인데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자는 게 있고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 2번 보시면 연구개발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한 경우 또는 감면대상 사업장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면제된 관세를 추징하자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단순 2년 연장에 추징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영진 동의합니다.

34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영세사업자에 대한 채납액 징수특례 제도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영세개인사업자의 채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2021년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징수특례 적용인데요. 작년에 폐업하신 분들이 대상이었는데 역시 금년에도 해 드려야 되니까 금년 중 폐업하신 분들까지 다시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왜 7월 25일까지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것을 매년 기준으로 하는 게, 저희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이유가 그 시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시점의 징수불능 채납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류성걸 위원 이게 법에 7월 말이든지 아니면 12월 말이든지 6월 말이든지 하는데 그런 이유라면 굳이 이렇게 날짜를 7월 25일까지로 할 필요 있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게 7월 25일 딱 이렇게 발표는 다 했는데 올해 채납액 다 해 준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일부러 막 채납하는 그런 사례가 생길까 봐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안으로 동의 처리하겠습니다.

5권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항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쉬었다가,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 6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번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인데요, 이 부분은 뉴딜인프라 펀드를 이야기합니다.

현행·개정안 대비를 보시면 적용기한인 2022

년 12월 31일까지 배당소득에 대한 9% 분리과세인데요, 개정안은 적용기한까지 가입 시 이후 5년간 배당소득에 대한 9% 분리과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현행 제도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렇게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특별한 사안이 없으시니까요……

○류성걸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 당초에 적용기한이 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입했던 분까지예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그런데 적용기한을 가입 이후 5년간 하는 것은 제가 속된 표현을 쓰면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뉴딜인프라 펀드 언제 시작했지요? 2020년 7월 입니까? 7월 발표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올해 출시가 됐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배당한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올해 7월에 처음 출시가 됐고요, 아직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았 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다른 특례의 경우에도 그 때까지 납입 또는 했던 것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한데 뉴딜인프라 펀드는 과거에도 보면 다른 경우에도 실적이 안 좋고 또 이게 정치적으로 그럴 가능성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 경우에도 이런 형태로 규정한 경우가 있나요? 언제까지 납입 또는 했던 것 이후에 몇 년간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이것이 처음의 의도와는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펀드라는 게 통상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3년짜리 펀드 같은 경우에 올해 출시가 됐을 경우에 3년 동안 배당소득이 발생하는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 적용기한을 22년, 내년 말까지로 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는 실

효성이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류성걸 위원** 실장님, 잘 알겠어요. 뉴딜인프라 펀드가 어떻게 보면 기재위 상임위 당시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본 위원도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안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것이 정치적인 부분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것을, 이미 적용기한을 22년, 그것도 이 정부 끝나고 난 뒤 22년 12월 31까지 한 것인데 거기다가 다시 적용기한을 ‘가입 시 이후 5년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심한 거예요.

○**박형수 위원** 작년에 우리 조세소위에서 뉴딜인프라 펀드에 대해 논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세제혜택을 줘서 펀드를 모집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자원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도 충분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한을 5년간에 배당한 소득에 대해서도 또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게 입법권을 5년 이상으로 늘려 놔 가지고 다음 정부가 할 때까지 다 묶어 놓겠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21대 국회 임기 끝나고도 5년 동안 해 버리면 계속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만약 애초에 이렇게 5년간 이게 필요했다라면 법을 만들 때, 작년에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분리과세 9%가 아니라 기한을 늘려 잡았어야지요. 그때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해 놔다가 지금 와 가지고 이것을 5년을 늘리겠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김수홍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수홍 위원** 한국판 뉴딜에서 민간자본 투자를 얼마 예상하고…… 그때 총 규모를 5년 동안 200조 잡았나요, 백몇조 잡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그것은 한 20조, 그러니까 전체는 저희들이 220조인가 해 가지고 그것은 재정투자만, 전체 사이즈이고요. 그러니까 금융 부분에서 들어가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한 20조인데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중에서도 아주 또 극히 일부가 되는 상품입니다.

○**김수홍 위원** 그런데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

진하면서 정부 재정이 충분히 있으면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을 줄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인프라 펀드를 만들기 위해 민간투자자 자본을 끌어들이어서 정부가 만들어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은 별로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실적은 뉴딜인프라 펀드가 21년 7월에 출시되었고, 결국 이게 뭐냐 하면 현재 사업이 뭐가 있는지 사업을 잘 엮어서 투자자들을 모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런 펀드들은 사업을 한 5년짜리로 기획을 합니다, 5년짜리. 그러니까 배당이 5년 나오는 것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 세제실장이 얘기한 대로 2년 동안만 딱 해 준다 그러면 이 펀드 자체가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투자 그리고 펀드의 특성……

○**박형수 위원** 처음부터 그런 것 안 되는 것을 만들었으면……

○**류성걸 위원** 그런데 잠깐만, 차관님.

○**김수홍 위원** 제가 질의 마치고요.

○**소위원장 김영진** 김수홍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하고 류성걸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수홍 위원** 이것은 충분히 토론이 가능한데 그 당시에 사업 구상할 때 그렇게 처음 단계에서 어설프게 구상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모여들지 않아서 지금 와서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과세 특례를 준다고 해야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좀 아쉽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확인할게요.

이것이 그러니까 2020년 세법 개정하면서 금년 말까지 적용기한을 한 건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내년입니다, 22년.

○**정일영 위원** 내년까지, 작년에 세법 개정해서 2022년까지.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2022년 말까지 펀드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여기에 대한 특례 적용, 분리과세 특례 적용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내년 말까지 가입하면 그 사람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내년 말까지 특정 상품에 가입하면 그 상품의 존속기간이 있을 겁니다. 2년짜리면 2년, 3년짜리면 3년. 그런데 최대 5년까지, 5년은 못 넘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

재 여기 펀드에 가입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이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입하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 펀드가 3년짜리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규정에 따르면 오늘 가입을 하면……

○정일영 위원 3년 동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3년인데 현재 규정이 22년 12월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분리과세……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걸 차례차례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면 내년 말까지만 혜택 특례 적용을 받는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 이후에는 안 되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그 상품을 판매할 때 그런 것 설명을 정확히 했나요? 보통 상품 할 때 보면 상품이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특례 적용을 받고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고, 특히 금융 소득에 대해서 보통 이자소득에 대해서,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가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상품들은 기간이 2년·3년짜리 있겠지만 특례 적용받는 것은 내년 말까지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그런 게 상품에 지금 정확히 설명이 돼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처음부터 할 때 몇 년짜리, 투자자가 약정을 할 때 돼 있는 거고요. 1호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 펀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출현하는 펀드들 있잖아요, 출현하는 펀드들이 더 장기로 갖고 오는 거지요.

○정일영 위원 그러면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된 건데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연장하는 거지요, 결국은. 그렇지요? 가입을 하고 나서 5년 동안 봐준다는 것 아니에요, 특례 적용을 한다는 것?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 말에 끝나는 걸 예를 들어서 내년 말에 가입하면 그때부터 5년 연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맥시멈입니다.

○정일영 위원 맥시멈으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그런 상품이 나오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그래서 취지는 이해가 가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을 작년에 할 때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거나 길게 5년이면 5년 잡지 않고, 이런 사례들이 상품별로 꽤 있을 텐데, 왜 작년에 이것을……

좀 허점이 있기는 있었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이렇게 지금 고쳐야 되는 이유를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나간 것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품이 잘 팔리나요? 목적이 달성되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내년에 3년짜리 펀드가 나오면, 뉴딜인프라 펀드 예를 들자면 수소충전하는 그런 펀드가 나오게 되면 내년 말까지만 세제혜택이 부여가 되면 세제혜택이 3년짜리 펀드인데……

○정일영 위원 그것은 알고, 다 아는 얘기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래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정일영 위원 지금 얼마나 팔렸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금년에 처음 나왔는데요 100억짜리가 조성이 됐습니다.

○정일영 위원 하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그러고는 없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이제 처음, 시행 초기라서요.

○정일영 위원 필요는 한 것 같은데 정부 당국에서 처음에 좀 잘못된 것은 같네요.

이상입니다.

○류성걸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진 예.

○류성걸 위원 실장님, 만약 이런 식의 상품에 따라서 상품이 5년이면 아까 차관님 답변 또 실장님 답변 중에 그게 장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앞에 이제까지 했던 모든 사항들이 다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입기간, 가입 때까지를 시한으로 보는데 상품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면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 일단 여쭙게요.

이런 형태로 이제까지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노인·장애인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비과세 종합저축, 일반적인 저축상품의 경우에도 저희들 일몰이 21년 말까지 가입하는 경우, 22년 말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운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가입하는 경우는 그러는데 ‘적용기한을 가입 후에 5년간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이런 상품들은 일반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아예 기한 없이 해 주고 있고요, 가입만 하면. 그리고 몇 년짜리도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전부 다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정일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정책 관련해서 이 정책이 지속되고 해야 될 부분은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또는 관련되는 핵심 국가전략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권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형태의, 당초에도 이런 논란이 많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한 번 더 논의해야겠는데요, 그러면?

○**류성걸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요, 이것 한 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특례 2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특례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를 신설하려는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여 1인당 매입액 2억 원 이하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자소득에 대해 9%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은 개인투자용 국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게 국채법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용 국채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정일영 위원** 제가 하나 여쭙볼게요.

이게 근본 취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개인투자용 국채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랬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활성화해서 얻는 게 뭐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첫 번째는 국채시장에서 수요처를 다변화하는 겁니다. 지금은 기관이라든지 보험사들이 하고 있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 확대하는 거고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또 자산이 형성되니까 결국 여러 가지 투자처들이 있는데 국채도 일종의 굉장히 장기 안정적인 투자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요와 공급 그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개인들 같은 경우를 국채시장에 더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정일영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쭙보는 이유는 결국 개인투자자들이 분리과세 적용돼서 세금을 덜 내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결국 국채에다가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소위 돈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여유가 있는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른 소득도…… 부의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는데 국채에 대한 투자도 더 활성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도 덜 내게 해 준다? 그게 꼭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부 입장에서 국채가 잘 안 팔려 가지고, 여러 가지 국채를 팔아야 될 수요가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개인투자자들까지 끌어들이어서 국가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요?

국채가 지금 안 팔리지는 않잖아요. 대한민국 국채 여러 가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국채 물량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처 다변화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결국 개인용 투자를 더 확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금을 깎아 준다는 건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지금도 개인이 국채를 당연히 매입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개인이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세제 혜택까지 주면서 개인한테 국채를 매입하도록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다른 국가에 이런 예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입법례가 있습니까? 외국에 이런 입법례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박형수 위원 어느 나라에 어떤 입법례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말씀 주신 첫 번째는 개인 국채보유 비중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가 개인이 보유한 게 9.9%, 싱가포르 5.1%, 한국은 0.1%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인이 국채를 사러 가려면 프라이머 딜러한테 연결해 갖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제도는 열려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굉장히 극히 미미한 거고요.

○박형수 위원 그것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율 아까 영국 얼마, 우리나라 얼마 이렇게 얘기한 거지요.

차관님, 답 좀 똑바로 안 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그것 물어봤습니까? 외국에 할인해 주는 입법례가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보유 비율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게 보유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그 답변드렸고요. 두 번째……

○박형수 위원 내가 언제 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어요, 이런 입법례가 있는지를 물어봤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입법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고 있는 중이어서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도 세제혜택이 주 및 지방소득세 비과세해 주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소득세 비과세 해 주고 있고요. 싱가포르도 소득세 비과세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의 국채 투자 이런 쪽에 인센티브를 줘서 가능하면 이쪽으로 올 수 있으면 자금 같은 게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결국은 개인도 자산 형성을 하고 국채도 약간 더 안정화하거나 기반을 확충하고 그런 제도의 취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수요 증대로 당연히 국채 발행 증대가 되는 것을 예상하고 이런 제도를 만든다는 것 그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지금 엄연히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데 개인의 비중을 굳이 높이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있으면 같이 한번 제출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영진 배준영 위원님, 류성걸 간사님.

○배준영 위원 차관님, 22년도 적자국채 발행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22년도가 총국채는 백팔십몇억 되고 아마 거기서 적자분이 180조 중에서 120조인가……

○배준영 위원 총액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2년도는 제가 77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도 모자란 상태인데 개인 국채까지 매입하면서 그렇게 확장재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저희들은 총규모를 늘리자는 게 아니고요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사 가는 분들이 결국은 외국인이나 국내 보험사나 개인이나, 그런데 그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그렇기 때문에 다 변화하자 이런 차원이고요. 총규모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 다변화한다고 하셔도 어차피 이런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그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늘어난다고 그래서 다른 부분을 명시적으로 줄이거나 지금 그런 계획이 현재로서는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저희가 총 발행 물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조, 100조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고요. 100조를 저희가 다달이 10조씩 10조씩 하는데 그때 기관한테 팔 수도 있고 아주 특정 물량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좀 더 논의하지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것 합의하기 쉽지 않은……

○류성걸 위원 국채법을 제가 보고 있는데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전제로 이렇게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채법 어디에 관련되는 사항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저희들이 세제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개인 장기용 국채의 정의가 국채법에 나와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국채법 제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국채법 어디에 근거를 국채를 발행하는데 국채법에 이 국채는……

국채라는 게 결국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발행을 합니다, 국고채. 그렇지요, 국장님?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예, 정확한 조문을 찾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런데 국채법에 어디에도, 이런 국채는 개인용 해서 발행하는 국채다 꼬리표 달고 이것은 개인용이 아닌 국채다 꼬리표 달고, 국고채는 그렇게 발행을 안 하잖아요. 저도 프라이머리 딜러(PD) 관련된 사항……

그런데 이게 전제로 된다 하니까 마치 국채법 개정을 안 하면 조특법 관련해서 안 되는 걸로 하는데, 그게 맞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지금 국채법 4조 1항에……

○류성걸 위원 국채의 종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새로 신설을 해서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하 개인투자용 국채라 한다)……

○류성걸 위원 그런데 국채법에 왜 그것을 합니까? 국채를 발행하는 기본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게 국채법인데 이 국채는 개인이 사야 되고 저 국채는 누가 사야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밑에 ‘다만’ 했던 그 사항은 저희들도 나중에 경제재정소위에서 보겠습니다만 국채는 국고채 관련해서 그냥 발행하는 거예요. 다만 그걸 어떻게 소화시킬 건가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금융기관이 할 건지 아니면 개인까지 할 건지, 금융기관 중에서도 뭐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은 시장에 맡겨 놓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의 예, 아까 박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외국의 예 관련되는 것 주시고요.

혹시 이런 게 있습니까, 유동화전문회사 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아시지요, 차관님?

유동화전문회사에서 국채를 모아서 새로운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것은 만들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지금도 주식형 펀드 중에 채권매입 비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아주 투명스럽게 그냥 그것인 것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하나 답변을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뭘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현재도 국채를 모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유동화전문회사에서 꼭 모아 가지고 그 속에 국채가 들어가고 뭘 해 가지고 할 것 아니겠어요? 펀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개인용이라고 해서 꼬리표 달아 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것은 유통시장의 얘기고요. 이것은 발행시장에서 별도로 개인용 국채만을 따로 뽑아 가지고 개인들한테는……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다변화를 하겠다고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변화라는 게 뭘니까? 그게 뭉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다변화를 한다면 그걸 묶어 가지고 유동화증권을 만들어서 하든지 펀드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큰 걸 쪼개 가지고 하든지 작은 것을 다시 묶어서 하든지 그것은 시장에 맡기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수흥 위원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예, 말씀해 주세요.

○김수흥 위원 차관님, 매년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그걸 위해서 국고채 발행 규모를 늘려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자칫하면 좀 안 좋게 보는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그 국고채를 사게 해서 재원을 조달한다고 오해하면서, 그런 제도가 시장의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관련해서 맞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면 정부가 국민들을 좀 이상한 방향으로 오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국채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기금이나 외국인 또 금융기관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하고 일반 개인용은 0.07%밖에 안 되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금융자산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넓혀 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고 또 그럴 유인책이 있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이게 국민들 돈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수익이 된다면 나이를 가리지 않고 다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저는 필요성이 있고, 설득을 한번 끝까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고 오히려 김수흥 위원님께서 제대로 많이 잘 설명해 주셔서요. 사실 한국 국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성이라든지 수익성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외국인들이 지금 너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한테도 그러한 기회를 같이 공개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은 저는 그게 크게 나쁘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김수흥 위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개인투자용 국채 특례 관련한 법안이 경제재정소위에 아직 논의가 안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전체회의에는 부의가 됐는데 소위에서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그것도 논의해야 되고 이것도 그에 따라 같이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지금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이 안 되면 이 안건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리고 차관이 설명한 대로 저희 개정안을 낸 91조의20 출발의 대상이 국채법 4조 1항 1호 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 국채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투자용 국채가 단순히 개인이 샀다 해 가지고 그냥 국채인 것으로 또는 거기에 필요한 각종 가입조건이나 운용조건 이런 것들을 세법에 다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처럼.

○**류성걸 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그런데 이 개인투자용 국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조건들을 그쪽을 기초로 해 가지고 동일하게 운용을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류성걸 위원** 마치 국채법 개정안이 안 돼서 이것을 못 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국채법하고 직접적인…… 간접적인 관계는 있겠지만 거기가 개정이 안 된다 해서 이것을 처리를 못 한다 이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그 관련한 법도 제가 보기에는 기재위에 다 상정돼서 같이 공식 논의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나 소위에서도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 같이 해 주시지요.

3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3항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가변하고 나변하고 농어촌특별세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 날 논의했던 것 연결된 게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3항 의결 시’ 돼 있는 자료 있는데요, 그 3건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인데요, 이것은 새롭게 만든 펀드입니다. 가입대상, 공제조건, 공제내용 있는데 공제내용은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고자 하는 거고요,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인데요, 가입대상, 공제조건, 내용은 이자소득 비과세고요,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3항 의결 시’ 돼 있는 이 자료 설명드리면 이것은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및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데요.

이것은 2페이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서는 조특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과세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하고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청년형 장기펀드, 저희들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 청년들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다만 청년 관련해서 자산형성 세제지원 현황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은행에 잠깐 갔다 왔는데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ISA 관련해서 한번 여쭙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제지원 관련되는 사항이 너무나 다기하게 돼 있어서 개인들이 또는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이해관계인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몇 개의 종류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은행에 가서 물어봐도 그걸 추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세제지원 관련되는 것을 전체 정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재산형성 관련되는 세제지원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이것도 어찌저찌 해 봤으면, 어떤 경우를 보면, ISA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이것은 직접적으로 관련 없지만—ISA도 물론 청년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다기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1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이것은 마이너한 건데 자료 작성하실 때 이쪽의 농어촌특별세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안 21조의2가 아니고 91조의2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또 한 가지 세 번째, 여기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드렸습니다만 총급여하고 종합소득하고 관계가 비례 관계가 안 돼요. 그것도 너무너무 복잡해요. 온 데 그냥 뭐 때문에 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 놔는데 이것도 이번에 통일시킬 수 있으면 통일시켜 주시고, 안 그러면 앞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관련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유경준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다 동의하셨어요.

○**유경준 위원** 어저께 확인해 달라는 것과 관계도 있고 조금 전에 류성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관계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부에서도 하는 게 있고 고용부에서 하는 게 있고 별도로 하는 게 있고 해서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정책 차원에서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또는 좀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방법 있으면 찾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저께하고는 틀린 게 이것은 펀드를 얘기하고 있는데 펀드도 아까, 어제 얘기랑 똑같이 급여라 하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말하는 것 같고 종합소득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임금근로자들도 종합소득을,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해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준으로 돼 있는 5000과 3500 기준에 대해서 아마 확인하셨을 텐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위원님 어제 지적하신 내용을 확인했고요. 지금 청년형 장기펀드 같은 경우에 총급여 5000, 종합소득 3500으로 돼 있는데 총급여 5000에서 만약에 임금근로자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총급여 5000에 대응되는 근로소득 금액이 3775만 원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금액이 3500이 넘어가는 이런 측면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제도를 여러 가지로 설계하면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된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전체 분포의 구조를 중요시하거나 그때의 상황을 좀 더 중요시하거나 이런 설계 과정에서 일치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신다 그러면 예를 들면 5000만 원에서 그런 상충되는 구조가 발생하지 않게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을 3800을 맞추는 이런, 이번에 제기된 몇 가지 청년형 장기펀드하고 다음번의 청년희망적금, 어제 논의하신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런 부분들은 근로자와 사업자 소득이 역전이 되지 않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현재 수정안을 3800

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3800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괜찮으시겠어요?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다 맞추는 거니까.

○류성걸 위원 다 같이 맞춰서 관련되는 자료를 전부 다 해서 표현을 간쑹하게 맞춰서 주세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요, 이것 변경 다 받으셨으니까요.

그러면 3항은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내용은 다른 조항, 다른 부분들도 그에 맞춰서 조정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농어촌특별세 일부개정법률안도 그에 따라서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관련인데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가운데 표를 보시면 단독가구·홀벌이가구·맞벌이가구의 총소득별 지급상한액을 표로 그려 놓은 거고요. 제일 마지막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가구 및 지급액 추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상한액을 상향하겠다는 건데요, 개정안은 단독가구·홀벌이가구·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상한액을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 상향하고자 하는 거고요.

검토의견입니다.

긍정적인 면은 제도의 신규 취업 촉진 효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명목소득 증가로 인한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방지 필요,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 효과의 감소 가능성,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기준액에 따른 문제.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근로장려금 제도를 더 보강하는 거고요. 지금 소득기준이 있는데 거기 상한액 그 부분들을 조금씩 상황 변동에 맞춰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위원장 김영진 예, 말씀해 주세요.

○류성걸 위원 근로장려제도가 명칭 자체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겁니다. 물론 EITC의 본래의 취지는 다른 공공부조와 관련해서 소득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더라도 근로능력 있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근로를 장려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우리는 거기에 더 보태서 이름 자체도 근로장려가 돼 있는데, 관련되는 자료를 보시면 점증구간과 평탄구간과 점감구간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점증구간에서는 여가가 정상재라는 전제하에서 대체효과는 항상 소득효과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 속에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하고 같으면 노동 공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거기서는 증가, 감소 또는 동일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평탄구간과 점감구간은 무조건 노동 공급이 감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제는 여가가 정상재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점증구간, 지금 6쪽의 표를 보시면 기존에 있던 점증구간에 관련된 사항은 하나도 변경이 없고 점감구간에 관련돼서 2000만 원에서 소득기준으로, 전체 기준으로써 2000에서 2200, 그다음에 3000에서 3200, 3600에서 3800,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노동 공급을 오히려 줄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근로장려금제라는 그 취지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취지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결국 이게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지금 변질이 되어 있어요. 노동 공급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점증구간에 관련해서 무슨 변경이 생긴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거기는 노동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늘려야 되는지에 관련되는 사항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다만 늘려야 되는,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이유 중의 한 개가 물가상승률 또는 최저임금 또는 중위소득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다른 제도들도 전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비례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관련되는 걸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하든지 차별을 두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2017년도 시작할 때에

1조 3000억 정도 됐던 조세지출이 작년에 4.5조, 거의 5조 정도 됐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을 때 노동 공급에 늘어나는 부분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거둬서 취약계층이나 또는 노동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재정지출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답변해 주세요.

좀 이따 다시 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근로장려금 제도는 류성걸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대로 사실은 이것은 워킹푸어(working poor)에 대한 근로장려와 또 복지적인 측면이라서 가장 대표적인, 아주 생산적인 복지 시스템이고 또 근로도 말씀하신 대로 손상하지 않으면서 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커버리지가 2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너무 좁다, 그래서 약간 더 넓히자 그런 거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점증·점감 이 구조 설정하는 것, 이것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약간, 그것을 200만 원 넓히면서 현행 제도를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행은 지금 있는 제도에서 그렇게 크게 바뀌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차관님, 점증구간 관련해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도 더 크면 노동 공급이 증가해요. 또 대체효과하고 소득효과가 같으면 노동 공급은 일정하고 고정이고 또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적으면 노동 공급이 감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근로장려금의 취지가 공적부조하고 비교했을 때 노동 공급을 늘리는 게 목적이려면 점증구간을 늘려 줘야 그나마 그중에서 3분의 1 되는 확률이 있을 수 있는데 점감구간이나 평탄구간에 하면 노동 공급의 효과는 전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늘려 줘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것을 늘려 주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또는 중위소득 증가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면 다른 것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금액이 지금 얼마지요? 조세지출 이렇게

하면 한 2600억, 한 3000억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금액도 엄청 큰데 목표 달성도 아니고 당초의 취지가 변질돼서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소위원장 김영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유경준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같이 질의를 듣고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방금 류성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설계를 변경하고 확대하고 물가상승 반영하려는 취지는 좋은데 점감구간, 가라앉는 구간을 증가시키는 것은 EITC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안심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가구 기준으로 NIT(negative income tax)를 한 건데 그것은 일하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돌려주는 것을 두 배씩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어서 가지고 근로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가난한 분한테 많이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자문이나 또는 의견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것만 시행하는 걸로 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근로의욕을 감퇴시키지 않으면서 복지제도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차라리 NIT와 가까운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저번에 상임위 할 때 질의드린 대로 지금 복지의 기본 단위가 가구 기준이나 개인 기준이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부양의무자가 폐지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더 이상 복지제도 단위를 가구 기준으로 해서는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게 소득과약도 안 되고 하니까 신고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소위 낙인효과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 확대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소득과약들은 점점 자리를 잡고 있어 가지고 복지제도 기본 단위를 지금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으로 이양해야 된다는 시기고 그리고 이 점감구간을 증가시켜서는 원래 가진 EITC의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올해 올라온 것은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런 큰 틀에서의 방향이나 근로의욕 증가를 통한 본래 의도한 것과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재고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드릴 수……

○배준영 위원 저도……

○소위원장 김영진 같이?

○배준영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배준영 위원님 발언하시고 전체 종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김수홍 위원님.

○배준영 위원 류성걸 위원님 말씀도 제가 들어봤지만 이게 1조 3000억에서 4조 5000억 원으로 몇 년 만에 이렇게 늘었는데, 이게 근로장려를 위한 수단이 되고 그런 인센티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공적부조의 성격을 점점 띠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최저임금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9150원, 191만 4400원이 월간인데 연간 하면 2297만 원이 되니까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파트타임 하고 이보다 좀 덜 받는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주기적으로 풀타임으로…… 생각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적부조의 형태로 많이 받게 되고 저소득층, 8시간 풀타임 근무자는 지원받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근로장려를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종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지금 배준영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21년에 최저임금이 러프하게 계산하면 2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홀벌이 소득 상한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는데도 EITC를 한 푼도 못 받는 그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니까 거기에 맞추고 또 중위소득 65% 기준도 따져 보니 그걸 맞춰 주게 되면 지금 최소한 최저임금을 받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EITC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점감구간에서, 지금 점감구간의 기

울기를 좀 평탄하게 해 주면서 그러면 여기 대체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여가를 줄이는, 노동 공급을 늘리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200만 원을 맞추는 방법이 평탄구간도 늘리고 점감구간의 기울기를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평탄구간의 길이는 놔두고 점감구간의 기울기만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아까 서울시……

○소위원장 김영진 김수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유경준 위원님.

○유경준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경준 위원 기재부에 의뢰를 할 텐데, 그것에 대해 의견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혹시 그것도 한번 챙겨 보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설계에 중요한 거니까.

○소위원장 김영진 김수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홍 위원 EITC 상한액 확대에 대해서 저는 부작용을 충분히 정부도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EITC가 저소득층에게 자립 기반을 통해서 생활의 안정이나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부나 국회는 그분들한테 희망과 자립에 대한 의지를 부여해 주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부득이한 정책의 일환으로 가구별로 200만 원씩 상향해서 왔는데 이게 어떤 구간별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의 얘기도 있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배려하면서 저소득층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정부나 국회가 나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통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사회자가 한 말씀 드리는데요.

노동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구간과 판단 이런 부분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명목임금의 인상에 따라서 실제로 EITC를 통해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직접 이전소득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EITC를 통한 지원이 실제로 유효하다는 부분들은 여야가 다 합의하고 동의했던 부분이었고

확대해 나가자라는 큰 방향을 했고, 실제로 EITC 관련한 예산들이 일찍 소진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준을 2018년 이후 쪽 상향되는 기준에 맞춰서 상향을 해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늘려 나가고 하는 부분들은 개정안에 대해서 의미가 적정한 것 같아서 안대로 좀 같이 해 주시지요.

유경준 위원님, 그다음에 류성걸 위원님.

○**유경준 위원** 소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서, 이게 어떤 근로장려세제나 이런 것을 해서 노동 공급과 복지제도로써 실현하려고 이렇게 꽤 오랫동안 해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복지제도로써 지급하는 면에서는 괜찮은데 근로의욕 확대를 통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실패 쪽이 오히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다른 분……

○**소위원장 김영진** 이것 의견을 말씀 주신 거라서……

○**류성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까와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강조를 한다면 이 조세지출 관련된 사항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세지출이 안 되면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지출, 재정지출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제도가 바라는 것은 워킹푸어를 방지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보고 또 추가적으로 더 기준을 완화해서 2000에서 2200 또는 추가적으로 200씩 더 늘려 가지고 했을 때 노동 공급이 늘어난다는 게 있으면 하나의 방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나 실제로 현재 늘어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금액을 늘린다고 해 가지고.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 노동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근로장려세제지 않습니까? 근로 장려라는 차원에서 보면 전혀 늘어나지 않는, 금액만 들어가는, 말하자면 사중손실일 가능성이 거의 100%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 쪽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이야기드렸듯이 이게 세제도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칙,

기준을 적용한다면 1개의 제도에만 이렇게 적용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물가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또는 기준중위소득 관련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을 이제까지 제일 많이 올렸어요, 올해. 거의 한 5.2% 정도 올랐는데 그렇게 올랐던 것을 다른 데도 적용할 것 같으면 다른 제도에도 전부 다 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김수홍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소위원장 김영진** 예, 김수홍 위원님.

○**김수홍 위원** 류성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세지출이 아니고 예산지출로 해서 예산의 수혜자가 형평성을 갖게 하는 것도 좋은데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 현장에 가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인데 수혜의 대상 또 노인 일자리를 그분들에 한해서만 할 필요가 있느냐, 전체적으로 노인들의 전반적인 복지로 쓰여지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는 상황에 따라서는 복지지출이나 아니면 조세지출이나 이걸로 갈 수 있는데 저는 EITC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좋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아까 류성걸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다음에 답변을 안 들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소위원장 김영진** 예, 답변을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아까 최저임금이 올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2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단독가구 같은 경우에는 소득상한금액이 200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EITC 수급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려 주는데 올려 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 평탄구간도 늘리면서 점감구간을 그대로 놔두는 방법이 있고, 평탄구간은 가만히 놔두고 점감구간의 기울기만 낮게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점감구간의 기울기를 낮게 해 주는 것이 대체효과가 있으니까 여가를 덜 선호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탄구간을 늘리고 점감의 기울기를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는 기존 수급자들의 노동 공급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예.

○류성걸 위원 조세지출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조세지출의 기본적인 틀은 당연히 세제실에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러한 인센티브 또는 이러한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건가…… 당연히 그것 해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람직한데 프라이빗 섹터에서 가는 게 맞는지 퍼블릭 섹터에서 가는 게 맞는 건지를 봤을 때 공공에서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조세지출로 가는 것이 맞겠는가 또는 재정지출로 가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단계별로도 한번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이해는 돼요.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제도가 당초에 목표했던 바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 같으면 주면 줄수록 좋은 겁니다.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왜? 받는 분들, 대상이 지금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30만 명 늘어나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 정도……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수도 늘어나지요.

오히려 그렇게 따져 본다면 그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반대로, 거꾸로 기존에 있는 대상자를 놔두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대상자는 그대로 놓고 거꾸로 맞춰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약간 차이는 있는데……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지금까지 얘기한 여러 문제들이 검토의견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기준 상한 등등 해서 우리나라는 2020년 개정안에 따르면 1인당 GDP의 59~102%에 해당되고 미국은 34~89, 영국은 45~62, 캐나다 31~48 이렇게 되거든요. 이 제도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순기능적인 측면만 있다면 다른 나라들에서 이 비율을 이렇게 우리보다 더 낮게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외국에서, 지금 미국·영국·캐나다가 우리보다 더 낮게 되는 이유는 뭐지요? 그것 혹시 기재부에서 얘기할 수 있나요? 파악된 게 있는가요?

○소위원장 김영진 담당 국장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지금까지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게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최근에 미국의 경우에도 코로나 위기극복 등을 위해서 21년 소득에 대해서 EITC를 대폭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요건도 완화하고 소득 요건도 지금 부부 합산 2만 1700불에서 2만 7380불로 약한 20% 이상, 한 30% 가까이 완화를 했고요. 최대지급액도 500불에서 1500불 수준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 자료도 이따 한번 쭉 보시고요.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더라는 건데 그전에 이 정도 비율로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것은 순기능과 부작용,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 비율로 유지하는 것이 이 제도를 유지하는 효율적인 기준이다 이런 게 아니겠나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늘린 자료하고 혹시 외국에서 더 이상 안 늘리고 이 정도 비율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최대 지급 기준이 많이 늘어난 부분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실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류성걸 위원님이 계속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점증 부분하고 반대로 점감 부분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EITC를 만약에 도입한다면 분명히 그런 문제가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점감구간은 최대한 기울기를 느슨하게 해라, 그래야만 그런 부정적인 대체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제도 설계를 그렇게 유지해 왔고요. 이번에도 점감구간이 비록 대상은 확대가 되지만 기울기가 좀 더 평탄해짐으로써 기존에 있던 수급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부정적 효과가 오히려 조금 완화되는 그런 또 반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외국은 그 기울기가 우리보다 더 완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자료도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예,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저는 이것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EITC 관련된 사항은 점증구간이 바로 네거티브 인컴 택스(negative income tax)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네거티브 인컴 택스 부분이 점증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거티브 인컴 택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공적부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적부조 차원에서 하는 점감구간하고 평탄구간에 관련된 사항들은 그걸 조세지출 쪽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박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8쪽에 나오는 이것은 사례를 전부 다 보십시오. 각국의 사례를 보시면 왜 이렇게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또 캐나다도 이러느냐 하면 재정지출 금액이 너무 급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급격하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늘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관련국들의 전체 시작했을 때의 금액하고 조세지출 금액하고 금액을 같이 한번 병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약간 이견이 좀 있네요, 그렇지요?

류성걸 위원님, 정부안에 대해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류성걸 위원** 예, 이 부분은 여러 번 논의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계속 우리 이것 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인데 EITC와……

그러면 우리가 복지지출 부분을 늘리게 되는 형태가, 대안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 또 그렇게 되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또 그게 퍼주기냐 아니냐의 논쟁으로 엄청나게 많이 가서 실효적으로는 보면 EITC 방식이 그래도 조세지출 방식으로 가장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적합도나 가성비가 상당히 높은 제도로서 사실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문제 때는 큰 이견이 없이 합의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목임금 상승률 그다음에 최저임금 상승률에 맞춰서 그 기준을 설정해 주지 않으

면 실제로 효과가, 대상자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춰 주는 게 타당한 입법 조치 아닌가라는 의견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의견.

○**류성걸 위원** ‘여야 간 합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여야 간에 그동안 EITC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견의 일치를 가지고 지원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늘려 왔지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유경준 위원** 저도 초기에 설계할 때 찬성했던 사람 입장이고, 그리고 점증구간을 굉장히 늘려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게 근로의욕 증가 문제와 관계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해외 사례 중에서 한국처럼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이런 식으로 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EITC는 당연히 그런 구조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유경준 위원** EITC는 그런 구조인데, NIT 기반으로 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탄구간이나 점감구간을 길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설계를 새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이것 한 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준비해 주시는데 외국의 예는 다 제출이 됐지만 더 참조할 사안이 있는지 또 효과에 대한, 점증구간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으셔서 한번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나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명호** 9페이지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최승재 의원안인데요.

개정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어서 거주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소득기준 상한액을 상향하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또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별도 트랙으로 훨씬 더 높게 하자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누가 더 어렵냐 그런 것을 보면 근로자·사업자 간 형평성 유지 이런 근로장려금

기본 방향에 위배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 정부 측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것도 같이 추가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다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반기별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3개월 단축인데요.

가운데 표를 보시면 반기별 지급 신청이 있고 정기 신청이 있는데 상반기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는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하는데 정산은 또 9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 시기를 6월로 해서 하반기하고 일치하자는 개정안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하반기 지급 시기랑 정산 시기를 합쳐서 그렇게 간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국세청 의견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가능하다는 겁니다.

○류성걸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동의합니다.

동의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1페이지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인데요.

좌측에 보시면 가입 대상, 특례 내용, 납입한도 연 2000만 원, 총 납입한도 1억 원입니다. 의무가입 기간 3년인데요.

이 개정안은 ISA 내에서 상장법인 주식의 양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현재도 ISA라고 국민들 자산형성 지원해 주는 계좌가 있는데요. 이게 주식 양도 부분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소득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변동

하면서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12쪽에 한 세 가지 정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취지 저해 우려, 소득계층 간 과세 형평성 우려, 투자상품 간 과세 형평성 저해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정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저희가 비과세하는 취지를 설명드리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직접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양도차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 거냐 똑같습니다. 그런데 ISA를 통해서도 주식을 살 수가 있는데 ISA는 1년에 2000만 원씩 불입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해서 1억까지 불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5000만 원 공제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두게 되면 최소 3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억 5000만 원 공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금액 자체가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금 1억 안에서 이것을 가지고 1억 5000을 번다는 그런 일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원금 1억을 가지고 번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 줘야, 바깥에서 직접 주식 투자를 해 가지고 버는 돈은 5000만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최소한 불리하지는 않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바깥에서 투자를 하면 5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데 여기 들어와서 하면 비과세가 없다는 거라면 ISA라는 어떤 특별한 자산형성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과세를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것이 지금 ISA만 이렇게 해야 되나요? 결국에는 자산형성이라는 것이 저축을 어떻게 많이 유도할 건가 이겁니다. 우리나라 저축을 늘리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ISA는 ISA대로 특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다 똑같이 해 준다면 진짜 제도 전부 다 확 묶어 가지고 한 서너 개만 딱 해서 1·2·3·4 유형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복잡하게 돼 있느냐 하면, 제가 그래서 아까 청년 관련되는 자산형성 전부 다 정

리를 하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다 정리를 해 달라는 것이 개인에 관련된 사항하고 또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 행위에 미치는 영향 또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이제 가지가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세제를 전체를 할 때 국민저축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유인할 건가, 그다음에 노동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크게 틀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각 개별 상품…… 이것은 금융상품은 아니지만 금융상품이라고 합시다. 금융상품에 형평성을 맞춰 주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모자이크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세법이 지금 완전히 모자이크고 누더기식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왜 금융상품 간에 전부 다 똑같이 맞춰 주고 형평성 맞춰 주고 여기 해 주면 여기 해 주고 여기 해 주면 여기 해 주고, 전부 다 이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할 사람 주식 투자하도록 놔 두어야 되고 하는데 전부 다 맞춰 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이 결국은 됩니까? 지금 세제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주식투자 양도차익—금투소득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에 대해서 아주 큰 폭의 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이라는 큰 폭의 공제가……

○**류성걸 위원** 그런 부분은 주식 투자해 가지고 금융투자소득세 내고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런데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5000만 원이라는……

○**류성걸 위원** 그러면 ISA로 전부 다 모을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ISA를 통해서도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ISA를 통해서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데 ISA를 통해서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직접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불리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제가 도입이 안 됐다

면 이것을 고칠 필요가 없었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되는 바람에 여기도 비과세를 안 해주면 이것이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류성걸 위원** 누가 불리해지는데요? 누가 판단합니까? 정부가 온정적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하고 ISA 들어가서 투자를 하는 경우하고 봤을 때 밖에서 직접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지요.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왜 정부가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세제라든지, 특히 세제 같은 경우에 모든 걸 전부 다 맞춰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그래서 ISA라는 것의 도입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입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전 국민 자산형성 상품으로 도입을 했는데 이것이 불리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없애야 돼요. 일반 주식 투자 못 하도록 또는 안 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서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그것을 전부 다, 모든 것을 전부 다 해 가지고 균형 맞추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소위원장 김영진** 고용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류성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나중에 큰 틀거리에서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 다 금융투자소득 관련된 법 개정하면서 주식 양도소득 공제액이 5000만 원으로 올라간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다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지금 ISA를 정부가 육성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찬동하는 한은 거기에서 어떤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잡아 주는 정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작은 차원의 잡아 주는 취지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또 논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이 부분의

논점은 좀 좁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투자를 하는데 ISA를 우리가 앞으로 좀 죽여 나가려고 그러면 맞지만 이것은 계속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어서 이것을 국민의 자산형성을 위해서 다 밀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잡아 주는 정도인데 너무 크게 논의해서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간사님께서 해 주셨던 관련한 제도상 여러 가지 모자이크식으로 되면서 혼란스럽거나 그런 문제는, 저도 우리가 매년 세법 논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4년 주기나 5년 주기나 해서 한 번 정도는, 국회의원 주기에 맞춰서 딱 만든다든지 정부 교체기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좀 같이 살펴보고 전체 틀거리를 바꾸자 그런 취지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금융투자소득 관련한 여러 가지 법들을 통과시켜서 그에 따르는 조정들을 하고 차이를 좁혀 나가는, 없게끔 만드는 것이라서 이것은 같이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는 또 그 문제로 처리하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 6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명호 1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따른 조세특례 정비인데요.

첫 번째는 표를 보시면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로 체계가 바뀌는 정비고요.

두 번째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데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미적용인데 이 부분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행사이익 처분 단계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그런 특례제도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제도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추가적으로 5000만 원이 기본공제가 되기 때문에 두 번 하는 것은 과도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체계가 바뀌면서 용어 정비하는 게 있고 아까 전문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스톡옵션 과세 특례 하는 부분이 좀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기본적으로는 찬성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그것은 당연히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바뀌면서 주식 등에 대한 정의에 관련되는 사항을 나중에 다시 상세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그것 하고 6항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명호 15페이지입니다.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개편인데요.

개정안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5000만 원 산정 시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은 뭐냐 하면 종전의 규정은 괄호 안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87조의18제1항제1호 이것이 기본공제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단계가 금융투자소득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 단계에 기본공제가 단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바로 기본공제 조항을 해 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구 정비한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전문위원 자구 정비안에 대해 저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수정의견까지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자구 수정이기 때문에 합의 의결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잠깐만, 여기 다자간매매체결회

사 지금 몇 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금 현재 없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런데 뭐 때문에 이것이 규정이 필요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내년에 하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언제부터 다자간매매채결회사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자본시장법 개정이 13년 되면서 그때 들어온 겁니다.

○류성걸 위원 그런데 물론 그 이후에 환경이 안 돼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규정 자체가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제까지 설립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럼 104조의4가 뭐 때문에 필요했었나요,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때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ATS라는 것이 근거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ATS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식 시장하고 똑같이 제2의 주식 시장이니까 맞춰 주는 것을 만들어 봤는데 그동안 안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도 이것을 없앨까 생각 중이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내년에 하나가 시범적으로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장을 하는 겁니다.

○류성걸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영진 합의 처리, 이걸 다 했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16페이지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금융투자소득세로의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는 배당소득세의 금융투자소득세로의 전환에 따른 조문 정비고.

저희가 '6항 의결 시' 하는 자료 하나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농어촌특별세법 논의하실 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에 맞춰서 다시 한번 보자고 말씀하셔서 같이 배부해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것은 다 용어 정비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특세 개정은 그것에 맞춰서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다 정리하였습니다. 용어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라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라항까지 했습니다.

2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 적용기한 확대인데요.

지금 현재 결손금 공제가 이월공제 방식으로 15년이 원칙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한하여 직전 1개 과세연도 세액을 한도로 소급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세 건의 개정안은 유동성 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할 때 적용기한을 어디까지 확대할 거냐인데요. 지금은 1년인데 저희 정부안은 최근에 어려운 사정들을 감안해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하는 거고요.

다른 의원님 안들은 그것보다 더 넓게 하시는 건데 저희는 여러 가지 재정 영향이라든지 법적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1년 더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과거에 가장 많이 소급공제할 때 몇 년까지 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1년입니다.

○류성걸 위원 1년 했는데 처음으로 1년 더 한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올해 결손금이 많이 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일영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수용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그리고 이것은 금년도분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류성걸 위원 금년도분에 한해서만.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다음 8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 공제 요건 완화입니다.

좌측이 현행 제도인데요. 개정 부분이 차이 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현행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인데 개정안은 3년이 2년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여성들, 특히 경단녀 고용 복귀를 저희들이 더 촉진하기 위해서 세제지원하는 대상을 더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수용합니다. 동의했습니다.

다음 9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인데요.

좌측에 보시면 현행은 요건이 2개 있는데 투자·근무인원 요건 충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은 지방균형발전 차원인데요. 그런데 지금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해 주는데 실제로 효과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항을 하나 더 신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라든지 근무인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제로 이전해서 지방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측면을 강조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진 예.

○김수흥 위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차관님, 최근에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이 인터뷰한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지금 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세제지원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전혀 지방이전을 이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정부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했거든요. 제가 생각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분이가업상속이라든가 상속세를 지방에 이전하면 대폭 감면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5년 하다가 3년으로 줄인 법안

을 한번 가져왔었잖아요. 그랬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받아들였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하고 싸우고 나서 지금 텍사스로 가잖아요. 본사가 간다니까요, 본사. 그리고 삼성이 지금 텍사스로 갑니다, 삼성이.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고개를 끄덕임)

○김수흥 위원 삼성이 신규 투자하러 텍사스로 가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이것은 지나간 얘기인데, 제가 하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6년에 삼성이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투자 철회하면서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부회장이 국회에 낸 하나의 자료가 있어요. 나중에 전체회의 할 때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삼성이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신규 대형투자사업 계획이 있을 경우 새만금 조성 부지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부가 대기업 육성하는 정책을 하면서 삼성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유도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형식적인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정책도 중요하지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삼성하고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영진 정일영 위원님, 유경준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부 측은 합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일영 위원 좀 구체적인 질문인데,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조문 관련해서 시행령에 담는다고 그러는데 투자·근무인원 요건 충족 그것 뭔가 시행령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설명해 주시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태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2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정일영 위원 이거예요? 지방이전 시 10억 원 투자 + 30명 고용 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태주 예, 지금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것은 좀 약한 것 같은데.

더 촉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방에 더 많이 내려가도록?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런데 이 기준을 너무 높이면 갈 기업이 또 많이 빠져 버릴까 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하여튼 더 이상 따지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적용기한, 다른 입법례에 보면 이렇게 뭘 신설하면 적용기한을 좀 늘리는 것을 그동안 많이 하더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게 아직 일몰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아까 뭐 하나 있었는데…… 어쨌든 내년에 또 올라올 가능성이 많구면요, 또 늘리겠다고.

어쨌든 이것 놔둬도 괜찮아요, 내년 말? 걱정 돼서 묻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내년에 다시 일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정일영 위원** 또 한다고, 1년 뒤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일영 위원님이 내년에도 기재위에 있으시면서 꼭 이것 챙겨서 해 주십시오.

○**정일영 위원** 조세소위가 걱정돼서……

(웃음 소리)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의하시는 사안……

○**유경준 위원** (손을 들)

○**류성걸 위원** 잠깐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김영진** 유경준 위원님, 류성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위원** 저는 반대 생각이 드는데, 투자·근무인원 요건을 하면 투자는 금전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근무인원 요건을 포함시켜 놓으면 본사 이전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질문의 답이 30명 추가 고용입니까, 아니면 본사에서 30명 이상을 이전하라는 소리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전입니다, 이전. 추가 고용이 아니고.

○**유경준 위원** 그러니까 본사 인원을 이전해 간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이것 제가 약간 부연설명드리면 감사원에서 이것 고치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서울에 있는 대부업체가 지방으로 가면서, 원래 대부업체라는 게 그렇게 큰 인원이 필요하지 않

기 때문에 사무실도 그냥 임대해서 쓰고 직원 3명 내려가 가지고 법인세를 3년 동안 18억 7000만 원 감면받은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방이전은 좋은데 너무 고용을, 고용이라기보다 하여튼 지방이전 효과가 별로 없는 애들이 가서 세금만 빼먹는다……

○**유경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전을 하되 본사 인원을 최소한 30명 이상은 이전하라는 최소 조건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유경준 위원** 이것 업종에 따라서 상당한 편차가 있을 텐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것은 저희가 지금 예시로 들어 놓은 거고 조금 더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류성걸 위원** 투자 또 근무인원 요건 이것을 시행령이 밑에 나온다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포괄위임 아닌가요? 아무런 한도도 없고 저것도 없이 그냥 투자 및 근무인원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면 법은 완전히 썩네가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취지를 저희가 좀 담겠습니다, 위원님.

○**류성걸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수식어를 좀 해서……

○**류성걸 위원** 해서 완전 포괄위임이 안 되도록, 법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런 취지가 담기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하고, 시행령 관련해서도 예시를 좀 해 주세요.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구상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내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지.

9항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항……

○**배준영 위원** 제가 질문 하나……

○**소위원장 김영진** 배준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배준영 위원** 이게 결이 다른 질문이긴 한데, 수도권이 됩니까? 수도권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정비계획법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배준영 위원** 그러면 인구소멸지역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가평군·연천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옹진군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비계획법에 포함돼 있으니 그 법이 규정하고 있겠지만……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담당 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그다음에 자연보전권역이 있거든요. 그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 대신에 이전 대상인 본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본사가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수도권은 어느 정도 자연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본사가 지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조건이.

○**배준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소위원장 김영진** 다 하셨나요, 위원님?

○**배준영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0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현재 동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배분 관련해서 일반동업자·수동적 동업자 10년을 1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것은 작년에 세법 개정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 부분에 맞추는 겁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영진** 예, 이의 없습니다.

다음 11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가 있는데요. 표 좌측에 보면 대상이 있고 특례가 있는데 대상이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인데요, 종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2017년도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특례를 받는 정비사업조합 범위에 아까 말한 빈집 관련된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도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영진** 예, 이의 없으므로 처리하겠습니다.

12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명호**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인데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법 개정할 때는 적용기한이 있었는데 13년 세법 개정 때 적용기한을 폐지했고 작년에 세법 개정 논의에서 이것 폐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고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실제 평가를 해 보고 효과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났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 개정안에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로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일몰 설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평가를 해서 타당성이거나 이런 것을 봐 가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잠깐 하나만 확인할까요?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영 위원** 전문위원 설명에서 효과가 없다고 그랬나요?

○**전문위원 정명호** 예.

○**정일영 위원** 이 과세특례로 인해서 운동경기부 설치를 하는 그런 효과는 없나요?

○**전문위원 정명호** 효과성이 크지 않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 측에서.

○**정일영 위원** 그러면 이것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2024년까지는 일단 살려 두겠다 그것인가요, 정부 측에서? 정부 측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효과 없으면 없애 버리면 되지 굳이 뭘 또 3년씩이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게 평가를 할 때 비용 대비 효과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당장 없애기보다는……

지금 운동경기부 이게 프로 리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프로 종목이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일영 위원** 알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래서 이것을 특례를 안 뒀을 때 예를 들자면 육상이라든가 핸드볼 이런 것들이 혹시 위축될까 봐……

○**정일영 위원** 다 없어지거나 줄어들까 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래서 일단 한 번 더 두고……

○**정일영 위원** 어쨌든 효과 분석은 현재 정확히 안 돼 있는 거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적용기한을 일단 3년 두고 한 번 더 살펴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3년, 그 의미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말만 있고, 어떤 자료에 의해 가지고 해 보니까 효과가 없더라 이런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없더라’ 이렇게 말만 하면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해 주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담당 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조세특례제도에 대해서는 심층평가하는 제도가 조특법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KDI가 수행하는 금년도 심층평가 결과입니다.

○**박형수 위원** 그것 KDI가 했다고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예, KDI가 금년에 수행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그 수행한 결과를 뭘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요약해서 주든지 하고 이러이러해서 이걸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말만 덜렁 하면 어떻게 해?

○**김수홍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진** 김수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홍 위원** 아까 실장님은 성과평가가 비용편익분석 이런 식에 매달려 있어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비인기종목이라든지 장애인 운동부를 육성하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감안한 것 같은데 저는 조특법의 특별한 대세에 영향이 없다면 이렇게 한번 신설해서 기업들한테…… 우리나라가 또 국제사회에서 체육이 얼마나 활성화돼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넣어 주는 것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사회자 의견도 드리면요, 실

제로 이게 처음으로 일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소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취지에 나왔듯이 기업 내 운동부 설치 관련해서는 실제로 인기가 있는 야구, 축구 이런 것 이야 상관 없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비인기종목은 그래도 이런 제도에 의해서 기업이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특히 IMF나 2008년과 같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시나 경영에 위기가 왔을 때 다 폐쇄하면서 사실은 비인기종목 선수들이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초·중·고 체육이 붕괴되는 연쇄효과가 많아요.

그래서 그 효과 분석 KDI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일몰을 정해서…… 제가 보기에는 정하면 이후에 효과 분석을 해서 일몰을 계속 연장할 것 같아요, 느낌에. 현재 상황이면 2년씩 2년씩 연장해 가면서 효과 분석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이것을 완전히 일몰한다고 해 버리면 기업 측에서 신설 창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저어하거나 안 하거나 이럴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그널이잖아요, 아주 적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고 다음 회의 때 의결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실제 비인기종목에 대해서는 선수들도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이런 운동부를 운영함으로써 선수들이 취업이라면 취업 또 좋아하는 운동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역량도 발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적용기한을 신설해서 하는 것은 비인기종목을 오히려 더 위축되게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지금 신설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 자료 한번 보고……

박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아마 KDI에서 분석한 자료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세제혜택이 있음으로 해서 운동부를 창단하는 그런 효과는 없다 또는 적다 이렇게 분석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렇지요.

○**박형수 위원** 그렇다면 다른 방법에서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접근해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사정하에서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완전히 다른 시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KDI 자료를 보고 이렇게 일몰기한을 적용할지 안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세제실장님이나 담당 국장님, 그 자료나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제가 지금 심층평가 결과 요약한 것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제도 효과에 관해서는 제도는 타당하다, 타당성은 있다. 그런데 효과성 측면에서 조세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행태 변화 요소는 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금 박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확한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건데 KDI가 뭘 어떻게 분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재부 그 자료 줘 보시고요.

KDI에서 이것 평가하는 것하고 체육 스포츠 이쪽의 무슨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은 다를 것 같아요. KDI에서는 경제성만 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종합적으로 본 겁니다.

○정일영 위원 자료를 보자고요.

그 자료만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효과성이 크지 않으니 사실 적용기한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연구 다 했잖아. 그리고 2021년 세법 개정할 때 이 제도가 적용기한이 있다가 폐지되었다가 다시 지금 또 넣은 것 아니에요, 그동안 연구도 했었고? 그런데 정부에서 KDI라든지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여 줘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앞뒤가 약간 안 맞아요.

또 하나는 정말 운동경기부 설치·운영하는 것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공기업 같은 공기업에 비인기종목들 설치하도록 문화관광체육부인가 거기에서 독려하고 문서 보내고 그러 더만, 그것 기재부하고 같이 해 가지고 무슨 평가도 하고 그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비인기종목 스포츠를 살리도록 하는 것을 추진해야지.

그것 종합적으로 자료 한번 줘 봐요. 그게 더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과세특례 효과

가 없다면 폐지해야 되고 과세특례가 그래도 효과가 좀 있다고 그러면 이런 적용기한 필요 없이 지금처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깊이 있게 분석한 자료를 줘 보세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받고 한 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13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인데요.

현행법 제121조의25에서 이런 특례가 있는데 그 개정안 내용은 2022년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2023~2028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한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인데요. 이 조항은 수협중앙회가 2023년까지 남은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기로 결의한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수협이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23년에 일시에 상환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다만 일시에 상환하면 균등상환 때보다 약간 세제 측면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맞춰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정일영 위원 이것 금액이 얼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9000억 원 정도 상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토털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균등으로다가 6년 동안 금액을 나눠서 상환한 것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아니, 그렇게……

○정일영 위원 그러면 세금혜택을 얼마나 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세금 혜택은 300억 정도입니다.

○정일영 위원 300억? 꽤 되네.

○소위원장 김영진 많이 해 주네.

○정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의가 없으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4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인데요.

현재 제127조에 투자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조항이 있는데 좌측에 대상에 보시면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투자한 금액이고, 우측에 추가 신설되는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금액인데요. 이 부분은 둘을 같이 볼 수 있으나 성격이 다르나 하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정부출연금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를 허용받은 공사부담금에 대하여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공사부담금에 대하여도 국고보조금과 같이 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지원을 배제하자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정책 달성을 위해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자체가 국가로부터의 혜택이나 공사부담금은 수익자 부담금으로 실질적 측면에서 요금과 동일하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은 지원금이 아닌 회사 수익에서 지출한 일반적인 투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크게 보면 비파세·감면 축소·정비 차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중복지원이라고 저희들은 봐서 이 부분은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여기에 지금 공기업들도 해당이 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지역난방공사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김주영 위원 지역난방공사는 지금 연간 운영수익이 어떻게 좀 나나요, 어떤가요?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왜냐하면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실 정부 요금정책으로 인해서 적자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세금으로 이렇게까지 또 걷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이것 취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아까 지역난방공사 같은 데가 새로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난방 파이프를 넣어 주는데 이것을 그 아파

트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아서 파이프를 깔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로부터 돈을 받아서 대신 깔아 줬는데 이것을 투자세액공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인데 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김주영 위원 그런데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정부의 요금정책으로 인해서 적자가 나는 공기업에도 그렇게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공기업의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거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 요금정책하고 이것하고는 별도로 봐야……

○김주영 위원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 세금하고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20년 같은 경우에 지역난방공사 영업이익이 1329억이고 당기순이익이 279억 흑자가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주영 위원 지금 2020년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누적은 없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소위원장 김영진 정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지역난방공사 예를 들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아파트라든지 신도시 건설하는데 난방 파이프 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난방공사나 소규모 민간 열에너지주식회사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데서 큰 파이프 까는 데 돈이 좀 부족하니까 그 아파트 분양할 때나 들어가는 그분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깔아 주는 그 금액을 투자로 안 본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안 보겠대입니다. 지금은 규정이 없어 가지고 투자세액공제를 받아 가고 있는데 그것은 성질상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남의 돈 받아서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일영 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 경우에 보면 그게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한테, 주민이 될 분들, 분양하고 할 때 돈을 받아 가지고 대신 해 주는 건데 투자의 성격은 아니지만 이것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시키면 그만큼 주민들이 가져가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원래 투자세액공

제의 취지 자체가……

○정일영 위원 내 얘기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1000억을 지금 내고 있는데 이런 세액 공제를 받아서, 이게 배제되면 주민들이 1200억을 부담한다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물론 주민들한테 조금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1000억이 1500억이 되고 1300억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일영 위원 하여튼 연구가 좀 필요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박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만약에 그 업체가 주민들한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적립해 놓은 돈으로 그것으로 시설하고 하면 공제를 받습니까?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예, 그것은 공제를 받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공제를 받는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받는 돈은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될 부분이지, 어차피 그것도 투자 아닌가요? 공제받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 논리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공제를 받고 저기서 요금 받아 가지고 내가 하는 부분은…… 내가 요금을 받는 게 공짜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가로 받는 건데 나중에 들어온 수익을 가지고 지급을 하면 그것은 공제가 안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갖고 하면 되고, 이것 논리가 이상한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는 투자의 결정도 수익자가 하고 투자의 비용 부담도 수익자가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의 결정이 그 기업에서 하는 거고요, 투자 비용 부담도 기업의 자체 자금으로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게 돈이 섞여 가지고 어느 돈이 어느 돈이라고 구분이 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공사부담금을 그 기업이 받으면 저희가 일단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1000억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한테 돈이 있으면 그것을 투자하면 공제받고, 받아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도 어디서 차입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하면 공제를 받는 거고, 차입해서 투자를 해서 공제받고 들어오는 부담금 갖고 그 차입금을 상환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공제받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그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 기업의 회계 처리는……

○박형수 위원 그러면 회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공제받고 공제 안 받고는 이상한 거지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아닙니다. 회계 처리는, 그 기업 내부에서 돈이라는 것은 이미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기계 장치를 사거나 할 때 그 기계 장치에 대한 투자의 결정이나 투자의 요인, 원인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자체 부담으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것은 남이 해달라고 해서 그 기업이 남의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투자세액공제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박형수 위원 그렇게 되면 이 규정을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얘기하듯이 자기가 투자 결정을 해 갖고 이렇게 한 돈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을 규정해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공사부담금이라는 것만으로 특징을 하면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회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공제받고 공제받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그래서 지금도 대상에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투자한 금액 그리고 용자를 받아서 투자한 금액 그리고 이번에는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서 투자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그다음에 정일영 위원님.

○류성걸 위원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투자 공사부담금이라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법인의 익금으로 잡습니까?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안 잡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안 잡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런데 익금으로 안 잡으면 여기에 이렇게 규정에 넣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돈은 기업체에…… 지금 이것이 기업이지요, 그

렇지요? 기업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익금으로 안 잡았으면 그것은 기업의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아까 ‘돈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익금으로 잡을 수는 없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돈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엄격하게 내 돈이 아닌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공사부담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지역난방공사 이야기했을 때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내 생각으로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금액은 마치 이것을 익금 처리하는 데 투자세액공제 안 해 준다 이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익금 처리는 하고 동시에 손금 처리를 합니다.

○류성걸 위원 어떻게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익금 처리를 하고 동시에 손금 처리를 해서 과세를 안 합니다.

○류성걸 위원 그 익금 처리 안 한다면서요, 조금 전에?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아니, 그러니까 익금하고 충당금으로 손금 처리하니까 사실상 익금 처리를 안 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류성걸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국장님, 회계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회계 잡히면 기업회계원칙에 의하고 또 세무기본원칙은 잡히면 그것은 기업의 돈이에요, 바로 손금 처리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은 회계에 관련되는 사항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익금으로 잡히면 당연히 그것이 어떤 형태건 간에, 익금으로 잡히면 당연히 그것은 잡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섞여 가지고 어떻게 하듯이 투자를 하면 당연히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아까 또 이런 말씀도 했어요. 해당 사업을 할 때에 그 기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의 이름으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이야기하고 다른 겁니다.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것 법률행위예요. 사실상 그냥 아파트 주민하고 서로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익금이 딱 잡히면 그것은 법인의 전체 총매출액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것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참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회계의 명확함을 기하면 당연히 이것은

투자예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익금을 그 회사에서 잡는 것은 아니고요. 법인세법상 익금을……

○류성걸 위원 아니, 잠깐만요. 또 이런데요.

국장님, 아까 처음에는 익금 잡느냐 하니까 안 잡는다 했다가 다시 잡느냐 하니까 익금을 잡는 동시에 손금 처리한다, 익금 잡는 동시에 손금 처리하더라도 익금 들어오는 순간, 잡히는 순간 이 돈은 그 아파트 주민하고 관계없이 법인의 익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그런데 그 익금인데 저희 법인세법상은 그 익금을 과세이연을 해 줍니다, 손금산입을 동시에 해서요. 그래서 과세이연……

○류성걸 위원 그다음의 처리는 그다음에 처리하더라도, 일단 익금이 되면 그 돈은 하루가 아니라 동시에 처리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손금 처리할 때는 그 손금은 어떻게 하겠어요?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금액이라 하면 익금 잡히는 동시에 손금 처리하니까 그 손금 처리했을 때 그 금액만큼은 투자금액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해 줘야지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그런데 그것은 그 동일한 돈에 대해서 과세이연도 받고 투자세액공제도 받고, 이중과세……

○류성걸 위원 그러면 과세이연을 안 하든지 2개 중에 1개를 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투자세액공제에서 중복이기 때문에 배제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의 중복이라면 해야 되지만 이 자체를 투자가 아니라고 해서, 이제까지 설명했을 때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계산으로 자기가 돈 내서 다만 갈아 주는 공사만 법인이 했을 때에 문제로 인식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익금 잡는 순간 이 공사대금은 이 법인의 책임하에서 하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 익금과 동시에 손금 처리했으면 그 손금 처리한 것은 투자로 잡아서 투자세액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세액공제하고 또 저쪽의 납부 유예라든지 또는 분할 부분 그런 중복이라면 다

른 차원의 이야기고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 논의는 정리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제가 간단하게.

정부 측 설명이 다소 좀 혼란스럽고 헷갈리게 하는데요. 이 조문을 기본적으로 정부안으로 이렇게 내놓은 배경이 뭐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무슨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갑자기 정리가 안 된 조문을 왜 내놓아요? 그리고 이런 식의 부담금으로 투자되는 금액이 규모가 얼마나 되고 또 투자세액공제를 현재 어느 정도는 받고 있어요?

○소위원장 김영진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방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지금 정부 국고보조금도 똑같은, 그러니까 익금 받아서 손금 산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세이연도 받고 투자세액……

○정일영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왜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왜 갑자기 정부 입법으로 내놓은 건지 우선 그것부터 설명하세요. 하나하나 물을게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지금은 이중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일영 위원 정부에서 찾아낸 거예요, 기재부에서? 현장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한 겁니다.

○정일영 위원 누가?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국세청에서 건의를 한 겁니다.

○정일영 위원 그 127조 1항 중복지원 배제라는 조문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개정안에 갑자기 중복지원 배제라는 게 없어 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지금 설명을 잘하셔야 돼.

그래서 금액이 얼마예요? 이게 공사부담금으로……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그래서 20년에 공사부담금 징수 실적이 약 9100억입니다.

○정일영 위원 얼마?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9100억입니다. 그리고 세수효과는 저희가 추정하기 좀 어렵지만 한 2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정일영 위원 토털 20억 원?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예.

○정일영 위원 중복지원 배제로 인해서 세금 못 받은 게?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20억 원 받기 위해서 지금 이거 집어넣은 거구먼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어쨌든 그 논리를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투자냐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법인에 자기 돈으로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아니면 주민들의 다른 주머니가 있는 거냐 그런 걸 명쾌하게 정리해서 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하시면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성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김영진 이 자료 갖고 한 번 더 논의……

○류성걸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고광호 국장님 말씀하셨던 익금 처리와 동시에 손금 처리하면서 다음에 세제지원해 주는 게 뭐라고요? 투자세액공제 말고……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국고보조금도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분할 아니면 납부유예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충당금으로……

○류성걸 위원 충당금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예.

○류성걸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중복이예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리고 설명을…… 당연히 이게 들어오면 익금 처리하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제

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소위원장 김영진 김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 여기서 ‘국가 등’은 어디까지 범위가 되는지하고, 여기 대상기관이 얼마나 됩니까? 어디어디……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어디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공사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주영 위원 대상에 대해서 여기 신설을 하는데 결국은 여기 밑에 신설조항이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위에 대상을 보면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그다음에 ‘국가 등으로부터 용자를 받아’ 이렇게 돼 있는데 ‘등’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게 결국에 보조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자체가 있을 수 있고요.

○김주영 위원 그리고 지금 배제하는 법 적용 대상기관들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제가 설명드리면요 ‘국가 등’은 지자체가 아마 포함이 될 것으로 봐지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재정법, 전기사업법 이런 법을 근거로 지급하는 보조금이고요.

○김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공공기관이 될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그것은 국고보조금이고요. 공사부담금은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전기, 가스, 수도 등 6개 사업체입니다.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체입니다.

○김주영 위원 그러니까요. 전기,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주로 한전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이런 데가 해당이 될 것으로 봐지고요.

○김주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세제상 세법은 수익이 있는 데는 다 세금을 과세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의 어떤 유책사유로 인해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조항들을 신설해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제기를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박형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박형수 위원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 알겠어요.

국가로부터 받거나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받거나 해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그게 무슨 투자냐, 투자세액공제를 해 주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공사부담금의 법적 성격부터 이게 규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을…… 아까 기업의 돈으로 속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 주민들한테는 급부를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 돈을 받은 것이라면 어쨌든 빌려 오나 거기서 받으나 투자가 되는 것이고, 공사부담금이 그 회사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독자적인 무슨 그런 법적 성격을 가진다면 그것은 달리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하고 한번 논의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공사부담금의 성격,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공사부담금이라고 두루뭉술하게 규정을 해 버리니까 그게 과연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지금 헛갈리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금 공사부담금의 근거법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요, 그래서 이것 개념 규정과 내용 정리해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현재 주택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근저당 방식으로 시행했는데 금년 6월부터 담보신탁 방식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근저당 방식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데 담보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국주택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서 형평에 맞추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신탁 방식 주택연금도 근저당 방식과 동일하게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맞춰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처리하겠습니다.

16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관련인데 오전에 인지세하고 관세 논의하셨고요. 그와 동일 선상에서 이 부분은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이 30쪽 제일 밑에 ‘다만’의 의미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한 거지요? 무슨 뜻입니까? 전문위원님 한번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정명호 기본적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면세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준비 관련한 겁니다.

○박형수 위원 ‘다만’이 없는데 뭐……

○전문위원 정명호 원래 초안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의미가 크지 않아서 지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혼자 하고 계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러세요, 감사님.

○전문위원 정명호 저희가 보내드리고 이 내용이 큰 의미가 없어서 지운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공부 조금만 하세요, 감사님.

○류성걸 위원 아니, 골치 아프니까 빼 버린 모양이네.

○소위원장 김영진 16항 이의 없으므로 처리하겠습니다.

17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7항은 가·나·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고요. 두 번째는 2020년 12월 주세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고요. 다번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 누락된 조문 추가하고 조문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전체적으로 조문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영진 특별한 이의 없으므로 처리하겠습니다.

공사부담금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는데요. 5권 잘 마무리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류성걸 위원 정회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려고요.

○소위원장 김영진 예, 말씀해 주시지요.

○류성걸 위원 지금 조세소위에 어떤 것을 외부에서 공급해 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내년도 초과세수를 지금 조세소위에서 논의해서 내년도로 넘기는, 그러니까 국세징수법 제13조와 제14조 규정에 따라서 ‘납부기간 연장 등’ 이렇게 해서 넘기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지금 속보로 뜨는 것 중에서 오늘 홍남기 장관이 초과세수 19조 원이 발생하는데 민생대책으로 12.7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활용하겠다 하면서 이런 자료를 또 이야기를 해요. ‘금년 초과세수 활용 방안’ 이렇게 하면서 ‘우선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금번 대책 재원으로 5.3조 원을 활용하겠다’.

첫 번째 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도 초과세수를 추경도 없이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것은, 방법은 있어요. 내가 좀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금번 대책 재원으로 5.3조 원을 활용하겠다, 방법은 뭐냐 하면…… 기금이 전체가 몇 개지요? 68개, 그렇지요? 68개 기금 중에서 20%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하는 그 방법을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류성걸 위원 맞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류성걸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초과세수를 추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까 여러 이야기를 했듯이 돈에 꼬리표가 안 달렸으니까 돈 중에 미리 들어온 것은 국고에 넣어 놓고 새로 들어오는 초과세수 중에 쓰겠다는 그런 아주 조삼모사 형태의 그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이따가 정회 끝나고 난 뒤에 새로 시작할 때 해 주시고요.

첫 번째 제가 했던 초과세수 규모 관련되는 것 중에서 국세징수법 제13조와 14조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예년의 예에 따라서 하는 것하고 또 지난 번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받았지요, 그렇지요? 그때 했을 때하고 그 관계를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감사님이 큰 과제를 주셨는데 심플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심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신청 안건 및 일몰 연장 등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1차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외 법률안에 대하여 국제기본법상 법안 견제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7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류성걸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정일영 위원님, 류성걸 위원님 두 분 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정일영 위원 예, 이제 7권하고 8권까지 있다고 그랬지요?

○전문위원 정명호 예.

○정일영 위원 해야 될 게 좀 많은데, 제가 조세소위의 논의해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바라는 것은 조세소위니까 심사자료에 근거해서 딱 관련되는 것만 한정해서 우리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 가지 세수 문제나 손실보상금이나 예산집행, 추경 등등 궁금한 것이 많지만 그것을 다 여기서 질의 답변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우리 소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돼서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다 검토하고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인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예, 앞으로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 저도 회의 진행 관련해서, 오늘

하고 다음 다가오는 금요일 또 일요일에 소소위를 하면서, 예산부수법안 성격의 법안은 이미 다 됐기 때문에 또 1차 한 번 했기 때문에 다음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정회하기 직전에 말씀을 드렸고 또 행정부로 하여금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지금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은 전체회의에서 같이 한번, 바로 화요일 월요일 다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지요,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시는 거니까.

○류성걸 위원 잠깐, 저것에 대해서…… 일단 제가 아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하신 관련되는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난 회의 말미에 제가 이 회의 시작하면서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이미 이야기해 왔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행정부의 말씀을 한번 듣고 관련된 사항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차관님, 현재 파악된 정도 해서, 지금 바로 긴급하게 요청을 하셨는데 여러 사항들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류성걸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들이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 하면서 보도자료랑 그 다음에 브리핑 통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부가 기금 변경 등 자체 행정조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5.3조 원 그 부분을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민생안정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더 구체적인 사안들은……

○류성걸 위원 아까 두 가지였지요. 그것은 두 번째였고요, 첫 번째 초과세수 관련된 사항.

○소위원장 김영진 그것은 추가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이후에 보고를 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좀 확인을……

○류성걸 위원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나요?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1개는 초과세수 금년도 활용 방안에 대한, 그것은 추경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것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건 좋습니다.

그리고 초과세수 19조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

내년도에 납부 유예 그러니까 납부기간 연장 등 금액 관련된 사항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요 국세징수법 13조에 따라서 지금 국세청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도 국세청으로부터 수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류성걸 위원** 그러면 저한테 나중에……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요, 전체회의 때 같이 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저한테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소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 7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국세기본법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의원안인데요. 국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일치하자는 얘기인데요. 좌측에 보시면 5년인데 개정안은 5억 원 이상은 10년, 5억 원 이하는 5년인데요.

3페이지 보시면 각종 채권 중에 국세징수권, 국세환급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세징수권 이렇게 나뉜 것은 2013년도 1월 국세기본법 개정할 때 고액 채납 국세에 대해 국세징수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된 내용이고요.

검토의견입니다.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국세징수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관세 관련해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소멸시효의 취지를 고려해서 국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 국가기관들은 30일 내에 환급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성도 크지 않다 이런 게 정부 입장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실제 어쨌거나 법 적용이라든지 다른 채권 소멸시효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형평성을 봤을 때는 납세자 권리를 우선에 두고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별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5억 원 이상에 대해서 징수권 소멸시효 10년 특례를 둔 그 취지는 통상 고액 채납자 같은 경우들은 은닉하고 잘 안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액 채납자에 대해서 징수권 소멸시효를 좀 길게 두려는 것이고요.

○**김주영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환급하는 부분들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환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도 쓰여 있습니다만 최근 5년 동안 5억 원 이상 환급금 소멸시효 완성으로 미지급된 사례도 전혀 없고요. 국가는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줍니다. 그런데 채납자들은 숨기고 안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성격이 다른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수할 때와 돌려주는 시한도 동일하게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게 개정안 취지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취지는 저희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김주영 위원** 그전에는 그런 사례들이 없었나요, 5년 이내에 없었다고 하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전에는, 저희가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정확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없었을 겁니다.

○**김주영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하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소위원장 김영진** 자료 제출하고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한마디만……

○**소위원장 김영진** 예.

○**박형수 위원** 5억 원 이상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고 그 외에는 5년으로 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어 보여요. 전체적으로 국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늘리자, 10년으로 또는 7년으로 늘리자 이것은 국민 권리 보

호 차원에서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달리 소멸시효를 정하는 것은 조금 입법체계상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김주영 위원** 환수시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내용.

○**박형수 위원** 환수가 아니라 징수시효는 금액이 고액일 경우에 당연히 그렇게 하고, 별도 고액일 경우에는 더 벌을 많이 주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늘어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환급청구권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래요.

○**소위원장 김영진** 관련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납세자 신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장기간 제한 관련되는 정일영 의원안입니다.

현재 세무조사 기간 관련해서 1항 6호에 보시면 납세자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연기 신청을 할 때 최대 기한이 20일입니다. 20일인데 개정안 보시면 납세자 신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연장기간 제한을 폐지하자는 개정안이고요.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20일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유에 세무조사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영세사업자 등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납세자 신청에 따른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 폐지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위원님이 주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요. 실제 작동되는 원리를 보면 납세자한테 이렇게 많은 기간을 주게 되면 오히려 세무공무원과의 관계 속에서는 약간 불리할 수도 있고 이래서, 지금도 보면 기본 기간이 20일이지만 납세자가 요청을 하면 연장기간이 20일이 있고 또 연장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면 취지가 더 충족되지 않을까, 그리고 20일로 해 놓은 것도 기본적으로 세무공무원은 20일 내에 뭔가 다 마쳐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납세자가 내가 좀 더 해야겠다 그러면 연장을 신청해서 20일

단위로 해서, 취지는 현행 제도로 다 같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제가 발의한 법안인데요.

사실 처음에 언뜻 보면 이게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다라는 게 세무조사라는 게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간을 연장한다라는 게 사실 부담을 더 준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게 대기업, 큰 데는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세무조사 나와서, 20일이라고 하지만 준비하고 어찌고저찌고하면 한 15일 정도 세무조사를 받는데 영세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대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 전달이라든지 자료 준비라든지 전문가들과 같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해 가지고 이분들이 세무조사를 더 받겠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거지 신청, 그럴 때 연장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법안 기본 취지예요.

지금 정부 측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장·재연장 가능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은 납세자가 본인이 원할 때 신청하는 경우니까 다른 부담은 주는 것은 아니고, 연장·연장이 있으니까 이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꾸로 생각하면 연장·연장이 있으니까 납세자가 필요하다고 봐서 본인이 신청하면 대개 그냥 받아 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연장·연장·연장 해 가지고 두 번 받아 주고 그냥 끝낼 게 아니라.

이게 세무 당국에서 연장하는 게 아니고 납세자가 자기가 볼 때 세무조사하는데 영 대응이 안됐다, 내가 자료가 부족하다, 더 자료를 내야 되겠다 이런 것 등등 해서 필요하면 연장 신청을 하면 받아 주면 되지요. 영세 사업자·자영업자들 편의를 위해서 꼭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부 측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일단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라는 게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정 이렇게 늘리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하고요.

두 번째는 일선 현장의, 아까 차관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세무조사라는 게 아무래도 세법 지식이

라든가 관련 절차라든가 이런 게 세무공무원이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지식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측면에 있는데 자기가 세무조사를 더 하고 싶을 때 이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사실은 자기가 더 조사를 하고 싶은데 자영업자한테 조금 더 ‘니가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너한테 소명 기회를 더 줄 테니까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악용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정일영 위원 실장님, 답변이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지금 다 문제가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무조사가 물론 부담이 될 수 있는, 세무조사 받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세제실장은 세무조사를 아까 이상하게 표현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세무조사도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지 그게 뭐 이상한 그런 건 아니에요. 답변이 약간 이상했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납세자 신청에 따라서 연장이 되는 건데 그것이 악용된다 그런 것까지 계산을…… 악용되는 게 과연 몇 프로나 되겠어요? 의심해 가지고 세무공무원이 자기가 더 억지로 뭘 파기 위해서 납세자한테 ‘연장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연장이 되어 가지고 납세자를 더 괴롭힌다 이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악용 가능성이……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제도를 만들 때 악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아무것도 못 하지요. 100% 중에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이…… 몰라,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 추정으로 1%, 2%, 5% 된다고 보지만 95%, 90%는 그런 좋은 제도를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 측에서 더 납득할 만한 시원한 설명을 해주면 되겠는데 저는 두 가지 다 납득이 안 가요. 그렇잖아요? 납세자가, 영세자영업자가 갑자기 세무조사 나왔어. 겁나. 그리고 자료도 준비 안 돼 있어, 대응도 안 돼. 변호사를 동원할 수 있는데…… 지금 변호사든 누구든, 회계사든 좀 해야 되겠어. 그런데 구하기도 어려워. 영세자영업자 잘 몰라. 그래서 버벅대다가 시간이 지났어. 그래서 본인이 연장하고 쪽 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그것 받아 주면 되지, 그것을 안 받아 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런데 그 앞 조문에 보시면, 세무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는 게 있는 그 법 취지를 보게 되면 이게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지만 어쨌든……

○정일영 위원 필요한 최소한도라는 것은 정부에서, 국세청에서 판단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지. 납세자라니까, 기준은 지금 납세자, 국민. 일반 국민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연장해서 좀 더 잘 대응해야 되겠다, 가 버리기 전에.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달라는 건데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래서 그 연장을 20일 기간 내에서 하고 또 재연장을 할 수 있는데……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연장·연장·연장했는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렇게 무한정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정일영 위원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무제한은? 두 번 연장은 가능한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아니요, 재연장하고 또 재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한정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정일영 위원 무한정 한다고 그래서 어느 납세자가 세무조사 받는 게 좋아서 1년 동안 받겠다고 하겠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이게 제한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해서……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 그런데 세무조사는 누가 판단을 해서 시작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국세청장이 판단을 해서 시작합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세무조사는 국세 당국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보면 세무조사 전체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세청장, 세무서장이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납세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는 할 이야기가 많은데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가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그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세무조사 당초의 취지 목적을 위해서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생각 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하는 경우라도 당초에 했던 그 기간, 전체 기

간 속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간 자체를 없애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최초에 세무조사를 할 때 며칠 이렇게 정하고 가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통상 20일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나와 있듯이 20일로 하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그 큰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자는 한번 보시고요.

○박형수 위원 몇 번까지 연장할 수 있지요? 그 횟수는 제한이 없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재연장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20일 단위로 해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계속 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박형수 위원 그러면 큰 불편은 없겠는데……이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수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권익에 침익적 행위를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침해당하는, 국민은 다 같은 국민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혐의를 받고 지금 조세포탈이든지 등등의 또는 죄를 지었다는 혐의를 받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편익에 따라서 무한정 연장해 주는 것은, 이미 수사나 조사의 주체가 국세청이고 수사기관인 바에는 그것을 무한정 연장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대신에 지금처럼 제한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연장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몇 번까지는 연장을 해 줄 수 있다, 지나친 기간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2회나 3회 정도까지 기한을 정해서 그때까지는 특별한 사유만 없으면 허가를 해 준다든지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수홍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소위원장 김영진 김수홍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수홍 위원 지금 세무조사 예고제가 미리 나갑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사전통지를 합니

다, 15일 전에.

○김수홍 위원 그런데 정일영 의원님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갑자기 와서 조사를 받아 본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조력을 받을 사람……

지금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세무사……

○김수홍 위원 국선세무사 제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국선세무대리인이 있습니다.

○김수홍 위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하니까 정부가 검토해서 추후에 한번 논의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과세정보 공개사유 확대인데요. 이 부분은 11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인데 하단의 주12 보시면 현행 국세기본법 81조의13 제도인데요. 기본적으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 1호부터 9호까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다음 양향자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하도록 하고요.

양경숙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자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그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향자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자의 체납 사실 등 과세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이 있고요. 개정안에서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소 불명확한 기준으로 볼 수 있지만 개정안이 이를 감안하여 다른 예외 사유와 달리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양경숙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세정보의 활용성과 관리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금년 6월부터 제공 중인 사업자등록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개정안의 취지를 일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먼저 양향자 의원안은 ‘공공의 이익’ 이런 굉장히 불확정 개념에 따른 과세정보 공개 이 부분이 있어서 좀 신중히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다른 법률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사유로 비밀 정보를 외부 제공하는 사례는 없다 이런 점도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동의입니다.

그다음에 양경숙 의원안 같은 경우도 사용 목적이 ‘사업자의 관리 감독’ 이렇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말씀 주신 대로 금년 6월 말부터 사업자등록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이 시작돼서 법안 취지를 이미 달성한 점 이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양경숙 의원안도 저희는 부동의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양향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장에 서나 이렇게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세정보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냈던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그래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많은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었고. 그래서 그런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 법안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국세정보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담당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이게 국세

청 내부에 설치된 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국세청 내부 위원으로만 설치돼 있으면 공공의 이익을 판단할 때 당연히 국세청 의견만 반영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 위원이라든지 이렇게 중립적으로 구성돼 있다면 모를까……

○전문위원 정명호 현재 위원은 20명이구요. 그러니까 위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냐 하면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8명하고요,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하여튼 그렇게 구성돼 있으면 형식상으로는 중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는데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국세청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할 거라는 것은 뻔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 이렇게 개념 자체가 모호해서 이것을 하고 국세정보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면 사실상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법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이것을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차관님, 제가 반대하는 취지가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국정감사 할 때 여러 번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과세정보나 이것을 계속 제출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공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하고 고쳐서 이 조항은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사자료도 일정 부분은 공개를 하는데 과세자료라고 해서 무조건 다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국정감사나 국가에 무슨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감시하고 또 감독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 임무 중에 하나인데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후 논의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서 이 법을 개정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양향자 위원 강하게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발언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조항, 제81조의13에 보시면 지금 박형수 위원님이 상임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국감법에 따라서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박형수 위원**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금 읽어 봤듯이 그것은 국정조사예요. 국정조사에서만 그게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국정감사에 그것을 원용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국정조사일 경우에만 비공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정감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지난 국감 또 그 지난 국감 포함해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또 확인해서 제도라든지 아니면 사실 관련되는 고쳐야 될 그런 사항들도 있고 또 제재를 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도 국회에서 의결해서 확정된 법률입니다. 그런데 정작 관련된 그 법률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이 전혀 관련되는 사항을 알지도 못하고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향자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소위에서 동의를 해 주시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제81조의13(비밀 유지) 관련되는 이 사항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논의했던 사항을 반영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안으로서 또 기획재정위원회 안으로서 첫 번째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국정감사와 관련된 사항하고 동일한 정도의 취지를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관련된 사항 중에서 ‘공공의 이익’이라고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 돼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공공의 이익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화시켜서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세제실장님 말씀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이 조문이 들어갈 때 국정조사하고 국정감사도 같이 논의가 됐었는데 이 조문 논의할 때 그때도 감사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한정을 했다고 그러합니다. 옛날에 이 법안 만들 때, 국회에서

물론 만드신 거고요.

○**박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박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형수 위원** 법률을 만들 때는 시대가 변하면 그 법률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과세정보가 개인정보잖아요. 개인정보인데,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수사를 할 수 있는 비슷한 권한까지도 줘 놔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정조사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정감사라는 제도가 지금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게 우리 여야 위원을 막론하고 지난번 국감 때 많이 나왔던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입법 취지는 그랬다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금과옥조처럼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세제실장님, 외국의 입법례는 국세 기본자료에 관한 사항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있는 자료 있으면 주시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독일하고 비교를 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너무 양이 좀 많은데……

비공개가 셋 다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예외적인 공개 사유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지정한 자에게 제공할 때 그다음에 세무공무원 및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것,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제공, 의회에 설치된 위원회에 제공, 조세행정 및 그 외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주 및 지자체 공무원에게 제공, 통계적 목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본인 동의가 있거나 본인에게 제공, 타 행정기관 등의 법정사무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용·제공, 통계작성·학술연구 목적으로 제공, 그 외 타 법에서 요구할 경우.

독일의 경우에는 조세징수·통계작성 등을 위해서 제공, 사회보험기금 등 보험금 산정을 위해

제공, 불법고용 근절을 위해 관할 당국에 제공,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중앙금융거래조사국에 제공 그리고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공공의 이익·국가안보상 필요시, 경제범으로 기소되었을 때, 행정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잘못된 사실을 교정할 경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여러 가지 각 나라도 현재 있고, 의회에 하는 것은 미국은 조항이 있네요. 나머지 일본·독일은 그 조항은 없고 개인의 동의에 기본하고 있어서……

관련한 부분을 정리하고 지금 두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 추상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보고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 이것은 한 번 더 밀도 있게 논의를 해 봅시다.

○류성걸 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지금 구체적으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좁혀졌기 때문에 제81조의13 제1항제8호에 8-1호를 하든지 안 그러면 8호로 하고 9호를 10호로 하면서 국정조사와 관련되는 사항에다가, 국정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범위가 너무 넓다면 양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아니면 좀 더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화시켜서 ‘국정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공공의 이익’ 또는 더 구체화된 표현을 해서 국정조사와 관련되는 조항에 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한번 예를 정리해 주세요.

지금 이제 이게 안이 나왔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입법례도 있고 과연 이 문제가 개인정보 보호법, 여러 가지와 다 지금 연관돼 있는 법이라서 그 내용들과 이 법, 그리고 국정조사는 제공하게 돼 있잖아요. 국정조사는 명확하게 기간이 상정돼 있어서 위원회의 의결로 사실 요청을 하는데 그것을 제외한 것은 현재 국회 내에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어느 수위가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공공의 이익은 주관적인 판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공공기관의 장이나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판단의 여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좀 잡아서요 다음번 회의 때 이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하지요.

○류성걸 위원 제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회원제 골프장 관련된 자료를 영업비밀이다 또는 그런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개인정보다 이렇게 해 갖고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제, 또 관련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또 제도를 만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형태든지, 그 정보가 외부에 전달이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처벌이라든가 다른 제재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정책·법안 관련되는 논의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어떤 형태든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잠깐……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 류성걸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에 관련해서도, 이 조항을 위원회에서 정리해서 할 수 있게 기재부에서 국정감사에 관련된 것도 조항을 검토해서 의견을 주신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다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전차 회의에서도, 국정감사 그때도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에 국회법 그다음에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실 제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논의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전문 위원께서도 관련한 논의 과정을 좀 정리해서, 이게 논의가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우리 국정감사 기간에도.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셔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추경호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뜻을 잘 이해하고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기왕에 정리를 하고 우리가 최종 입장을 정할 때는 이 법의 기본 정신, 취지를 일단 훼손해서는 안 된다. 즉 아무리 국회지만 국회가 정보를 요구할 때 때로는 보면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정치적인 지향점을 갖고 활동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입장을 떠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국회가 그냥 요구하고 또 요구한 것을 받아서 공개할 때 이 법의 근간, 이 조항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계 행정기관이 법집행을 할 때 자료 공유하는 이런 수준이고 국회가 할 경우에는 여기도 보면 국정조사에서 조사목적 실현을 위해서, 거기에 제한해서 하고 그것도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그 당시에 아마 엄격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앞으로 결정할 때 기초자료가 좀 필요한데 기재부는 해외 사례를 좀 공유를 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국정조사에 관한 이 조항이 들어갈 때 아마 그때 논의사항이 국회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도 더 많이 아마 의욕적으로 가다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왔을 텐데 우리가 그것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때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서 조항이 이렇게 됐는지 과거의 속 기록이나 자료 내용을 한번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공유도 좀 해 주시고.

하더라도 비공개, 굉장히 제한된 입장으로 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국회 활동을 하면서 실제 도움되는 그런 부분에 한정해야지 이게 조금 더 가면 정말 우리가 반대 입장이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국회라는 이름으로, 상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

아까 일반적인 골프 이런 것은 사실은 A 골프장이 예를 들어 그게 얼마나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식별정보는 전부 가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런 통계, 실적 이런 것을 보자고 하는 거니까 그런 자료는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하고 여기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엄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추가적으로 논의 지속하겠습니다.

4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17페이지입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인데요.

현행을 보시면 포상금 지급이 40억 원 한도 지급이 있고 20억 원 한도 포상금이 있는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같은 경우는 20억 원인데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40억 원 한도 포상금으로 이동하자는 개정안입니다.

1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 인상 추이인데요.

탈세제보에 관련해서 2014년도에 30억 원으로 상향했고 2017년도에 40억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재산은닉 행위가 고도화·지능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은닉재산 신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필요성에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탈세량 재산은닉은 차이가 있고 또 실제로 이게 지급되는 금액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법률상 포상금 최대한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수정 동의하는 건데요, 한 30억 정도로 상향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어떤 경우에 40억을 받게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조세포탈, 포탈을 신고한 경우랑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거랑은 약간 달라 가지고요. 포탈이 어떻게 보면 더 근원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40억 원이 신고포상금 한도가 돼 있고요. 은닉재산은 지금 20억 돼 있는 것을 30억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진 예.

○정일영 위원 정부 측 의견대로 포탈이 40억이니까 은닉은 30억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부 의견은 30억이라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특별한 이유 없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 및 추정세액 통계자료 공개 근거 신설 관련한 김두관 의원님 안인데요.

이 안과 관련해서 23페이지 보시면 2018년부터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세무조사에 따른 세무 확정 내역과 조세포탈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지금 현재도 그런

세무조사 결과나 추정세액이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입법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부동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입법 취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어느 정도 실현이 됐는지 세제실장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2018년부터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이 개정돼서 공공기관이 세무상 뭘 잘못해서 세무조사를 받고 그 세무조사 확정 내역하고 또 조세포탈 현황, 유죄판결 내역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통칭 알리오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진 예.

○정일영 위원 지금 그러니까 같은 게 알리오 시스템에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그 근거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알리오 시스템이고, 알리오 시스템에 올리는 것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으로 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기준이 기재부의 지침 같은 건가요? 부령 수준은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공운법과 그 하위 규정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부령 수준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것 가지고 100%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똑같다고 하면 법에 넣어서 확실하게 하는 것도 국민들한테 좋은 것 아니에요, 거꾸로 보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제가 그 표 양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세무조사 연도 그다음에 귀속 연도, 세무조사 결과, 세목, 고지세액, 확정세액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여기 김두관 의원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지금 그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리고 홈페이지

이지에 그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문제없이 다 뜨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요, 이것은 정부 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 확대에 관련된 추경호 의원안입니다.

현행과 차이가 나는 것은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인데 국회의원이고요, 그다음에 5호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법률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6페이지 하단의 주 30을 보시면 현행 국세기본법에 국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국회의원을 추가하자는 내용이고요. 참고로 국회의원 보좌직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사무총장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다음에 기초자료 제공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한 ‘조세통계 정보공개 획기적 확대 추진’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취지에도 부합하고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개정안대로 입법할 경우에 일부 자구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이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은 부분 동의 의견인데요.

먼저 대상자 확대, 1호 국회의원은 이미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 이 부분에 다 포함이 된다고 아까 전문위원도 해석을 하셨고……

○전문위원 정명호 보좌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아, 보좌관……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 부분은 국회법을 통해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

부분은 지금 시행령에 있는데 저희들은 위치는 시행령에 놓되 내용은 여기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상 학교 이렇게 기술을 하면, 고등교육법 정의에 의하면 학교 내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각종학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말씀 주신 취지를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위치만 지금 현행 체계대로 시행령에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 거고요.

6호 같은 경우도 민간 연구기관의 장을 법률로 올리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 이렇게 해서 취지는 살리면서 시행령과 법이 역할 분담을 하고, 국회의원은 저희들은 국회법에 따른 이 내용으로 소화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국회 보좌관하고 국회의원은 엄연히 다른 지위에 있는 자이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 보좌진들이 컴퓨터나 통계 이용을 굉장히 활발히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각 의원실에서 보좌진들이 직접 통계를 얻고 그것을 분석하고 발표하고 또 의원들 보좌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의원들도, 지금 의원들이 20대부터 시작해서 쭉 다양한 연령층이 있고 예전하고 달리 의원님들께서 직접 또 자료 검색, 통계를 하는 분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 국회예정처장은 되고 국회사무총장은 되고 등등 하는데 왜 국회의원실이 거기를 경유해서 꼭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심대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옛날 방식이다,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국회의원이 독자적으로 일단은 기관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보좌직원이 굳이 사무총장 등에게 일일이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자료요구를 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부터 직접 또 위임을 받아서 자료 접근도 가능하고 센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회 보좌진하고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 자료 이용권은 될 수 있으면 좀 넓히는 게 맞다. 그런데 아무나 하게 하는 것은 또 여러 혼잡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당연히 국회의원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보좌진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취지이고.

그다음에 시행령에 있는 부분은 일부 전문위원 등이 정리한 대로 그것은 일정 부분 수위에 맞게 하던 되는데, 이것은 법에서 일부 명확하게 해주자 하는 취지니까.

국회의원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사무처는 되는데 국회의원이 안 된다 이것은 정말 옛날식의 법 조항을 우리가 그대로 하면서 지금 업무하고 있는 관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굴해서 국회의원을 넣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부 측에서 같이 모아서 답변해 주세요.

○정일영 위원 국세기본법 85조의6에 보면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공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제공할 수 있다’네요. 정부 측,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판단해서 제공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통상 제공을 합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은 알지요. 그런데 법 조문을 놓고 보면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하여야 한다면 대상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는데 할 수 있다니까 자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뺄 필요가 없잖아요. 할 수 있다는 폭넓은 개념이니까, 또 때로는 할 수 있다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국세청장이 볼 때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는 자료라든지 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갖다가 좁게 이렇게 잡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신설이 들어가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국회의원은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법 활동에,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요청하면 받는 게 게 좋지요. 저는 다 포함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유경준 위원 잠깐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항을 바꿔야 됩니다, ‘제공하여야 한다’로.

○정일영 위원 아니,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유경준 위원 아니, ‘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된다고요.

○정일영 위원 ‘하여야 한다’로 바꾸자고요?

○유경준 위원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더 강하게 바꾸는 것은 또 논의를 해 보지요.

○유경준 위원 아니, 필요해서 사용하고, 정책 수립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원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안 줄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정일영 위원 위원님, 여기 보니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경우도 국세청장이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국회에서 하면 하여야 한다가 맞고……

○유경준 위원 아니, 고등교육법에도 필요하면 줘야지요.

○정일영 위원 다 해요?

○유경준 위원 그래서 국세청 전산실을 확대해 왔거든요.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통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홍 위원님도?

○김수홍 위원 예, 제가 질의하고요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5조의6제7항 내용에 보면 요구한 자가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네요.

만약에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지 않아 가지고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청하면 처벌받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아니, 그냥 이것은 그 시설에 가서 기초자료를……

○김수홍 위원 아니, 아무리 기초자료가 조금 제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초자료는 국가기관이나 헌법기관들이 그 자료를 통해서 국정에 도움이 되고 법안을 심사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심사하는 자료, 국익에 쓰려고 하는 자료인데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런 입법례는 저는 전혀 안 맞다고 보고요.

저는 ‘기초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아니면 ‘요구하는 경우’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유치한 표현 같은데요.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어차피 지금도 국회의원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등교육법상 학교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지금처럼 시행령으로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아주 포괄적으로 민간 연구기관 등등 이렇게 쪽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국세청장 지정요건이 삭제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 들어가는 것 동의, 그다음에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를 시행령으로 내리는 것 그렇게 하면 딱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소위원장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올해 연도에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고요.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상의 허점 아니면 자료제공에 여러 문제가 있으면 그때 확대하는 것으로 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준비하는 국세청이나 이런 데도 나름대로 준비 체계나 판단들이 있을 개정이라 ‘국세청장은’이라고 하는 주어를 빼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헛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판단해서 어떻게 줘야 될지도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조문은 살려 주고 국회의원과 5항을 시행령으로 해서 확대하고 추후에 더 강화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잠깐만요, 지금 다른 것은 그러면 전부 다 법에 놔두고……

○소위원장 김영진 5항만.

○류성걸 위원 1항하고 5항을……

○소위원장 김영진 1항은 들어가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6항도 시행령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소위원장 김영진 5항 6항을 시행령으로 내려서 규정을 해 주는 것이지요.

○김수홍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은 그냥 가자는 겁니까, 그냥 가자고?

○소위원장 김영진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니 결국은 지금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세통계센터가 2개소 정도 개소가 됐기 때문에 의무가 되면 2개밖에 없는데 만약에 다 몰려서 ‘해 줘’ 그랬을 때 안 해 줬을 때의 부담 그런 차원이지만 될 억제하거나 안 해 주겠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캐파의 문제 차원에서 그런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제도를 확장하고 시행하고서 또 개정안을 내서 한번 살펴보시지요.

○**유경준 위원** 지금도 안 줘요. 지금도 안 주고 있다고.

○**소위원장 김영진** 이제 주겠지요.

6항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박형수 위원** 이렇게 해서 안 주면 ‘제공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걸로 합시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것도 개정안 내세요. 내야지요, 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1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31페이지입니다.

소득세율 조정 관련인데요.

현행은 제일 좌측에 있고요. 양경숙 의원안은 5억 원 초과구간 세분화 및 세율 인상, 태영호 의원안은 8800만 원 이하 구간 세율 인하, 이종배 의원안은 지방소득세율 상향을 전제로 한 세율 인하입니다.

33페이지는 2010년 이후 과세 구간별 세율 연혁입니다.

3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과표 구간 세분화 및 일부 구간의 세율 인상을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2020년 정기회 세법 개정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종전의 42%에서 45%로 인상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구간 세율 하향 조정 관련입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1분위부터 4분위까지의 가구가 전년 동기 대비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소득층을 제외한 서민·중산층에 대해 세율 인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소득세 체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자는 세부담에 변함이 없는 반면에 종합소득과세표준 4600만 원 이상 88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상대적 고소득자의 세율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과세표준 8800

만 원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의 세부담도 낮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율 상향을 전제로 한 소득세율 인하, 이종배 의원안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양경숙 의원님 안은 세율을 인상하자는 건데요. 이미 저희들이 과표 10억 원 초과자에 한해 작년에 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해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태영호 의원님 안은 세율을 하위구간은 내리자 이런 건데 이미 세부담 형평성, 적정성, 세수감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하위구간 세율 인하 역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지방세 비중 조정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분권 이런 원칙에 따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부동의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경준 위원**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3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G7의 평균이나 OECD 평균이 우리나라 최고 세율 45%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41% 34%로 해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조세의 원칙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인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높은 최고 세율로 하고 면세자들은 37~38%, 40%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최고 세율은 좀 하향시키고 세원 발굴은 더 철저히 한다는 측면에서 최고 세율 인하를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진**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굉장히 이게 민감한 내용인데요. 소득세법의 소득세율 조정인데 이게 의원님들이 올리고 내리고 나누고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현행 것을 손대기가 쉽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정부 측은 현행 유지지요, 전부 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저도 정부 측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관련한 사안은 계속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44페이지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의 상향 관련된 고용진 의원안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소득세법에 규정이 있고요, 조특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공제한도를 보면 총급여 1.2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 일반은 소득세법의 규정이고 50세 이상은 조특법의 규정입니다.

고용진 의원안은 조특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소득세법에서 한도를 상향하자는 개정안입니다.

46페이지는 연금계좌세액공제 관련된 주요 연혁입니다.

4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및 고령인구의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노인빈곤 문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비한 개인적 노후보장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한도액 확대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역진적 세제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지원 이 취지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한도 설정 같은 것을 지금 설계해 놓은 게 여러 가지 제도 간에 정합성이라든지 수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는 현행 유지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 이 개정안 발의의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화로 가고 있는데 연금 소득대체율도 43%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연금 소득이 은퇴 전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언론에 크게 났습니다만 일본하고 비교해도 아주 굉장히 뒤떨어지는 연금 소득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어서 향후 노년층 빈곤 문제를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공적 연금은 앞으로도 재정이 장기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어떻게든 개인들이 연금 쪽으로 투입을 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소득 역진적 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한도를 열어 주면 더 하겠지요.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는데, 노령층 빈곤이, 여기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주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자체는 저희도 100%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 말고 세제 측면에서의 다른 대안 같은 것은, 세제실에서는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건 없는데 일단 ISA가 이것과 조금 상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세액공제해 주는 것과 별개로 납입은 1800만 원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돼 있는데 아까 역진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대안을 딱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대안을 마땅히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당장은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니까……

○**고용진 위원** 그때 언론에 난 것 보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 한국 연금수령액이 월 82만 1000원이거든요. 일본이 164만 4000원이에요. 딱 절반이에요. 부부가구 경우에도 일본의 딱 절반이고. 이래 가지고 이 상태가 계속 된다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노년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조특법에서 또 다루게 되나요, 50세 이상에 혜택을 주는 것은?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예, 그것은 22년에 일몰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고용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연금을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 있어요? 지금 50세 이상만 혜택을 줘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령을 낮추자라는 의견이 있

는데, 전 연령한테 개방을 해서 좀 미리 준비를 하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게 한도를 높여 주는 건데 아까처럼 역진성……

○**고용진 위원** 또 마찬가지로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똑같이 문제가 됩니다.

○**고용진 위원** 그러면 이게 그 딜레마에 계속 빠지는 거거든요. 해 주면 있는 사람이 더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세제혜택 속에서 조금 더 그 밑에 중간층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말씀하신 취지는 다 맞고요. 다만 어느 속도로 저희들이 해야 될 거냐…… 당위성은 저희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50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약간 특별히 더 해 드린 부분은 50세니까 미래를 준비하실 시간적 여유가 더 적기 때문에 그만큼 해 줬고 그다음에 그 부분도 계속해서 약간씩 확대하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더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이 속도를……

○**정일영 위원** 적어도 최소, 제가 볼 때는 50세에 준비하는 것은 너무 늦어요. 그것 얼마나 하겠어요, 해 본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그러니까 일반도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400만 원, 700만 원 해 주는데 이 부분을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높여 갈 거냐 이 부분인데 세부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수준에서는 이런 수준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저희들……

○**고용진 위원** 그 연령을 좀 낮추는 것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저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서 다음에 논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섞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지금 노후소득 보장 관련해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지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상향 조정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중 하나의 필요조건에 불과한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현재는 43%로 되어 있습니다만 2028년에 40%까지 내려가도록 되어 있고, 그것도 근본

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상당한 큰 부분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또 국민연금 관련되어서 기여금 9%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건가 또 기초연금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전부 다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제 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큰 부분도 같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관련되는 검토의견에서 아까 고소득자에 대한 역진성 이 부분은 세제가 기본적으로, 특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세액공제든지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더할뿐더러 세액공제도 결국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 관련해서 당연히 나오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동의를 하되, 이 부분보다는 더 근본적인 복지 관련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논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제안을 드리는데 연말에 11월 달에 하지 말고 조세소위도 열려 있는 거니까 약간 여유를, 시간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시기에 모아서—이렇게 중요 의제에 대해서는—얘기하는 방식도 저희 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한번 길게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으로……

○**고용진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5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인데요.

현재는 난임시술비가 20% 공제율입니다. 김기현 의원안은 난임시술비 및 고위험임산부·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의 공제율을 확대하자는 것이고요. 정일영 의원안도 난임시술 관련 공제의 적용범위 및 공제율을 확대하자는 의견입니다.

5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으며 저출산 문제

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건강한 임신·출산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통해 출산을 제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 난임자·고위험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일반적인 산모 및 출생아와 비교하여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특히 임신을 원하시는 난임 부부 같은 경우 이런 것에 정신적인 고통도 있지만 사실 경제적 비용도 굉장히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느끼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제 측면에서 고민을 해 봤는데 고민되는 부분이 지금도 다른 공제율보다 난임시술비는 20%로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높이는 것은, 그러면 다른 공제 제도 같은 경우 다 상향해 달라는 요구들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대신 공제율은 20%로 하되 정일영 의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그 범위는, 현재는 난임시술비인데 난임시술비 외에 난임시술 관련 의약품비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아주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합계출산율이 0.8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한번 여쭙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난임시술 신청자가 이제까지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2.6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몇 명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2.6만 명.

○류성걸 위원 2.6만 명에, 세액공제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 장영규 612억 원……

○류성걸 위원 612억이요?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 장영규 예, 19년 1

년……

○류성걸 위원 뒤에 어느 분이시지요?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 장영규 소득세제과장입니다.

○류성걸 위원 소득세제과장님, 지금 우리 저출산·고령화 대책 기본계획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몇 년 동안에 118조, 맞습니까? 예산으로 118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118조요?

○류성걸 위원 예, 전체 지원한 게.

그렇게 저출산 관련 예산을, 그 금액 자체로 봐서는…… 118조인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0.9에서 떨어져서 0.8 정도 되는 숫자고 더 떨어질 것이라는 건데, 난임시술비라는 것은 진짜 애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이런 것보다도,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서 그렇게 100조 이상을 쏟아붓는데도 이런 상황인데……

아니, 내가 지금 난임인데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게 부담이 돼서 시도를 안 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임신·출산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못 하도록 하는, 아니면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일영 위원 제가……

○소위원장 김영진 정일영 위원님 발의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류성걸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주 획기적인 서포트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다음에 배준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제가 잠깐 하고……

○배준영 위원 예.

○김수홍 위원 발의자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

○정일영 위원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아니, 그런데 해야 돼.

이건 너무 중요한 국가적인 현안인데요.

진짜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 대단히 실망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현안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구가, 대한민국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047년이면 전국 모든 지자체의 인구가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간대요. 인구가 지금 이렇게…… OECD 국가 중

에 합계출산율이 1.0 이하인 국가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류성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 5월까지 보니까 총분만이 27만 1739건인데 아까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던데 그중에 난임시술을 통한 분만이 10.6%야. 10명의 1명꼴이 난임시술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 가지 공해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지 난임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기를 안 낳으려는 게 아니고 낳고 싶어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가장 어려운 게 경제적 지원이래요.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2006년 이후에 저출산 관련 예산 225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지금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2021년도 올해 저출산 예산이 46조인데 주거·고용·교육 이런 간접적인 지원 예산들이에요. 이것은 직접적인 지원 예산이거든. 이것은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

공제율을 20%에서 30%로 10%p 올려 주는 건데 다른 데서 얘기한다고, 비교해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동의 못 하겠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다른 경우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국회예정추계에 보면 세수 추계를 봐도 이게 연평균 한 17억 원 정도, 이게 세수 감소도 얼마 안 되는데 적절히 지원해 줘야 돼요.

옆에서 계속 말씀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영진 배준영 위원님 그다음에 김수홍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통계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난 15년간 한국 정부가 380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하는 통계도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통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6년서부터 태어난 애가 626만 명인데 단순히 나눠서 계산하면 아이 한 명 낳을 때마다 한 6070만 원 정도가 정부 예산으로 소요됐다는 건데, 글썄요.

지금 출생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세종시예요. 왜 세종시인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안정된 직장에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나라가 아이를 키워 주기

때문에 거기가 출생률이 제일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꼴찌를 하는 이유가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굉장히 꺼려 하고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데 이분들은 아이를 낳고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한테 조금만 더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들이 가장 가성비 좋은 예산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출생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말하자면 이분들이 꼭 필요한 분들인데 이것을 갖고 형평성 문제를 따지고 해서 이 정책이 미뤄진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정책의 큰 물결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거기까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김수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홍 위원 저도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답변하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정부나 국회나 현장의 목소리하고 현장의 눈높이하고 맞아야 되고 지금 저출산이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때에는 국회나 정부가 큰 시그널을 준다는 취지로 하면 저는 이것 30%도 적다고 봅니다. 한 50% 해서 국회가 새롭게 결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전체적으로 정부가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발언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게 통계랑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일단 이게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액공제를 해 주다 보니까, 그동안 19년에 공제받은 것을 보면 총급여 2500만 원 이하는 이 제도로 5.4만 원 그다음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31만 원, 7000만 원 이하는 44만 원 이렇게 돼서 낼 세금이 없는 분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별로 못 받고요.

또 하나는 난임에 대해서 국가가 예산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시술비 이것은 세제 쪽에 낼 세금이 없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난

임, 제외수정과 인공수정시술비를 시술 종류와 횟수, 나이별로 차등 지원해서 1회당 2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최대 일곱 번까지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추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호 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동일한 취지로 말씀하셨고 이것도 부족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차제에 정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생·출산과 관련되고 애를 키우는 문제, 특히 애를 낳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소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소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는 애 낳고 애 지원하고 이것을 차등화해야 되고, 그래서 없는 사람이 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이렇게 많이 줘서 되겠느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애 낳는 문제는 소득 관계없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추경호 위원 그런데 아까 소득 얼마 이하는 5만 원밖에 못 받고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40만 원 받고 뭐 어찌고, 이런 식의 통계를 갖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출발점이 잘못된 것이다. 이제는 그런 통계를 갖고 다니면 안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알겠습니다. 효과가 되게 제한적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추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계없이 정말 위기상황이니까 지금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야 된다,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없다. 그 아이들 중에 지극히 단순한 아이들인데 이것 플러스알파해서 이런 부분의 정책은 굉장히 강도 높게 발굴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전체적으로 여야 위원들이 다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해야겠는데요.

○류성걸 위원 가장 저것한 안으로 처리하도록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예.

국장님, 관련해서 공제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면 대략 세수감을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현재처럼……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한 30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렇지요, 현재 600억에서

300억이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의약품비 다 해도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의약품비는 저희들이 아까 차관이 말씀드린 쪽으로 하면 아마 지금보다 조금 대상이 넓혀지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텐데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현재는 정일영 의원안이 현재 안 중에는 가장 큰 안입니다. 그렇지요?

○정일영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진 이 정도 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국가적인 과제인 저출산 문제에 관한 획기적인 밥값을 오늘 했다 이런 것으로 하고, 정부 측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흔쾌히 동의를 했다고 해서 행정실에서 보도자료 바로 내세요.

○류성걸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은 정일영 의원님 안 포함해서 김기현 의원안까지 해서……

○소위원장 김영진 통합 조정해서요?

○류성걸 위원 예,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진짜 국가적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아주 흔쾌하게 했다……

○유경준 위원 제가 한 말씀 안 하려다가 올리겠습니다.

방금 소위원장님이 20%에서 30%로 올려 주고 획기적인 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획기적이지도 않고, 지금 대선주자들은 전액 무료 공약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이라는 말은 아니니까……

○류성걸 위원 일단 하시고.

○소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현재보다는 향상된 안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조세소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종합 정리하여 그렇게 정리한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 좀 조정하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항은 수정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5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관련되는 박형수 의원안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진신고·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1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7일이 너무 짧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15일로 하자는 의견인데요.

법상으로 현금영수증을 언제까지 발급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없고요. 이 부분이 없는 이유는 아마 즉시 발급해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규정이 하나 있는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발급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일 이 부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에는 95개, 2023년에는 114개 업종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신규로 포함된 업종의 영세사업자가 단순한 실수로 인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누락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 기간을 다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현금영수증 당일 발급 원칙은 소득탈루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가산세 부담 완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 의견은 부동의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제가 발의했으니 말씀드려야지요.

취지는 전문위원이 잘 설명해 주셨고 63페이지 있는 대로입니다. 지나치게 짧아서 지금 사실상이 제도를 이렇게 유지해서 혜택을 보는 부분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도는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아야지 지금 이 63페이지 그림 보면 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5일 이내에 발행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7일로 해 놓으면 이틀 안에 이것을 해야지만 가산세 감경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도를 만드나 마나한 것이다.

이 제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기간을 늘려야 된다, 아니면 아까 차관 얘기했듯이 이게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 어긋

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제도를 차라리 폐지해 버리든지, 유지를 하려면 실효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폐지하기도 어려운 것이, 모르고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가지고 발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줘야 되지, 이틀 정도 주고, 그렇다 해도 일주일이라고 한들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15일 정도는 되어야지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추가적인 입장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 같은 경우는 거래가 이루어진 즉시 발급을 하고, 소비자가 안 받았다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을 노출시키지 싫어서 안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국세청에다가 무기명으로 바로 ‘나 얼마 받았다’ 하는 것을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착오로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는 의무발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제도 취지 자체가 즉시 발급하게 돼 있는데 15일까지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너무 길고, 저희도 이것 고민을 좀 해 봤는데 5일까지는 가산세가 안 나가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한 10일까지 해서 경감받는 부분을 5일 정도로 하면 어떨까……

○소위원장 김영진 수정안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두 의견을 수정해서, 그렇게 조정 수정안으로 해서 개정안 15일을 현재보다 5일을 더 줘서 10일로 조정하면 현금영수증의 입법 취지와 맞는 것 같습니다.

○류성걸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따라서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이 날짜를 당길 수 있나요, 5일이라는 것? 왜냐하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대금을 받으면서 바로 해야 되는데, 5일이라는 것은 그래도 좀 여유를 뒤 가지고 하

자는 건데 전체 기간으로 따지면 7일을 건드리지 말고 5일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런데 이것이 즉시 발급이 원칙인데 이런 케이스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즉시 발급을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누가 다른 점원이, 알바생이 잘 모르고 안 끊어 주는 경우가……

○**류성걸 위원** 안 끊어 주는 경우도 있고 악의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신고를 하려고…… 신고포상금제 있지요, 아직까지? 지금도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그래서 현금영수증을 당연히 끊어 줘야 되는데 그것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쨌든 현금영수증을 바로 끊어 줘야 되는데 날짜를 길게 하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이런저런 것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날짜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쭙보는 겁니다.

○**박형수 위원** 착오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업원들이 모르고 손님이 괜찮다 그러면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나중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의무발급 업체가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자신이 의무발급 업체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내가 반드시 발급해야 되네’ 이렇게 아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조금 줄여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부처에서 수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그러면 수정한 부분으로 10일로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5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5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과세 사업소득이 있는데 이 개정안은 양식어업을 어느 위치에 둘 거냐 하는 건데요. 좌측에 보시면 어로어업은 시행령에 따라서 5000만 원이 비과세인데 양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들어가 있어서 3000만 원

이거든요.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해서 직접 내용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이 개정안 취지를 보면 어로어업에 준해서 5000만 원 비과세를 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어업인 간 형평을 고려하여 양식어업에 대해서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주업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양식어가는 어로어가에 비해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부채 수준도 높으며 어로어업에 비해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양식어업의 구조적인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저희들은 비과세·감면 축소 정책 방향, 그리고 다른 업종과의 과세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확대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부동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향자 위원** 양식어업이나 어로어업이나 저는 비과세 관련해서는 함께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알아보니 어로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관련해서는 그다지 반대 의견은 없더라고 들었고, 그런데 양식어업이 소득이 높다고 해서 꼭 그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비과세를 함께 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수 위원**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67페이지 표에 농업에 보면 작물재배업도 비과세고 축산업도 소 사육하고 양돈하고 구분해서 비과세가 있는데 양식하고 소 사육업, 축산업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로 하는 경우는 작물재배업하고 비슷하고 양식은 축산업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 싶은데 농업은 축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과세를 해 주는데 양식에 대해서는 안 해 준다 이것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신 면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 연혁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요. 과거에 농업 작물재배에 대해서는 국세로 부과하던 것이 아니고 지방소득세로 농지세를 부과했습니다. 아무래도 농민들이 여러 가지 세무 처리 이런 것이 힘들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면적을 기초로 해 가지고 농지세를 부과하고 국세는 부과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농지세라는 것이 또 다른 여러 가지 집행의 어려움, 여러 가지 체계의 부적합 이런 것 때문에 농지세가 폐지가 되고 국세로 전환하는 의사결정이 있었는데 실제로 농민들한테 갑자기 쌀·보리 이런 진짜 순수한 작물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그 작물재배업이 비과세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축산업과 어업의 양식어업이 똑같이 다 부수적인 사업이라 봐 가지고 따로 3000만 원, 몇 마리 이렇게 균등하게 비과세를 했었고 그리고 농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농지세 과세에 대한 체계였는데 이것 전체가 계속 개편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체계상의 문제는 약간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축산업에 보면 비과세하고 50마리 초과 소득금액 3000만 원 구분해 갖고 하고 있는데, 양식어업도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위원님 처음 제기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축산업은 그래도 소나 양돈 같은 경우 마릿수를 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양식어업에서 광어를 몇 마리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형수 위원 면적으로…… 좀 그렇기는 하네.

○소위원장 김영진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지금 현재는 비과세 현황이 어로는 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로 양식어업이 3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이것이 차이를 둔 이유는 뭐예요? 어로가 더 영세하다고 본 겁니까?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당시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체적인 농가부업소득을…… 원래는 다 같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어로어업이나 양식어업이나 구분 없이 3000만 원이었는데 19년도에 국회에서 저희 정부안은 없이

의원입법안을 제기하시면서 당시에 양식어업보다는 어로어업이 훨씬 어렵다, 전반적인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이 적다 그래서 어로어업에 대해서는 일반 농민하고 대비했을 때, 일반 작물 재배하는 농민 여기에는 어로어업을 하는 어민 그것이 좀 대비되는 개념이니까 어로어업은 축산업이나 양식어업에 비해서 좀 더 비과세를 올려야 된다 해 가지고 당시에 국회에서 결정해서 가지고 3000과 5000 차이가 난 상황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때 그러니까 어로어업·양식어업이 똑같이 3000만 원이었어요, 5000만 원이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이?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둘 다 3000이었다가 어로만 당시 19년에 2000을 올렸습니다.

○정일영 위원 어로어업이라는 것은 어선으로다가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로어업이고, 양식은 가두리 양식장 같은 것 그거지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양식 하시는 분들이 일종의 대형, 대규모 사업자인가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평균적으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다 높습니다.

○정일영 위원 자료에 보면 전체 소득금액은 양식어가 2배까지는 아니지만…… 2배 가까이 많은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양식어가하고 어로어가 숫자는 어떻게 돼요? 소득금액으로 보면 양식어가가 거의 2배 많은데 숫자는 어떻게 돼요, 어가 숫자? 세금이 개별일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게 어가당 평균인 것 같습니다. 단위가 1000원이니까요.

○정일영 위원 이게 평균이?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예, 1인당 평균입니다.

○정일영 위원 1인당?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어가가 몇 개 업체예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정확한 개수의 통계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우리가 보면 양식이나 어로나 다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좀 봐야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좀 애매하네요.

○소위원장 김영진 김수홍 위원, 양향자 위원 두 분 하고 이 논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홍 위원 제가 농촌 출신이라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어업만 보면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에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축산업을 보면 50마리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0만 원 비과세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맞춰 줘야 돼요. 만약에 양식어업을 5000만 원으로 올리면 축산업도 올려 줘야 됩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축산업이 50마리는 양식어업과 비교하면 사실 양식어업자가 훨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정부의 지원 사업도 양식어업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같이 한다면 이것도 5000만 원으로 올려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면 그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양향자 위원님.

○양향자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식어업을 하든 어로어업을 하든 이렇게 같이 해 놔야 어업 형태에 있어서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 같고 비과세 때문에 굳이 어려운 어로를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68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어로어가에 대해서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고 양식어가도 상당히 어려움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양식어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업 형태에 따라서 똑같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귀어 촉진이라든지 또 양식어가에 대한 어업 활성화도 되고 그런 측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 사안은 제가 보기에 오늘 결정하기보다는 어로어가 수 그다음에 양식어가 수를 확인해 보고……

아까 김수홍 위원님 말씀이 맞으세요. 3000, 3000 하다가 3000, 5000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올렸는데 만약에 5000으로 맞춰 버리면 또 어로어가에 대한 문제가 상충적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지금 6시 25분인데요 1시간 정도, 약간 정회했다가 7시 반부터 이어서 진행하면 어떨까요? 괜찮겠지요? 오늘 저녁시간을 너무 길게 가지면 논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요.

○류성걸 위원 잠깐만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밤 12시까지 하려면 충분한 저녁식사를 하시고 하고, 안 그러고 어느 정도 하다가 할 것 같으면 간단하게 해서 중간에 마치는 형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시간 하면 시간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8시까지 하겠습니다.

8시까지 식사하시고 뒤에 약속 잡지 마시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회의중지)

(20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득세법 개정안 6번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7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서 가상자산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 등으로 변경하는 건인데요.

현행은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으로 돼 있고 현행 하단의 금융투자소득하고 달리 돼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에 가상자산소득을 추가하자는 의견이고요, 조명희 의원안은 기타소득 중 가상자산에 대한 세율과 공제를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견해가 일부 있고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주식보다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투자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행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의견과, 가상자산소

득에 국내 상장주식 등의 경우와 동일한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 주식 등의 경우에는 국내 기업의 자본 확충 조달을 위해 투자금 유입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높은 기본공제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가상자산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본조달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국내 주식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나까지 같이 해 주세요. 같이 통합 조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과세 유예 관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상자산은 투자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있어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한 시기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규율 체계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이 마련된 후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위한 과세 인프라 구축이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의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작년 정기국회 세법 개정 논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 거래 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입법 조치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착실히 차질 없이 준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예정대로 과세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세를 유예하게 될 경우 이미 과세 중인 국내의 다른 투자자산, 특히 해외 주식이라든지 비상장 주식 그런 것과의 과세 형평성이 저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해외 주요국들 같은 경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하에 가상자산에 대해 이미 자본이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방식도 과세 중인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희

는 현행대로 일정에 맞춰서 예정대로 과세해야 된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정부 측에서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안하시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 부분도 작년에 세법 개정 논의를 거쳐서 된 대로 기타소득 그런 체계로 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제회계 기준이라든지 소득세법 체계를 봤을 때도 기타소득으로 가는 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홍 위원님.

○김수홍 위원 이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통과돼서 2023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 정부 또 그다음에 국회가 합의해서 통과가 됐는데 시행도 하기 전에 이것을 기타소득에서 또다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직 법적 안정성이…… 아직 발걸음도 안 뒀는데 지금 와서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서 한번 시행해 보고 나서 추후에 필요하면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수 위원 금융투자소득으로 입법을 한 해외의 사례는 있습니까? 해외 사례는 지금 어떤가요? 해외에 지금 규정한 국가도 있는 것 같은데, 가상자산을.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해외 사례는 자본이득세로 과세를 하거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잡소득—우리로 얘기하면 기타소득 정도가 되겠습니다—그렇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유경준 위원님.

○유경준 위원 이것 저도 작년에 가상화폐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된다는 원칙하에 찬성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또 반대 입법을 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가상자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숙지가 덜된 상태에서 정부가 과세 시스템이나 인프라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말을 신뢰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올해 들어서 보니까 가상자산이 간단한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거래소 간의 거래나 해외 거래소와 국내거래소 간의 거래 그리고 4대 거래소 외에 코인만 가지고 하는 거래소의 문제 그리고 NFT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트래블 룰을 지금 국제적으로도 공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과세 준비가 덜돼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 가지고 금투세도, 증권에 대한 거래도 2023년부터 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과세 준비나 과세 시스템 정비를 해서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정부가 보호할 수 있을 때 세금을 받는 건데 원래 자금세탁이나 국제 테러자금 방지를 위해서 가장 큰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과세 시스템이나 과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조금 더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방지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오히려 선량한 국민들한테만 세금을 매기는 그런 결과를 줘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준비를 해 가지고 1년 정도 금투법 시행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1년 유예 법안을 냈었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1년 정도 내고 해서 금투법 시행과 함께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간사님.

○류성걸 위원 정부에서 가상자산의 과세 관련해서 어느 정도가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련되는 사항들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기재위 전체회의 때도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데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만 했지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관련되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유경준 위원도 말씀하셨고 하지만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흡하다 또는 미흡할 것이다 이런 짐작이나 또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다 이거지요.

그래서 관련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한번 하시고 또 인프라 관련해서 뭐뭐 뭐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먼저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결국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과세자료 세부내역을 제출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어떠한 과세자료를 내야 되는지 그 세부내역이 다 이미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세청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출할 때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 작업을 계속해 왔고요.

그다음에 또 결국은 말씀하신 인프라 시스템 같은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 시스템 관련해서 과세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고 어떻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지금 국세청이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들이랑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 이런 것이 없다거나 부족하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구체적인 것은 오늘 국세청에서 담당자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설명 들으시고 또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국세청 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볼게요. 누구시지요?

○국세청소득세과장 한지웅 안녕하세요? 국세청 소득세과장입니다.

○류성걸 위원 소득세과장님이요?

○국세청소득세과장 한지웅 예.

○류성걸 위원 지금 가상자산 과세 관련된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 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세청소득세과장 한지웅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거래소의 준비가 있을 거고 납세자의 준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과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한테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상자산 거래 소득 제도입니다. 그 투자자들은 2023년 5월에 최초로 신고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신고는 2023년 5월에 최초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현재 자기를 거래한 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 거래 제출이라는 부분은 과세의 문제가 아니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상자산거래소에 과세를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도 그것에 대한 책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한

테는 최초로 의무 부여를 하는 것이, 내년 1분기 거래 내역을 저희한테 내년 5월에 우리 청에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 것이 우리하고 최초의 의무 발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현재 거래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구축해 가는 과정인데 거기서 구축했던, 내년 상반기 1분기 거래했던 내역을 저희한테 자료로써 제출만 해 주시면 그분들의 의무는 다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그 자료 제출하는 데 필요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현재 국세청에서 계속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내부 세원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분들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자료 제출받은 것을 저희가 나중에 세무 검증이나 아니면 2023년 5월에 신고 안내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 시스템을 구축 중이고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류성걸 위원 지금 현재 구축 중이다 이거지요?

○국세청소득세과장 한지웅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구축을 해서 관련되는 테스트도 하고 또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도 테스트 중인데, 오늘이 24일이에요, 그러면 언제…… 지금 구축 중이라는 말씀을, 아까 차관님 말씀은 국세청에서 테스트하고 있다 이라고 과장님 말씀은 구축 중이다 이러는데 언제 구축이 완료가 돼요?

○국세청소득세과장 한지웅 최종 완료는 12월 말이고요. 현재는 시스템 프로그램은 다 개발이 됐고요,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최종 완료가 12월 말까지 된다는 의미입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되면 추가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돌려 보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나요?

○국세청소득세과장 한지웅 현재 그래서 11월 아니면 12월 중에 거래소로부터 실제로 한번 데이터도 받아 보는 그런 테스트까지 다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유경준 위원 방금 내년 5월에 처음으로 1분기 것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12월 중에 뭘 또 받아 가지고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국세청소득세과장 한지웅 샘플을 받아 본다는 의미입니다.

○유경준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언제, 몇 번 했어요?

○국세청소득세과장 한지웅 설명회는 현재……

○유경준 위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설명회나 간담회 그리고 거래소들 간의 대화 이것을 얼마나 했어요?

○국세청소득세과장 한지웅 컨설팅은 3회 개최했습니다.

○유경준 위원 언제 언제 언제 했어요?

○국세청소득세과장 한지웅 8월 달에 한 번 하고요.

○유경준 위원 8월 달에는 설명회도 아니고 그냥 만나고 갔다는 거고.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고 그랬더니 그 뒤에 한 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세청소득세과장 한지웅 그 뒤로 또 한 번 더 개최해 가지고 두 번 더 했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다가 국감에서 왜 시스템 준비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과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시작을 한 거예요.

○국세청소득세과장 한지웅 저희가 준비는 계속 해 왔었고요. 그리고 상반기 때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유경준 위원 기재부하고 국세청에서는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하지만 거래소나 이쪽에서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일반론이예요.

그리고 처음에 거래소 내에 있는 코인이나 이것을 처음 값을 갖다 어떻게 매길 거예요?

○국세청소득세과장 한지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는 구조입니다.

○유경준 위원 그러니까 처음의 코인 값이나 이런 것들은 기록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2022년 3월, 1/4분기 것 5월 달에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첫 가격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신고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 밸류에 대해서 2021년에 샀는지 2022년에 샀는지를 어떻게 입증을 해요, 그것을?

○국세청소득세과장 한지웅 그것은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구조인데요.

○유경준 위원 거래소에서 무슨 자료가 있는데? 2021년이나 2020년에 했을 때 코인을 갖다 옮겨 놓을 수도 있잖아요. 코인 간의 거래일 수도 있고 해외에서 들고 온 걸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무슨 수로 입증을 해요, 그것을? 그것은 또 누가

입증을 하는데요?

○국세청소득세과장 한지웅 입증의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거래소들은 본인이……

○유경준 위원 처음 가격이 있어야 뒤에 5월 달 이후에 팔든지 하면 소득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알 것 아니에요.

○국세청소득세과장 한지웅 거래소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래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유경준 위원 첫 번째 산 것을 거래소에서 어떻게 알아요? 해외에서 오고.

○국세청소득세과장 한지웅 이전으로 넘어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유경준 위원 그렇지요, 이전으로 넘어오는 것들.

○국세청소득세과장 한지웅 그래서 저희들은 거래소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0원으로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다만 저희가 최근……

○유경준 위원 아니, 그것을 알아야 과세를 할 수 있잖아요.

○국세청소득세과장 한지웅 그것은 우리 청과 투자자의 문제입니다. 거래소가 책임질 일은 아니어서 거래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우리한테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본인들이 이 과세를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부분이니까 0원으로 제출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자들하고 신고받을 때 투자자들로부터……

○유경준 위원 그러면 투자자들이 바르게 신고하는지 틀리게 신고하는지 어떻게 알아? 지금 이것 하는 이유가 자금세탁 방지하고 테러자금 방지하기 위해서가 큰데 허위로 신고하면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세청소득세과장 한지웅 예, 그렇습니다.

○유경준 위원 거래소에서든 그러니까 너희들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그리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개인한테는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라고 할 거예요? 그것도 입증 안 하면 끝이에요?

○국세청소득세과장 한지웅 기본 출발점이 12월 31일 날 취득가액은 의제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취득가액부터……

○유경준 위원 12월 31일이든지 1월 1일이든지 취득가액에 대해서 개인이 신고하면 그걸로 끝이

예요?

○국세청소득세과장 한지웅 의제취득가액은 최소한 그 부분은 무조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경준 위원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과세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자금세탁을 위한 건지 테러자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허위로 신고해도 알 방법이 없다 그러면 누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겠어요?

○국세청소득세과장 한지웅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료를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런데 해외가 공조나 트래블 물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되는 상태에서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없고.

그리고 처음에는 입증 책임을 거래소에다가 하라고 그랬다가 안 되니까 지금 조금 다른 방법을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준비가 안 된 부분은 좀 인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됐다고만 하면 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요.

과장님, 저도 연이어서 질의를 하는데 유경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면 최초취득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세청소득세과장 한지웅 예.

○소위원장 김영진 취득가가 지금 없잖아요. 의제취득가액을 신고하라 그리고 그 이후에 양도해서 나오는 차익,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국세청소득세과장 한지웅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신고자가 의제취득가액을 신고가액을 무슨 근거로 신고합니까? 확인할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저번 국정감사 때 물어봤을 때는 이 답변도 없었어요. 의제취득가액에 대한 사안도 없었는데 그 이후에 관련해서 당초 취득가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하면서 의제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했고 그에 따라서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 부분에 관한 것까지 간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코인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세 번째는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은 단일 시장이기 때문에

그 거래소 내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계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차익을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융 과세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코인 관련한 거나 가상자산 부분들은 현재 정부에서 인정해 준 것만 해도 네 군데 그리고 그것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4개로 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거래소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ABCD 해서 A에서 D로, B에서 C로, C에서 B로 이전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확인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적으로 안 돼 있는 사항을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돼 있습니까?

○국세청소득세과장 한지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취득가액이라는 부분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종가와 본인이 실제 취득한 가액 중에 큰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인정해 준다는 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아까 해외에서 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는 부분은, 모든 해외자산에 대한 가액으로 확인할 때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해외 쪽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모든 자산의 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쉽게 인프라를 구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부분은 아닌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취득가액을 서로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대 거래소와 저희가 지금 계속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고객들이 그 자료를 동의해 주면 서로 넘기는 구조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소위원장 김영진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법률적으로 그것이 규정돼 있지 않고 4대 거래소에 대해서 협조요청 사안으로 그것이 과연 정확하게 확인이 돼서 취득가액과 마지막 거래가액의 차익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알아서 잘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가능한가요?

○국세청소득세과장 한지웅 4대 거래소로부터 자료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그것들을 고객들한테 다 보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본인들이 확인을 해서 우리의

테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서로 공유를 해 주면 고객들이 조금 더 편하게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4대 거래소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오늘이 11월 24일인데 지금 논의에 있어서도 아직 정리되고 있지 않아서……

여기에 있는 모든 여야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준비하고 그리고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부분, 의제취득가액에 대한 신고라든지 그 이후로 일어나는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과세가 들어가야지, 그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거 지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거래금액 자체가 코스피만큼 많은 시장인데 잘 접근해야지 초창기에 공정과세라든지 과세의 기본원칙에 맞게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이나 소위원님들 생각은, 긴 시간도 아니고 1년 정도 충분히 해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취득가액과 양도차익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거래소들 간의 이전에 대한 부분들에 관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해외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는 또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실은 여러 가지 가상의 수를 예측해 보면 그에 따라서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적인 조건을 정비하고 그리고 과세 대상자들에 대한 안내와 교육들을 충분히 진행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이렇게 상당히 큰 금액들에 관한 것이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지금 국세청의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고요, 이제 되셨습니다.

차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세청에서 준비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준비 그다음에 투자자에 관련되는 사항 그다음에 거래소에 관련되는 사항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렇다고 하는데, 거래소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 보셨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류성걸 위원 거래소의 입장은 뭘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담당 과장이 거래소 CFO들이랑도 만나고 했거든요.

○**류성걸 위원** 한번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 장영규** 소득세제과장입니다.

4대 거래소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논의를 했었고요, 4대 거래소에서는 지금 현재 가상자산 관련해서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류성걸 위원** 개발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 일단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 장영규**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문제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얘기를 들어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체 거래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사고팔고 하는 거래들이 다 데이터로 쌓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다른 거래소로부터 들어올 때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가격 정보를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가 얘기한 것은, 그러면 서로 그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라고 했는데 거래소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 17조 1항 1호에 보면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다 확인해 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지금 4개 거래소지요, 그렇지요? 등록입니까, 신고입니까?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 장영규** 지금 신고를 신청한 데는 40군데가 넘는데요 그중에서 실명계좌까지 해 가지고 신고 수리가 된 데가 네 군데입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좀 전에 ‘개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세목도 마찬가지로 처음 하는 건데 전부 다 걱정이예요. 왜 걱정이냐 하면 준비하고 있다 또 구축 중이다,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때쯤 되면 개발을 완전히 끝내서 이제는 최종 점검에 들어가서 앞에 있었던 모든 시스템 구축이 다 됐고 몇 번 점검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이렇게 해서 문

제가 없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월 1일이 되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과연 옳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러면 아까 취득가격 산정하는 것이 문제다, 특히 다른 거래소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이게 걱정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결국 걱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그것을 공란으로라든지 냈을 때 그 책임이 거래소한테 올까 봐 그게 걱정인 거거든요. 모르면 0을 써라 단순히 그겁니다. 왜냐? 결국은 납세자가 자기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 대사의 의미로서 거래소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납세자가 결국은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소명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해소가 될 거다.

그다음에 설령 그것을 모르는 경우는 결국 거래소 간에,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식시장에서도 여러 기관들 간에 서로 거래를 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 과장이 얘기한 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고객이 동의를 해서 주면 거기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내면 된다.

그리고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래했던 그 내역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받아서 얼마에 받아서 얼마 거래했다, 그러면 차액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양식으로 보면 그냥 하나의 양식, 하나의 표에 불과합니다. 다만 그것을 주고받는 데 조금 더 시스템을 갖추면 편리하게, 페이퍼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산으로 돌리면 그만큼 서로들 편하게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인프라가 되는 거고요.

○**류성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개 거래소 전체 거래량이라든지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하루에 한 20조 정도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지금 코스피가 얼마 정도 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코스피도 그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 장영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일 거래금액이 10조에서 20조 사이를……

○**류성걸 위원** 10조에서 20조인데, 가상자산은 지금 20조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 장영규** 가상자산이 많을 때는 20조였고요 줄어들 때는 10조 미만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류성걸 위원** 결국은 이게 우리 주식시장,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저거 하는데 코스피 정도 또는 그보다도 더 큰 금액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얼마 정도예요? 전체 금액은 그렇다 하고요.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 장영규** 지금 현재 그런 통계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볼륨을 간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건수도 파악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그 준비 단계라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어느 정도 거래 건수가 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이게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만 실제로 한번 전체를 돌려 보는 것하고 그다음에 실자료가 아니더라도 관련되는 것을 어느 정도 해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인프라가 구축되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저는 지난 국정감사부터 느꼈던 감으로 지금 설명하는 중간에도 아직까지 테스트 중이다, 구축 중이다 또는 개발하고 있다 또 취득가격 산정하고 특히 거래내역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든 진짜 오케이 해 가지고 내가 신고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옳게 될 건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완전히 다 돼 가지고 다 세팅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 들어갑니다’ 이런 정도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결국 아까 말씀드린 구축, 완료 이런 의미는 최종적으로 진짜 파이널라이즈(finalize)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구축이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결국은 뭐가 돼 있는 거고, 테스트를 하면서 뭐가 있는지 계속 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없는 단계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금융투자소득도 저희들이 2023년에

도입하면 양도차익을 다 계산해야 됩니다.

○**류성걸 위원** 금융투자소득은 이미 우리 금융 시장에 관련되는 인프라가 완전히 다 깔려 있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이고 지금 이 가상 자산이라는 것은 처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박형수 위원** 차관님,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거래소 관련해서 아까 4대 거래소와 소통하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상자산의 모든 거래들이 4대 거래소가 다 포괄하고 있습니까? 이 4대 거래소에서만 가상자산이 거래됩니까, 다른 데서도 거래됩니까? 이 4개는 지금 실명 확인 계좌를 받은 거래소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박형수 위원** 그러지 않고 지금 이걸 받지 못하고 거래만 하는 거래소들도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거기는 코인 거래가 되고요.

○**박형수 위원** 그러니까 코인 거래만 하는 데가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4대는 원화 거래가 되는 거고요.

○**박형수 위원**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4대는 원화로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박형수 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코인끼리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이 4대 거래소만 해 가지고는 가상화폐의 모든 거래를 다 포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료만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거래되는 것은 누락될 염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부는 코인 거래를 허용해 줬지만 일부는 코인 거래도 아예 허용 안 해 준 업체들도 있어요. 거기도 그게 굉장히 불만이어서 아마 무슨 법적인 조치도 취하고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코인이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코인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거래를 다 포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하면 일부 포착되는 것은 과세를 하고 포착 안 되는 것은 과세 못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4대 거래소와, 그렇지 않고 코인만 거래하는 이것까지도 다 연결망이 돼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제대로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과세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거래소 문제도 명확하지 않게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4대는 당연히 포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인마켓도 결국은 금융위에 등록 내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코인마켓도 거래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계양도가, 교환이나 이전이 다 양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더리움 갖고 비트코인으로 바꿔 버리면 어떤 식으로든 기준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차익이 발생하는 게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유경준 위원 아니, 기준가는 발생이 되겠지만 초기 가격을 알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4대 거래소와 코인만 거래하는 데 간의 거래는 더욱이 파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잖아요.

4대 거래소 간에는 서로 거래내역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겨우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4대 거래소 외에 코인 간의 거래만 하는 데하고 4대 거래소하고 거래를 하면 초기 가격이나 이것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스템으로는. 거래가 발생하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구조인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런데 결국 초기 가격을 어떻게 끊느냐의 문제인데 아까 국세청 과장이 얘기한 대로 결국은 개인이, 제가 만약에 취득가액을 증명해야 되면, 저 같으면 양도차액을 줄이려면 가장 높은 것을 하는 게 저한테 제일 유리하지요. 그러면 제가 높은 것을 하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든 제가 처음에 거래한, 온라인 거래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되면 2022년……

○유경준 위원 아니, 거짓말을 하면 정부나 국세청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개인이 신고하는 것을 정부나 국세청이 확인할 수 없으면 그것을 받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초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아직 준비 단계에 있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 10월에 FATF에서 새로운 지침을 내고한 것들 보셨어요? 그게 지금 NFT를 어떻

게 할 것인가, 자금유인 디파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트래블 룰을 어떻게 국제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침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좀 더 해서 가지고 과세할 곳에 과세를 잘하는 게, 그러니까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국제 테러자금을 막고 하는 게 지금 훨씬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걱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국정감사 때부터도 많이 얘기를 했고 오늘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숙려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많이 해서, 큰 의미에서 당장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우려가 있어서 법적으로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했는데요.

다음 차, 금요일 정도 또 소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논의를 깊게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 날 이것은 최종 논의하고 의결하겠습니다, 큰 방향에서는 같이 동의를 했으니까요.

다음 17번……

○류성걸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시기 전에……

어쨌든 조금 전에 여러 논점들이 있었고 물론 행정부나 국세청에서 또 관련되는 거래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논의 관련되는 게 조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회의 때까지 이제까지 준비 사항 전체를 플로우 차트(flow chart) 형태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또는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 그냥 계속 이야기만 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7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84페이지입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비과세 양도소득이 8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령 155조 20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법률로 상향하고 다만 시행령에 제한 요건이 2개가 있는데요 ‘2020년 7월 10일 이전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한정한다’ 다음에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생애 1회 한정’ 요건인데 두 가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인데요.

89페이지 보시면 추경호 의원님 다른 임대주택법 개정안하고 연결해서 설명드리는데요, 20년 8월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몇 가지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도 변화가 있었고 지금 이 개정안은, 이 부분을 8월 개정 이전으로 다시 개정하는 안이 지금 국토위에 있습니다. 그런 전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임대등록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년 7월 이전의 임대등록제도로 환원하는 내용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1페이지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의무와 직접적 관련 있는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과 다른 비과세 요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부분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은 전제가 등록임대주택 그것을 원상 복귀하는 차원이 되어서요, 그래서 등록임대주택제도 이것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다시 재확대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라든지 신뢰성 측면에서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등이 있어서 저희들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이 내용은 추경호 위원님 있을 때 같이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안 계셔서, 발의 법

안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예,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소위원장 김영진 다음 8항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설명은 해 주시고……

○전문위원 정명호 요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을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대상주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데 시행령에 제한 요건이 있거든요. 2020년 7월 11일 이전 등록분에 한정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상향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내용은 앞쪽하고 동일한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입장만 먼저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정부 측 입장은 저희도 아까랑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동의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 사안도 추 위원님께서 발언할 기회가 필요하니까요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큰 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법인세……

○소위원장 김영진 아, 법인세.

○전문위원 정명호 99페이지입니다.

법인세법 1건이 있는데요, 50% 한도 기부금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기부금을 추가하자는 내용인데요.

개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50% 기부금 단체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고 국가 에너지과학기술 및 산업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인 것이고요.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도 법 24조에 따른 50% 기부단체에 해당하므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오히려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가 축소되어 특별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부칙 같은 경우에 현재 2021년 4월 1일로 되어 있는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같은 경우에 시행일이 21년 5월 2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전에 한국전력공과대학교도 50% 한도 기부금 단체에 해당이 됐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은 동의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이 주신 조문 수정도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이것 에너지공과대학교법과 연관된 부분이라 특별히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4항의 1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102페이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가업상속공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요건을 개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피상속인 요건하고 상속인 요건이 시행령에 있는데 법률로 상향하면서 일부 내용 조정이 있고요.

103페이지 보시면 공제한도 관련되는 여러 개정안이 있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기간 축소 부분이 있고요, 자산처분한도, 가업 미종사 기준에 대한 개정 의견이 있고요.

104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관련, 다음에 전체 기간 평균 고용유지 조건 기준 관련되는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가업상속공제제도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완화하는 내용들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일전에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업상속공제제도 중에 대상이 현재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데 그것을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으로 1000억 원 정도 상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9년에 또 개편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가업상속공제제도 중에 공제대상 확대 이 부분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가업상속공제 관련해서는 이제 참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획기적으로 하자, 특히 독일의 경우

에 보면 우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기업 하시는 분들 말씀은 이렇게 되면 기업을 키워서 가업을 진짜 몇 대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기업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악의적으로 아니면 나쁜 마음을 가지고 탈세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긍정적 차원에서 이렇게 봐야 돼서, 이게 지금 매출액 3000억에서 4000억 이 말씀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류성걸 위원 그런데 3000억에서 4000억 해 가지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더 늘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19년 결산 기준으로 중견기업 비중을 보면 3000억 원 미만이 87.6%고요, 4000억 원 미만이 91.4%로 개수로 보면 한 191개 기업들이 새롭게 포섭이 될 수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공제한도도 수년 동안…… 그때가 2008년 2009년 이때 획기적으로 좀 높이자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지금 200억, 300억, 500억 돼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류성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 대상은 이렇게 는다 하더라도 공제한도가 최고 30년 이상 해 봐야 500억이니깐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떻게 가업이 계속 승계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경우, 해외 사례 혹시 정리돼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제실장 김태주 예, 해외 사례 정리된 것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제실장 김태주 자료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류성걸 위원 그래서 해외 사례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독일 사례, 해외 사례가 없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히든 챔피언이라는 참 수백년 된 기업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혁신기업들이 나오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관련되는 글로벌 경제 하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진짜 히든 챔피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요. 히든 챔피언이라는 게

뭘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해외 사례 정리돼 있는 것 한번, 해외 사례 정리된 게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카피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카피해서 한번 돌려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하니까.

독일의 예를 잠깐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위원님, 자료 112페이지에 보시면 해외 사례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여기 지금 독일 경우에는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가업을 상속하려면 가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차관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나라마다 특색들이 다 있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고민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들 이야기 듣고 저희들 중소기업 만나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런 것이고요. 특히 지금 세대 간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들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투자 위축이나 고용 불안 해소한다는 측면이 좀 있는 반면에 또 아직까지도 보면 부의 대물림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저희들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류성걸 위원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큰 국가적 과제가 있고 또 다른 이야기지만 R&D와 관련해서 저도 그때 이야기했지만 백신이라든지 배터리 그다음에 반도체 이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데 다른 분야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또 진짜 강소기업을 육성하자고 했을 때 말은 강소기업을 육성하자고 하면서도 실제로 가업상속이 안 되는 분위기가 돼 있는 거예요.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게 뭘겠습니까? 일정 수준 이상은 못 올리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돼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배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차관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사실 가업의 원활한 상속을 지원하고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기업을 옥죄고 감시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가업상속공제가 51건이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연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연평균 한 90건 정도 되는데 건당 공제금액이 한 20억 30억 40억 이 정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가업상속공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왜 안 하느냐? 이유가 뭐냐 하면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완화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통제 수단인 것이고 있단 말이지요.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해서 다시 추정된 사례가 현 정부 들어서 아주 급증하고 있거든요. 2016년에는 5건 그래서 한 1억 9000만원 정도만 추정됐는데 이것 보세요, 현 정부 들어와서 급증해 가지고 2019년도에는 164억 원이 추정됐고요, 지난해에도 60억이 추정됐거든요.

추정 사유를 보면 대부분 휴·폐업 했거나 고용유지 조건을 지키지 못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프로모션하려고 했다가 전부 규제하고 징계 수단으로 하게 되면 원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를 오히려 멸실하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후관리 요건을 좀 완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원활하게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보면 이것이 결국 상속이라는 것의 회피수단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요건이 너무 완화되면 사실은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님이 잘하신 것을 아들이 이어받아서 더 계승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우회 수단으로 오용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후관리 요건들은 필요하고요. 다른 나라들도 사후관리 요건들은 다 두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황이 이런데 이럴 정도로 운영될 거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게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1번 안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연 매출액 3000억에서 4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 나머지 사안들을 추후 논의해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000억으로 확대하는 것까지만 동의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2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1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인데요.

좌측에 보시면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있는데 일부를 상향하자는 의견하고요.

두 번째,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추경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가축’을 추가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농어업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농어촌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농어업 노동력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영농후계의 유입을 장려하고 농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축을 영농상속공제 재산으로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업상속의 경우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을 고려할 때 축산농가의 경우 유사한 자산인 가축을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영농상속공제제도도 아까 가업상속공제제도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때 검토의견 말씀드린 대로 한도를 상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5억 원 있는 것을 이것도 20억 원으로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님 주신 안 중에 가축도 재산가액에 포함하자,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관리상 보면 가축 같은 경우 2년 이전의 재산 같은 경우 2년 이전부터 보유 관리해서 추적관리가 가능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닭이라든지 어류 이런 것들은 수명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고 그래서 사후관리 자체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가축 포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부동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홍 위원 농촌의 현실은 잘 아시지요? 소규모 영세농이 갈수록 심화되고 종전에는 영농의 규모화를 추진하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정부가 많은 예산과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했는데 현재 농촌에 가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양극화돼 있어요, 사실. 굉장히 양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농들·부농들은 논농업직불금, 공익직불금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수령하고 있고 대부분 주류를 이루는 소규모 영세농들은 그런 공익직불금이나 정부의 지원이나 또 비과세·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대농이나 부농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15억에서 대폭 상승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지금 15억도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게 거의 없다는 것 같은데요.

사제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건당 평균 4억 6000만 원입니다.

○김수홍 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대폭 상향 확대하자는 것도 좋은 의견이지만 정부가 낸 20억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정도면 저는 수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것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답변 필요 없지요?

○김수홍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진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우선 한도는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하고 한도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게 이견인 거지요. 기왕에 15억인데 아주 애를 많이 써서 5억 추가로 더 하는 것까지는 동의하겠습니다.

기왕에 여러 상속과 관련돼 있었고 한동안 영농상속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크게 논의를 많이 못했는데, 물론 정부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입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겁니다마는 전향적으로 15억이 아니고 최소한 배 이상은 늘려서 이런 축산농가 그리고 일반농가들도 농업을 계속하는 데 따른 상속의 부담은 좀 줄여 주자 하는 거고.

특히 축산과 관련해서 확인이 안 된다 등등 하

는데 아시다시피 허위 신고한다, 그래서 상속세 과세 회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되면 상속공제를 과다하게 받아도 역시 나중에 상속세 과세가액도 늘어서 동일하게 포착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상계가, 양쪽 다 과세표준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것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축산이 확인이 되느냐 하는 건데 요새는 이력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도축·판매 등이 계속 보유할 수 없다는 치더라도 그 사람이 축산업을 하고 있다는 허가증 이런 것은 보유기간이 계속 있다. 그리고 거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아까 닭을 쫓은 기간이니까 예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닭을 계속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 이런 것은 확인이 가능하다, 그 실체적인……

A라는 닭이 계속 오래 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닭은 수없이 바뀔 거다. 역시 사육이 되는 다른 가축들도 다 마찬가지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영농·축산 이런 것도 대를 물려서 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15억에서 5억 절감하지 말고, 최소한 저는 50억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배 정도는 가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아까 나머지 우려 사항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또 확인이 가능하고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진흥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전향적인 자세로 이 논의에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제안이니까요.

다음 위원님들.

○류성걸 위원 그것 관련해서 아까 김수홍 위원님도 그 말씀 하셨고 한데, 지금 영농상속공제 한도 15억이잖아요. 혹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15억이 20억, 30억 돼서 한도 때문에 조세 감면에 걸려 있는, 그러니까 한도 때문에 안 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물론 금액 자체를 올려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여러 건이 있어서……

그러면 사실 영농 관련해서는 아까 평균 4억 5000 이렇게 했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그렇게 해도 어쨌든 하려고 하는

데 한도에 걸려서 못 했더라……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케이스는 없었다고 합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최고가 얼마였지요? 평균이 4억 5000이라고 했으니까, 공제한도 넘었던 경우는 없다고 하니까 최고가 얼마 정도 됐어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재산세국장이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고 금액이 얼마인지 저희가 파악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영농상속공제 신청은 396건 했는데 과세,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작아 가지고 안 된 경우가 163건이고요, 이분들은 전액 다 받으신 거고요. 과세를 받은 게 233건입니다. 그래서 과세를 받으신 분들의 평균 실적을 내니까 4.8억 원의 실적이지, 그러니까 저희가 15억 공제한도를 드렸는데도 평균을 내면 4.8억밖에 안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평균은 그거고 어쨌든간에 1억짜리도 있었고 이렇게 되는데 최고가 걸려서 안 된 경우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것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김영진 찾아보세요.

○류성걸 위원 그리고 지금 영농 관련해서도 농업도 전략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게 따져 보면 규모를 키워서 영농 관련되는 데서도 가업상속이 계속되고 또 상속이 계속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게 없다 해 갖고 하더라도 한도 때문에 못 한 경우가 여러 건이 생기고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보자는 이야기예요.

○박형수 위원 반드시 지금 없다고 해서 아예 높아 가지고 대상 자체가 안 될 것 같으면 신청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백몇 건 가업상속 받은 전체 금액을 쫓 한번 보면 위로 예를 들어서 15억 근처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높여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거기에 거의 없고 10억 밑으로라든지 이러면 높일 필요가 없는 거니까 전체를 한번 제출해주세요.

○류성걸 위원 전체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소위원장 김영진 영농상속공제 한도 관련해서는 아까 김수홍 위원님 20억 또 추경호 위원님

30억에서 전체적으로 현재 동의 합의는 20억으로 되고요. 추가적인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은 다음 번 논의에서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억까지 해서 합의 동의까지 됐고 나머지는 추가 논의에서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예.

○추경호 위원 긴 논쟁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정부에 다시, 20억 수준은 너무 낮으니깐 그것보다 전향적인 조정이 나중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결국 현재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농업·축산이 규모가 너무 작다, 규모를 계속 키우고 젊은 축산인들 앞으로, 지금도 후계 농업인들 위해서 자꾸 키우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의욕을 못 낸다. 그것을 지향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의 한도는 대폭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업의 규모화를 우리가 유도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조장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고맙습니다.

다음 3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27페이지입니다.

영농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인데요.

좌측을 보시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인데 농업·임업·어업 중에 ‘작물재배업 중 종자·묘목생산업’ 이렇게 일부분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정성호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농업·임업·어업’을 가업상속에 포함하자는 의견이고요, 다음 이원택 의원님 안은 ‘작물재배업 및 축산업’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현재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에 주점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가업상속 대상에 포함하면서 종자·묘목생산업을 제외한 농·임·어업을 가업상속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업종 간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농업·임업·어업

같은 경우는 영농상속공제제도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모든 업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에는 아마 업종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가 돼서 저희들은 이 안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무슨 특성이 있어서 무슨 부작용이 생기지요?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어떤 특성이 있어서 무슨 부작용이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가업상속공제는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농업 같은 경우는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영농상속공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농지·초지·산림지·창고·축사 이런 쪽으로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정을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농업을 하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고 축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박형수 위원 그러면 종자 및 묘목생산업은 특별히 여기다가 넣어 놓은 이유는 또 뭐예요? 종자 및 묘목생산업은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고 다른 것은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재정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재산세국장이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당시 이 업종이 특별히 들어간 이유는 종자개발업종 같은 것은 농업분야의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식량주권 확보라든지 또는 이쪽은 R&D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예외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해서 농업 분야에서는 이 부분만 더 들어갔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종자 및 묘목생산업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종자, 농우바이오 이 문제가 있어서, 그게 상속 이 문제가 한번 걸렸던 적 있었어요, 그분 돌아가시면서. 그러면서 외국 펀드에 팔려 나가면 종자에 관한 이게 외국으로 팔려 나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하면서 종자·묘목이 이 안에 포함이 됐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계셨거든요. 화성에 국회의원님 계셨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교회선 의원님이 농우바이

오 관련해서 초창기부터 창업해서 꾸준히 기업을 크게 해 왔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런 문제가 돼서 우리가 종자 관련한 부분들을 어떻게 국내적으로 보호하고 지켜 줄 것인가, 그때 추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광업은 또 뭐지요? 광업은 다 전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광업은 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건지.

○기획재정부자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광업이 왜 들어갔냐는 그 말씀이십니까?

○배준영 위원 예.

○기획재정부자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그러니까 광업이나 나머지들은 가업상속공제가 되는데 농업 중에서 가업상속공제가 되는 게……

○배준영 위원 이것 취지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자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광업 같은 경우는, 광업은 가업상속공제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종자 및 묘목생산업으로 한정해서 가업상속공제를 했듯이 광업은 광업 전체를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기획재정부자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그러니까 농업은 기본적으로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종자 및 묘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농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이쪽이 첨단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제조업적인 성격도 있고 해서 예외적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준영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박형수 위원 그러면 다른 농업은 아까 얘기한 영농상속공제가 현재까지로 하면 15억이 한도가 되는 거고 지금 영농중소기업이 되는 종자 및 묘목생산업은 일반 중소기업의 한도 400억을 아까 올린다는 것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이렇다라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까 종자 및 묘목생산업이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특정 사건을 얘기했는데 논리적으로 보자라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게 미래 신성장산업 이런 차원에서라면 농업 중에서 그런 데 해당되는 업종은 여기다 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김영진 이 문제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항 물납제도……

○추경호 위원 위원장님, 아까 하면서 여기도 축산업이 적시가 돼 있는데—영농가업상속공제에—앞부분에 아까 금액 15억에서 이제……

○소위원장 김영진 20억.

○추경호 위원 20억 또는 30억, 50억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나중에 조율해 주시고.

○소위원장 김영진 20억까지는 동의했고……

○추경호 위원 했는데, 그것 더 나가는 부분에 관해서 추가 논의를 해 주시고.

○소위원장 김영진 플러스알파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집중한다 여기까지.

○추경호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아까 제가 가축에 관해서 이야기했었고 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가축 부분도 그때 금액 조정하면서 같이 논의해 주시고.

○소위원장 김영진 한 번 더 논의하지요.

○추경호 위원 예.

○박형수 위원 가축 중에서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인 것만 들어가는 걸로 하지요. 그러면 특정이 되겠지요.

○추경호 위원 이게 축산이력제하고, 현재는 축산이력제도 있고 허가증 이런 걸로 가업이 확인이 가능하단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간사님 조정하실 때 참고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영진 제4항 물납제도 가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37페이지입니다.

물납요건 강화 및 물납 시 양도소득세 부과인데요,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분할납부하여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하자, 그다음에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재산의 가치 및 매각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평가를 받도록 하고, 물납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금융투자소득세로 납부하자는 내용인데요.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물납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는 연부연납을 통한 현금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물납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연부연납을 물납보다 우선함으로써 세금의 금전 납부라는 기본원칙이 보다 엄격히 지켜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현행 물납 요건으로도 납부 여력이 충분한 상속인의 물납을 제한하는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두 번째, 147페이지입니다.

사전평가 신설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물납재산의 가치와 매각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물납에 따른 국세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현재도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이 불확실한 경우 관할 세무서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입니다.

물납은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가 대비 상승한 현재 시가로 국가에 이전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양도라는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국세수입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인 물납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게 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현재 이 법안은 현행 물납제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하시자는 취지인데요, 요건이 이렇게 과도하게 강화될 경우에는 이 제도 자체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또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으로 부동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지금 물납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뭐가 있지요?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물납에 있어서?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물납된 재산이 현

금으로 환가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물납을 비상장 주식을 100만 원에 받았는데 그 가치가 떨어져서 9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국고 손실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양경숙 의원안을 보면, 물론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물납의 경우에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비상장 주식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금액을 100이라고 했는데 받아서 봤더니만 뭐 해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 그리고 또 그 자체가 아주 처리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직까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양경숙 의원안으로 한다면 그 문제점이 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지금 양경숙 의원안이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부연납을 해서도, 연부연납까지 다 했는데도 현금이 부족하면 그때 물납을 받아라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사전에 처분이 잘 될 것인지, 가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걸 다 점검을 한번 해라라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상속세를 물납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로 부과해라 이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연부연납을 통해서도 물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것은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요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유가증권 가액이 총 상속재산 가액의 2분의 1을 넘어야 되고, 두 번째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 넘어야 되고, 세 번째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낼 여력이 없을 때만 낼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연부연납까지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돈 없으면 그때 물납 받아 주겠다 이것은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성걸 위원 실장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아까 여쭙았던 것은 물납을 받아서 제일 큰 문제가, 특히 비상장 주식을 받아 가지고 가져 왔는데 팔리지도 않고 가격은 형성도 안 될 정도로 돼 가지고 물납은 했다고 납부는…… 물납이라는 것은 납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저거로 봐서는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 받아 들고 진짜 돈 안 되는 물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지요.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뭐든지, 예를 들어서 비상장 주식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비상장 주식 중에 나중에 안 되면 다른 어떤 보완책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지.

박금철 국장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재산소비세국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비상장 주식 쪽에 특히 그런 지적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18년도에 비상장 주식의 물납 요건을 좀 강화했습니다. 상속세액이 비상장 주식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액보다 큰 경우에만 그 차액에 한해서 허용한다든지 비상장 주식 물납 요건을 강화했는데 그 이후 실적을 보면 비상장 증권의 환가, 그러니까 낸 것에 비해서 나중에 회수한 그 금액 비율을 보면 10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낸 부분보다 국가가 이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분할납부해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 받으면 환가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가 가지고는 진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두 번째 것은 이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세무서장이 물납허가를 결정하는 모양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것 결정할 때 어디의 자문을 얻어야 된단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 절차가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재산소비세국장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자산관리공사하고 국세청하고 사전에 공동으로 사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예.

○소위원장 김영진 이 사안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53페이지입니다.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물납허용 관련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서화, 골동품 등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려는 것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재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개정안인데요.

검토의견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처럼 할 경우에 예술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우수한 문화유산을 공공 자산화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고 해외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산업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유 목적에 한하여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물납 허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안과 관련해 개정안을 입안할 경우에는 163페이지같이 저희가 자구 조정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국가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문화재·미술품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존·관리 또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물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이렇게 되려면 이것만 고치는 게 아니라 물납제 실행을 위해서는 문체부 소관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23년부터 시행을 한다면 시행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주신 수정의견은 저희들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가액 추정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재나 이것 어느 정도를 가치를 계산해 줘 가지고 물납한 것으로 간주해야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일단 문화부에 문화예술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물납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박물관 및 미술관법을 개정해서 이런 장치를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 재산이 도자기든지 뭐가 물납으로 받을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고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승인해 주면 그걸 기재부 쪽으로 가지고 와서 저희도 이걸 평가하는, 국세청에서 이것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물납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일단은 문화재청의 위원회에서 그걸 평가하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물납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게 물납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걸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이걸 가액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가치평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박형수 위원 가액 평가는 또 국세청에서 하고, 아니면 가액 평가도 무슨 텔레비전 프로에 나오듯이 고미술품 같은 것 가격 얼마다 이렇게……

가액을 문화재청 거기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정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재산소비세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액 자체는 상속을 받은 분이 신고를 합니다. 자기가 미술품 가액이 얼마라고 신고를 하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 신청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문체부의 물납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것이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또는 국가가 보존·관리가 필요한지, 평가의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가치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기재부에 물납을 요청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박형수 위원 하여튼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지난번 어느 분 사망했을 때 그때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운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공정이나 이런 문제에서 국가기관 전체가, 문화재청도 그렇고 국세청도 그렇고 이런 시비에 휘말

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진짜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이게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나 경매시장의 그런 것까지도 다 참여를 시켜서 한다든지, 하여튼 굉장히 제도를 정치하게 만들어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성걸 위원 저도……

○소위원장 김영진 예.

○류성걸 위원 물론 그전에도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물납의 경우에는 가치, 그러니까 가격 산정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술품에 대한 또 문화재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매길지 하는 부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납에 관련되는 것은 결국은 상속세와 관련된, 직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현금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박형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도 자체를 도입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런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물납을 정부가 받을 때 가치 산정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그 절차에 관련해서 문화재청하고 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법률안, 박정 의원님 법률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3년 1월부터 시행하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가, 박물관·미술관법도 개정해서 거기에 물납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평가하고 또 국가를 통한 보존·관리 필요성도 평가하고 그다음에 가액 평가의 적절성도 평가를 해 보고 등등등등을 하려면 아주 세밀한 준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행 시기를 1년 정도 유예를 주시면 문체부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류성걸 위원 제도 도입 관련해서는 좋은데 이게 나중에 오히려 이렇게 해 놓고 문제가 더 생겨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철저한 준비를 해서 사전 절차를, 사전에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영진 배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물납허용은 이번에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만큼 사실 신중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꼬가 이렇게 터지고 나면, 지금이야 이런 케이스라서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틀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158페이지를 보니까 영국 같은 데서는 물납제도의 승인한도를 연간 4000만 파운드로 한정을 해 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세수입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안정적으로 가치가 주어지고 또 너무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번 또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저희는 공무원 입장이어서 이게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중에 뭐 잘못 받았다가 문제가 되면 공무원들은 다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에다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촘촘한 요건을 넣어 가지고, 그 법령에 따라서 했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촘촘한 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게 남용되거나 많이 들어오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김수홍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수홍 위원 저도 한 가지 우려를 하면 차관님, 만약에 물납허용 대상에 이렇게 문화재나 미술품을 허용하게 되면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가격 폭등만큼은 아니더라도 자칫 이렇게까지 정부가 인정해 주면 사재기라든가 또 어떤 현금보다는 이런 것에 대한 투자의 수단으로 전략이 돼서 없는 사람들이 정부가 별걸 다 한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부의 대물림 하는 부정적인 방법…… 부정적이라면 이상한데 약간 편법적인 방법의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자칫하면 이 시장이 특정인들만의

리그로 보일 수 있어서 이것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가격 산정할 때도 이 객관성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물론 감정평가사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시장에서 이걸로 먹고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정한 가격 산출이 아니고 높게 산출하면서 자기들의 가치를 높일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를 잘 살려야겠지요. 결국 이 취지 자체도 그냥 모든 문화재·미술품 이런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그래서 사실은 이것 사용하는 것도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해서 국민들께서 향유하실 수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신 이런 쪽의 골동품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더 활성화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건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잘 막아야 될 것 같고요.

가치 산정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지금도 일단은 상속인들이 여러 가지, 최근의 사례들이 몇 명의 전문가들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가치를 내놓는 거고 그걸 또 리뷰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지금 이 리뷰하는 프로세스도 문화부에서도 할 거고 국세청에서도 최종 확정을 할 거고,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잘 살려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그런 걱정이랄까 앞으로 준비를 잘해 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바가 가치 산정에 관련되는 객관적인 위원회 또는 아니면 여러 절차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럴 정도의 문화적 가치 또는 보존 가치, 예술성이 있다는 것은 한정적이라고 보이지요. 한정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국세의 본래 목적은 재정활동, 그러니까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현금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물납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그런데 이 물납은 결국은 그렇게 확보된 물납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그냥 보존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조세제도의 근본에 관련된 사항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거예요.

요. 어떻게 보면 재정지출 쪽으로 그걸 구입해서 우리가 보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것밖에 없으니까 물납으로 받겠다는 건데.

그래서 아까 제가 영국의 예를 봤을 때 이게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캡을 씌우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캡을 좀 씌워서, 그러니까 한도를 어느 정도 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미 도입을 하자라는 취지의 말씀 그리고 또 저도 그렇게 아까 동의를 했고요. 한데, 도입하는 건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준비라든지 평가라든지 또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한도를 뒤서 하고 예를 들어서 상속 전체 세액의 반, 아니면 3분의 1, 아니면 금액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약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159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에 이것을 할 절차 같은 것들 쪽 설명을 해 놔는데요. 4번에 보시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에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재·미술품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주택이 하나가 있고 또 무슨 미술품이 하나 있으면 물납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집에 대한 상속세가 아니고 이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이것에만 한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으로 보면 집 한 채 있고 미술품 하나 있으면 미술품으로 물납을 못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집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류성걸 위원 미술품이 2개가 있는데 미술품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1개의 상속세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또 조그마한 미술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미술품을 물납하겠나 이런 취지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하여튼 뭔가 이걸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전체 상속세의 몇 % 아니면 전체 한도, 절대액 한도 얼마 이런 식의, 뭐가는 하여튼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박형수 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령 이것 보니까 이것을 법률상으로 아예 올려서 미술품이나 예술품에 대한 물납의 요건을 법률로 따로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법률에 일반적인 물납의 요건을 두고 예술품·미술품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요건을 뒤서 법률상으로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금 여기 보면 대통령령(b)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159페이지지요?

○박형수 위원 예, 159페이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직 한 1년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해서 저희가 잘 만들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한 1년 연구해서 좀 향상된 버전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가상자산도 똑같이 한 1년 정도 더 연구해 가지고 완벽한 조세 시스템을 만든 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상자산도 좀 더 완성된 과세 시스템을 1년 동안 정비해서 똑같이 과세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맞습니다. 아까 그것은 대략 1년으로 여야가 서로 의견을 합의했기 때문에 다음 회차에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물납제도 도입을 하는데 사실은 도입 시기의 계기가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제가 보기에 는 논의를 충분히 하고 넓게 할 수 있는데 삼성그룹의 이견회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나왔던 그 문제로부터 문제가 출발이 됐어요. 그래서 도입 시기와 계기 자체가 과연 적절하냐, 그리고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현금이나 주식·채권 이런 부분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처리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지분 두루두루 했는데, 이 경우 그 논의의 출발이 그로부터 시작이 돼서 물납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성 측면에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이렇게 바로 시행하는 부분들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을 그냥 이렇게 짧은 시간에 논의해서 이 물납제도를 저희들이 통과시키는 것은 숙려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은 사안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들이 제기했었던 예술품·문화재 이런 것에 관한 인플레이션 아니면 조세회

피의 수단으로, 그것을 통해서 상속 세금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문화재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어서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준비한 다음에 진행하는 부분들을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금요일 날 한 번 더 논의하시지요.

○류성걸 위원 잠깐만요. 결국은 한 번 더 논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상속인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지금 재 논의라는 게……

○소위원장 김영진 한 번 더 할 거예요, 금요일 날.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빨리 통과가 되어야 될 필요성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법이 통과가 되어야 문체부에서 박물관·미술관법을 개정을 해서 저희 부분을 인용하면서 물납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통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박형수 위원 여기에서 대통령령 준비하듯이 그 쪽에도 그 규정을 준비해서 나중에 같이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이것을 먼저 해야지 뭘 그것을 해?

○김수흥 위원 국장님, 공무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류성걸 위원 여기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것, 시급성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를 하는데 누구를 어떻게 하고 또는 뭐가 어떻게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것은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상속세 관련해서 위원장님, 지금 상속세 논의가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연부연납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금 상정되는 안건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연부연납 최대 허용 기간이 지금 현재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데……

○소위원장 김영진 금요일에 이것은 추가 안건으로 해서, 연부연납 안건은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보고자료로도 연부연납을 확장하자라는 의견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논의하면 금방 이것은 조정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류성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금요일 날 안건으로 해서 정식으로 논의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항인데요,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까 추경호 위원님이 오기 전에 소득세법 관련해서 추위원님 오시면 얘기하기로 해서 같이 통합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추경호 위원님 발의안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정명호 종합부동산세 말씀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합산배제 임대주택 상환입법 및 임대주택사업자 세제혜택 재부여 관련 추경호 의원님 안인데요.

지금 과세표준 관련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령 3조에 있습니다. 시행령 3조에 있는데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 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중에 임대주택 등록기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68페이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그간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69페이지는 양도소득세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작년 8월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제도가 민간임대주택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임대등록제도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이전의 임대등록제도로 환원하는 내용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전체적으로 다 같은 맥락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등록임대주택 이

부분에 대한 세제혜택을 재확대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나 신뢰성 저하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등이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부동산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그래서 전월세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현 정부에서도 초기에 이것을 굉장히 강화해서 오다가 작년인가요, 임대주택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1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골간으로 유지하는 임대주택법을 개정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종부세·소득세 체계를 개편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의 일관성 이야기하는데 그 정책 일관성이 잘못돼서 현재와 같은 전월세 대란이 또 일어나고 있다, 문제 인식을 거기에 갖는 겁니다. 원초적으로는 주택 공급의 문제, 여기에도 전월세 임대주택에 관한 공급 문제가 있고 결국은 또 부담의 전가가 일어나고 그래서 역시 지금 오늘 현재 우리 집 없는 사람들이 전월세 대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온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이 정부 초기에 가지고 있던 그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 정부 정책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임대주택에 관한 세금부담 완화, 그러니까 종부세 합산 배제한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정책을 환원시켜 주라, 그렇게 해야 임대주택에 대한 부담도 줄고 공급도 늘고 그래서 전월세 가격도 안정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 인식에서 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제 것도 제출돼 있는데 국토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 세법이 맞물려 간다는 입법 기술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출발했고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문제인 정부가 얼마 전까지 가지고 있던 거기에서 지금 최근에 변경한 부분을 그전으로 환원시켜서 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시장을 활성화하자, 시장을 정상화시켜서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자 하는 이유로 이렇게 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좀 깊이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다른 방법이 현재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전월세 가격도 결국은 전월세 물량의 공급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담 전가가 일어남으로써 있는 공통의 문제를 정부도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전향적인 검토 입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여러 의견들이 있으신데요 이것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새로운 안건에 들어가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회의를 마치고요. 금요일 날에는 시간을 한 30분 당겨서 10시부터, 금요일이 예정된 마지막 소위인데요, 최대한 빨리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10시로 조세소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실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기재소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억원 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세제실장님, 그리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 행정실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5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고 용 진	김 수 홍	김 영 진	김 주 영
류 성 결	박 형 수	배 준 영	양 향 자
용 혜 인	유 경 준	정 일 영	추 경 호

○청가 위원(1인)

박 홍 근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 명 호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 1 차 관	이 역 원
세 제 실 장	김 태 주
조세총괄정책관	고 광 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정 정 훈

재산소비세정책관	박	금	철
관 세 정 책 관	김	재	신
국세청소득세과장	한	지	웅